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I . 연구 개요	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1) 연구목적	11
2) 연구 필요성	11
3) 연구 기대효과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1) 연구기간	13
2) 연구진	13
3) 연구 범위	13
4) 연구 방법	14
II . 제도 운영 현황	17
1. 제도 도입배경	19
2. 제도 운영내용	20
1) 근거법	20
2) 지정혜택	21
3. 2009년도 지정현황	23
1) 전체 지정현황	23
2) 지역별 현황	24
3) 법적유형	25
4) 사업유형	25
4.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현황	27

1) 사업자등록현황	27
2) 4대보험 가입 여부	27
3) 인력현황	28
4) 재정현황	29
Ⅲ. 제도 개선의 필요성	33
1. 문화예술 환경변화	35
1)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	35
2) 예술시장의 변화	37
3)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대	39
2.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41
1) 제도의 모호한 방향성	41
2) 제도 근거법 및 관련 법률의 취약	46
3) 지정혜택의 불명확성	53
4) 16개 시·도별 운영방식의 차이	59
5) 지정 후 관리 미흡	67
6) 지정내용 및 방법의 통일성 부족	70
Ⅳ. 제도관련 참고사례	73
1. 국내 사례	75
1) 비교대상 제도 유형	75
2) 특징별 유형 비교	75
2. 해외 사례	83
1) 캐나다의 예술서비스 단체 지정 및 등록제도	83
2) 호주의 문화기관등록제(Register of Cultural Organisations)	84
3) 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도	87
4) 일본의 인정(認定)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정NPO법인)	90

V.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95
1.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의 기본방향	97
1) 제도의 미션 재정립	97
2) 제도의 운영 시스템 조정	98
3) 제도의 대상 조정	99
4) 제도의 틀 조정	102
5) 혜택과 의무의 확대와 명확화	103
2.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토대 강화	106
1) 법률적 근거 마련	106
2)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법시행령 법률 개정	107
3) 자자체 조례 개정 지침안	119
4) 세제혜택 개선 및 그에 따른 세법 개정(안)	121
3.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130
1)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개요	130
2) 세부내용	131
4. 중장기 로드맵	143
1) 로드맵	143
2) 실행에 필요한 몇 가지 이슈와 조치들	144
〈붙임〉	147
I. 인식조사 결과	149
II. 그룹인터뷰	212
III. 해외사례 조사 붙임자료	216

표목차

표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연혁	21
표 2. 전문예술법인·단체 전체 지정현황(2009.3.1 기준)	23
표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24
표 4.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적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25
표 5.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26
표 6. 전문예술법인·단체 세부사업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26
표 7. 전문예술법인·단체 인력현황 (184개 단체 중)	28
표 8. 지역별 제도운영 도입 시기	43
표 9. 16개 시·도 조례의 주요항목 비교	52
표 10. 16개 시·도 조례의 주요내용 비교	53
표 11. 법인형태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혜택 적합성 여부	56
표 12. 16개 시·도별 지정시기 및 유효기간	59
표 13.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적유형 구분	62
표 14.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 구분	64
표 15. 각 제도의 근거법 비교	76
표 16. 각 제도의 주요대상 법적형태 비교	76
표 17. 각 제도의 지정요건 비교	77
표 18. 각 제도의 지정시기 비교	78
표 19. 각 제도의 지정기간 비교	78
표 20. 각 제도의 지정절차 비교	79
표 21. 각 제도의 근거법 비교	79
표 22. 각 제도의 등록증 교부 여부 및 절차 비교	80
표 23. 각 제도의 신청 시 제출서류 비교	80

표 24. 각 제도의 지정혜택 비교 82

표 25. 층위별 해당기관 102

표 26. 제도 정비에 따른 일정 개요 143

표 27. 인식조사 응답단체 법적유형별 현황 158

표 28. 인식조사 응답단체 활동분야별 현황 159

표 29. 인식조사 응답단체 장르별 현황 159

그림목차

그림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24

그림 2.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적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25

그림 3.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26

그림 4. 전문예술법인·단체 세부사업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26

그림 5.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자등록 현황 (154개 단체 중) 27

그림 6. 전문예술법인·단체 4대보험 가입 현황 (186개 단체 중) 28

그림 7.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정(수입) 현황 (180개 단체 중) 29

그림 8.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현황 (121개 단체 중) 30

그림 9.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정(지출) 현황 (179개 단체 중) 31

그림 10.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신청의 주요 목적 42

그림 11.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이 단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정도 43

그림 12.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후 변화사항 44

그림 13.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전의 목적과 지정 후의
효과 비교 45

그림 14.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제도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의 관심 정도	46
그림 15.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전의 목적과 지정 후의 효과 변화	54
그림 16.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후 받은 혜택 정도	57
그림 17.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자체 행정상의 혜택 경험 여부 ..	58
그림 18.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제도 전반에 걸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58
그림 19.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63
그림 20.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신청 심사기준 바람	66
그림 21.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심사 시 우선 고려사항	66
그림 22.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	67
그림 23.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단체의 의무사항	69
그림 24.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권과 운영방식	71
그림 25. 제도간 협력 형태(예)	133
그림 26. 기관 네트워크 (안)	134
그림 27.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사업영역(안)	141

I

연구 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 중장기적 관점의 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적 정책방안 개발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운영·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안) 마련을 통한 일관된 제도 운영체계 마련
-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지정혜택 사항 마련

2) 연구 필요성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다양한 법·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반구축 및 활용정책 마련 필요
- 2001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도입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제도적 반영, 보완 방안 마련 필요 발생
- 지금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육성’보다는 ‘지정’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16개 시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지정기준 및 방법이 상이하야 지역별 지정단체 수준의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지정제도와 관련 연구는 10년간 2차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환경반영 및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 필요

3) 연구 기대효과

- 지난 10년간의 지정제도 운영 상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한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간접지원정책으로 확립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기간

- 2008. 12. 23 ~ 2009. 5. 31 (약 5개월)

2)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 공동연구원
 - 김경옥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
 -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 김주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 김지연 (성미산 마을극장 기획팀장)
- 연구지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3) 연구 범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유사제도 사례 연구
- 지정혜택 현황 조사
- 지정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추가 정책과제 제안

4) 연구 방법

- 기존 연구보고서 및 자료 분석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발전 방안」(장미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년)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연구」(허은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2004년)
- 인식조사
 - 조사기간 : 2009. 3. 9 ~ 3. 30 (23일)
 - 조사대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경험이 있는 단체 담당자
 - 조사응답 수 : 160개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FAX 병행)
 - 조사기관 : (주)엔아이코리아
-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09. 4. 28 ~ 5. 22 (25일)
 - 조사대상 : 2009년 3월 현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320개 단체
 - 조사응답수 : 186개
 - 조사방법 : 각 지정권자(문화체육관광부 및 13개 시·도 담당자)가 지정단체 실적보고서 취합
 - 통계기관 : (주)엔아이코리아
- 전문예술법인·단체 그룹인터뷰
 - 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개선안 의견수렴
 - 일시 : 2009. 4. 29(수)

- 방법 : 면접조사 (연구진 3인 참석)
- 대상 : 7명 (2009년 3월 현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법인형태 별 1~2개 단체 선정)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최순화, 오성화 대표
 - 어린이문화예술학교 김숙희 대표
 - (주)PMC프로덕션 김용재 부장
 - (주)서울모테트합창단 박치용 단장
 - (주)이다엔터테인먼트 손상원 대표
 - 예술의전당 경영기획부 김우진

Ⅱ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도입배경
2. 제도 운영내용
3. 2009년도 지정현황
4.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현황

1. 제도 도입배경

- 가격기능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담당해온 기능들을 민간화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위축되었던 민간예술단체의 활성화 유도 (2001년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 국·공립 예술단체의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율성 침해 논란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음.
 -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 유지와 예술단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국·공립예술단체들을 무조건 축소 또는 민영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운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음.
- 국·공립 공연장이 민간직업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상주단체 계약을 통해 국·공립 공연장은 전속단체를 가질 때 보다 재정적 부담을 덜하고, 민간예술단체의 경우 상주단체로서 공연장소 및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얻음으로써 상시공연체계를 마련하여 직업예술단체서 활발한 활동을 영위하는 등 상호간 운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2001년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 민간직업예술단체의 경우 공연예술단체의 수는 많으나 수준 있는 작품의 상시 공연체계를 갖춘 전문직업예술단체는 부족한 현실에서 체계적인 공연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 대두
- 즉, 대부분의 주요 공연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민간의 경우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국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를 바탕으로 도입되었음.

2. 제도 운영내용

1) 근거법

● 문화예술진흥법

- 2000년 1월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신설됨. 2000년 10월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가 개정됨.
- 이 후 2007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로 변경되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또한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로 조항의 변경이 있었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 국가지정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
- 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표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연혁

년/월/일	법 개정 연혁
2000. 1. 12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0. 10. 1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07. 4. 1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7. 9. 1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 지정혜택

(1) 세제혜택

가.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며 전문 예술법인·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기부자의 당해년도 개인소득의 15%(2009년까지 적용,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 등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의 5% 등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음.(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나.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 전문예술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전문예술법인

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비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인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라.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지정기부금 단체인 전문예술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2) 각 시·도별 행정적 지원

-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제공 등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2009년도 지정현황

1) 전체 지정현황

● 2009년 3월 1일 현재 지정이 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총 330개 단체임.

표 2. 전문예술법인·단체 전체 지정현황(2009.3.1 기준)

지역/지정권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임의단체	합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소계			
문화체육관광부	0	8	8	0	0	8
서울특별시	31	6	37	22	52	111
경기도	5	11	16	1	27	44
인천광역시	1	0	1	0	6	7
강원도	6	2	8	0	18	26
대전광역시	0	0	0	0	4	4
충청북도	0	2	2	0	9	11
충청남도	0	0	0	0	0	0
광주광역시	4	1	5	0	19	24
전라북도	9	0	9	0	2	11
전라남도	0	0	0	0	0	0
부산광역시	9	0	9	0	5	14
대구광역시	3	0	3	0	27	30
울산광역시	0	0	0	0	2	2
경상북도	0	0	0	0	0	0
경상남도	6	1	7	0	27	34
제주특별자치도	1	1	2	0	2	4
합계	75	32	107	23	200	330

2) 지역별 현황

-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권 소재단체가 전체의 36.1%로 가장 많음.

▮ 표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

지역	합계(개)	퍼센트(%)	지역	합계(개)	퍼센트(%)
서울권	119	36.1	문화체육관광부	8	2.4
			서울특별시	111	33.6
인천경기권	51	15.5	인천광역시	7	2.1
			경기도	44	13.3
강원권	26	7.9	강원도	26	7.9
충청권	15	4.5	대전광역시	4	1.2
			충청북도	11	3.3
전라권	35	10.6	광주광역시	24	7.3
			전라북도	11	3.3
경상권	80	24.2	대구광역시	30	9.1
			부산광역시	14	4.2
			울산광역시	2	0.6
			경상남도	2	10.3
제주권	4	1.2	제주특별자치도	4	1.2
합계	330	100.0	합계	330	100.0

▮ 그림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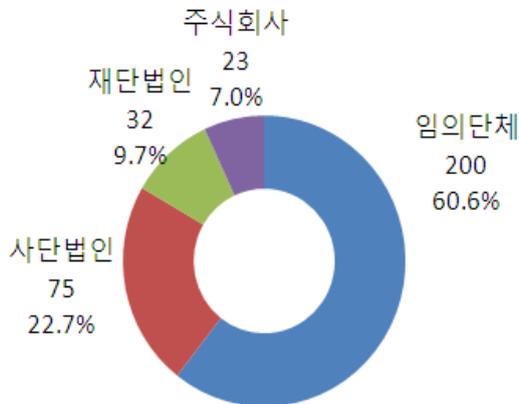
3) 법적유형

-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법적유형을 살펴보면, 임의단체가 전체의 59.7%로 가장 많으며, 영리법인(주식회사)은 그 수가 가장 적음.

Ⅰ 표 4.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적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Ⅰ

합 계		법 적 유 형				
		임 의 단 체	비 영 리 법 인	영 리 법 인		영 리 법 인 (주 식 회 사)
				(사 단 법 인)	(재 단 법 인)	
합계(개)	330	200	107	75	32	23
퍼센트(%)	100	60.6	32.4	22.7	9.7	7.0

Ⅰ 그림 2.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적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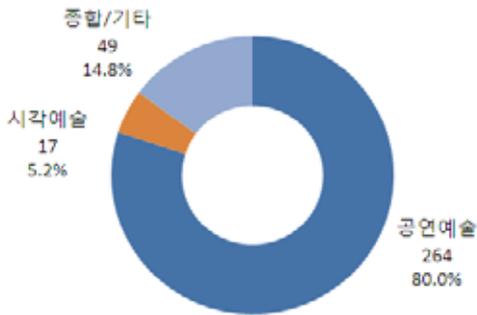
4) 사업유형

-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업유형은 공연예술분야가 전체의 80.0%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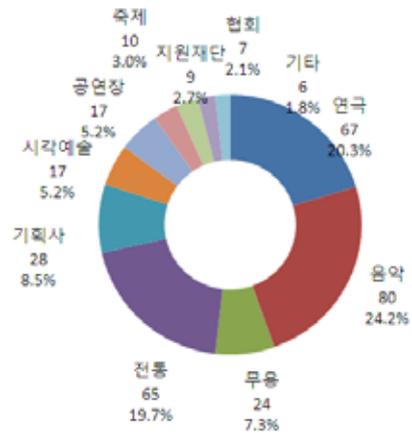
|| 표 5.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

합계		공연예술	시각예술	기타
합계(개)	330	264	17	49
퍼센트(%)	100.0	80.0	5.2	14.8

|| 그림 3.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별 지정현황 (2009.3.1 기준) ||



|| 그림 4. 전문예술법인·단체 세부사업유형별 지정현황 (2009.3.1 기준) ||



● 사업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연예술분야 중에서는 음악(24.2%)과 연극(20.3%) 단체가 많은 편임. 기타분야는 공연장(5.2%), 축제(3.0%) 순으로 나타남.

|| 표 6. 전문예술법인·단체 세부사업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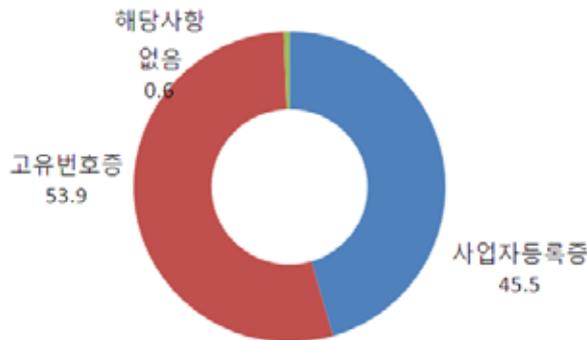
합계	공연예술						시각 예술	기타				
	연극	음악	무용	전통	기획사	공연장		축제	지원재단	협회	기타	
합계(개)	330	67	80	24	65	28	17	17	10	9	7	6
퍼센트(%)	100.0	20.3	24.2	7.3	19.7	8.5	5.2	5.2	3.0	2.7	2.1	1.8

4.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현황

1) 사업자등록현황

-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중 사업자 등록 유형을 기재한 154개 단체의 등록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유번호증’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45.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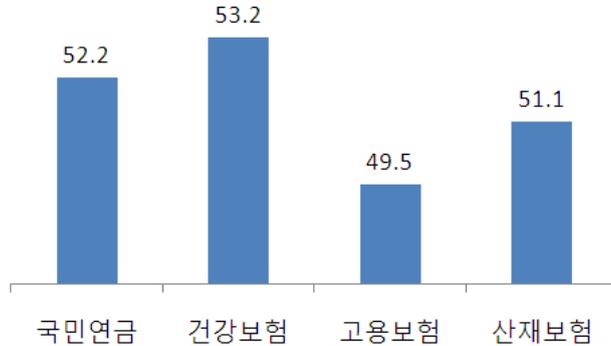
Ⅱ 그림 5.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자등록 현황 (154개 단체 중) Ⅱ



2) 4대보험 가입 여부

-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186개 단체의 4대보험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응답단체의 절반 이상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중 건강보험이 5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6. 전문예술법인·단체 4대보험 가입 현황 (186개 단체 중) ▮



3) 인력현황

-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중 인력현황에 응답한 184개 단체의 단체의 평균 보유 인력(단원, 행정지원인력수 모두 포함)은 총 40.95명으로 나타남.
- 인력현황에 응답한 184개의 단체 중 지원인력이 있는 단체는 171개, 단원이 있는 단체는 128개로 나타남.
- 지원행정인력을 보유한 171개 단체의 평균 지원인력 수는 13.06명, 단원을 보유한 128개 단체의 평균 단원수는 41.38명으로 나타남.
- 또한, 지원인력의 평균 정규직 인력은 19.33명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 인력은 21.61명으로 정규직인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표 7. 전문예술법인·단체 인력현황 (184개 단체 중) ▮

인력현황(전체)			인력현황(지원인력)			인력현황(단원)		
사례수(개)	합계(명)	평균(명)	사례수(개)	합계(명)	평균(명)	사례수(개)	합계(명)	평균(명)
184	7,534	40.95	171	2,234	13.06	128	5,296	4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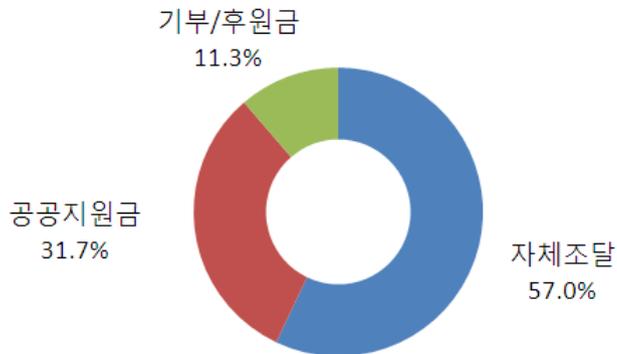
4) 재정현황)

(1) 수입

가. 전체 현황

-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중 수입현황에 대해 응답한 180개 단체의 평균 수입총액은 약 25억 6백만원, 중앙값²⁾은 약 1억 7,390만원으로 나타남.
- 자체조달의 비율은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지원금은 31.7%, 기부/후원금은 11.3%로 나타남.

Ⅰ 그림 7.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정(수입) 현황 (180개 단체 중)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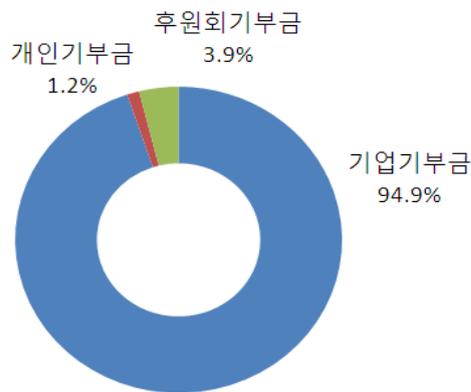


- 1) - 재정현황 전체적으로 평균값보다 중앙값이 더 유의미한 수치로 파악됨.
 - 지역의 일반적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국·공립단체 및 대규모 공연장 운영 법인들의 응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단체라 하더라도 운영형태 등에 따라 재정운영의 차이가 클 수 있음.
- 2) 중앙값 =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점수값의 절반이 떨어지는 분포의 점수값

나. 기부금

-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중 수입현황에 대해 응답한 180개 단체 중 기부/후원금이 있다고 응답한 121개의 단체의 평균 기부금 액수는 약 5억 960만원, 중앙값은 약 1,500만원으로 나타남.
- 기업기부금의 비율은 94.9%로 가장 높았고, 개인기부금이 1.2%, 후원회 기부금이 3.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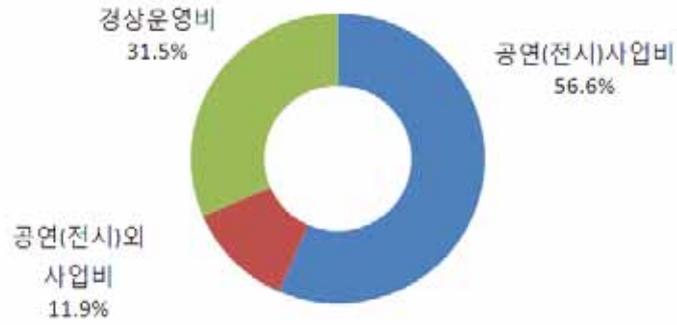
Ⅵ 그림 8.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현황 (121개 단체 중) Ⅵ



(2) 지출

-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중 지출현황에 대해 응답한 179개 단체의 평균 지출규모는 약 31억 5,800만원, 중앙값은 약 2억원으로 나타남.
- 공연(전시)사업비의 평균 비율은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전시)이외 사업비와 경상운영비는 각각 13.9%와 32.0%로 나타남.

|| 그림 9.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정(지출) 현황 (179개 단체 중) ||



Ⅲ

제도 개선의 필요성

- 1. 문화예술 환경변화**
- 2.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 문화예술 환경변화

1)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

(1)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변화

- 2001년 문화부문의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하였고 국가행정에서도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비중과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가치 상승 등 문화 향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어짐.
-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문화예술 수혜자를 위한 정책과 복권기금을 통한 문화예술지원 환경 구축이 확대됨.
- 2000년대 이후 수혜자를 위한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속에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프로젝트’, ‘전국문예회관 활성화 지원’ 등 찾아가는 공연예술이 증가되고, ‘생활속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의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액다건 중심의 지원이 다액소건으로 전환되면서 전략적 집중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음. 또한 공연제작 지원에 있어서도 성과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사후지원’, ‘우수예술단체 다년간 집중 지원’ 등 전문예술단체의 전문성 및 예술성의 검증을 통한 집중지원이 도입됨.
-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사회적 변화는 전문예술법인·단체로 하여금 단체의 예술성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의식 및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게 됨.

(2)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 2001년 이전부터 존재한 지역문화재단은 경기·강원·부천문화재단이며, 이 기관들의 역할은 문화재·시설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

- 2004년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문화진흥법(안)이 추진되면서 2004년 서울 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을 출발로 광역·기초 단위의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과 함께 지역문화정책 중장기 비전 마련의 필요성,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 강화, 현장중심의 지역문화정책실현, 중앙 중심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지원 등 지원정책의 변화가 확대됨.
- 2009년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운영되던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들이 광역지자체로 이양되고,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로 이양됨.
- 광역·기초 지역문화재단은 점차 지역문화정책 활성화 및 지원의 기능·역할로 확장되고 있으며, 더불어 재단의 독립성과 정체성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기부금 모집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확대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을 반영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음.
- 반면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정부의 정치적 현안에 따라 운영되기보다 정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성과 안정적 재정 마련이 요구되고, 그 일환으로 지역문화재단의 기부금 모집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예술경영 인식 변화 및 인력지원 확대

- 지역문화재단 확대, 뮤지컬 등 문화예술산업시장 확대, 문화예술국제교류 활성화 등 문화환경의 변화는 예술·문화경영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10년 사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예술경영, 문화행정, 문화정책 관련 학과의 신설이 늘어남.
- 예술/문화경영의 필요성은 문화예술 청년 인턴제 확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으로 전문교육을 받

은 이들의 현장 활동의 여건이 마련됨.

-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한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그리고 예술문화 경영 전문인력의 문화예술단체 활동은 문화예술단체의 경영마인드 변화에 기여를 함.

(4) 상주단체 필요성 확대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 문예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상주단체로 활용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음.
- 상주단체는 국·공립 공연장 및 전시장이 민간예술단체와 공공기획 공연·전시 등을 조건으로 해당 소관시설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상주단체가 되면 전속단체에 비해 재정적 부담을 줄여 공연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며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공연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관객 개발이 가능해져서 입장수익을 높일 수도 있음.
- 상주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관객확보, 대관중심에서 기획공연 기회 확대, 장기공연을 위한 공간 확보, 안정적 운영예산 마련 등 상주단체의 작품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됨.

2) 예술시장의 변화

(1) 기업 메세나의 변화

- 메세나의 전통적 의미는 기업의 조건없는 예술지원임. 그러나 최근 메세나는 기업의 문화투자적 관점에서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결합이 예술지원으로 귀결되는 협력 개념의 윈윈(win-win) 패러다임이 대세
- 과거 자선적 관점과 달리 현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한 ‘사회공헌’, CIBI 제고를 위한 홍보 등에 예술을 활용하는 ‘마케팅’,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인적 자원 및 복지에 예술을 활용하는 ‘조직경영’ 과정에서 메세나를 적용함으로써 문화마

케팅 개념이 접목되고 있음.

- 최근들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속하며 이는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기술 이외에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 문화예술발전과 국민의 문화복지/삶의 질을 향상시켜기는 사회적 공헌 활동과 소비자들의 감성/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문화마케팅이 새로운 기업이미지 제고와 성과로 다루어지고 있음.
- 기업의 사회공헌은 과거의 개인적 관계를 통한 협찬 지원, 고객 마케팅으로서의 티켓 구매를 넘어서 1:1 기업/단체 매칭, 찾아가는 메세나 등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음.
- 정부는 기업메세나의 확대를 위해 한국메세나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중소기업진흥원내에 문화경영지원센터를 두고 중소기업 활성화에 문화예술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음.

(2) 온라인 기부 등 민간 기부 다양화

- ‘아름다운재단’을 시작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부활동은 이전의 방식을 탈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1:1 마케팅 방식을 적용하게 됨.
- 기부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세제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민간의 기부참여 제고의 계기가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온라인을 통한 기부 마케팅을 다양화시킴으로써 개인들이 기부문화에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그러나 아직까지 기부에 대한 인식이 서양 국가들 처럼 확대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은 고급예술로서 수익행위나 문화산업, 혹은 국가의 공공성에 근거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기부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3) 문화예술의 투자/펀드 확대

- 한국뮤지컬 시장은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뮤지컬 관람객의 증가와 함께 뮤지컬 제작투자도 늘어나고 있음.
- 중대형 뮤지컬이나 대형전시·공연의 등의 사업규모는 수십억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공연을 제작·유치하는 문화예술단체는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투자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공연시장의 변화는 기획·제작사로 하여금 중소규모 공연제작에 있어 예술경영 체계구축을 넘어 기업으로서의 이윤 극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형 뮤지컬 제작사와 공연기획사를 중심으로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음.

3)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대

(1) 비영리기관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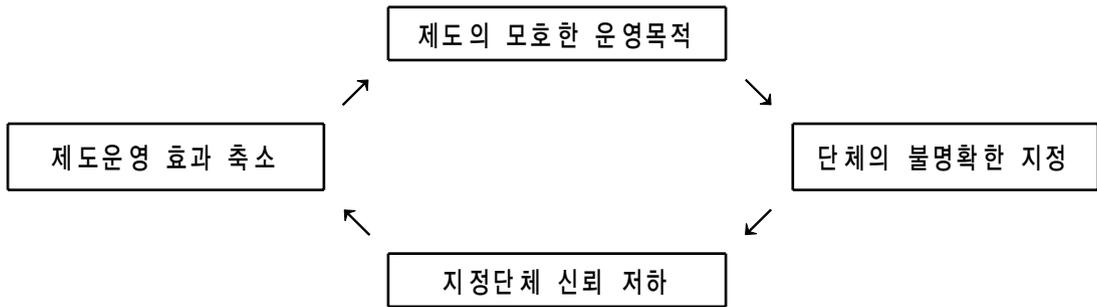
- 비영리기관은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의 중간에 놓여 있으면서 공공이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현대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비영리기관에는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종교기관, 지역단체, 캠페인단체, 노동조합, 사교클럽, 서비스 제공기관, 정치단체 그리고 기타 봉사기관들이 있으며 상업적인 성공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많은 예술단체 및 기관 또한 비영리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비영리기관들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비영리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사회보장 혹은 복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기관들도 문화복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역할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

(2)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 비영리기관은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혜택을 목적으로 하기에 공공재를 생산하며 이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이 증대됨.
- 정부는 사회적 자분을 생산하는 비영리기관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과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은 비영리예술기관에 대해 이들 기관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에 지방세, 연방세, 그리고 지역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저렴한 우편요금 혜택(3등급 우편요금의 60% 할인)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대중 정부시절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원함.
- 현재 국내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사회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연/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 문화예술단체의 인식변화는 창작자 중심의 작품제작에서 수혜자 중심의 가치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그 가치가 단지 문화예술활동이 수익성 기준이 아닌 사회적 가치, 소통의 방식을 다시 접근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의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예술의 영리성에 대한 재평가, 단체 경영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됨.

2.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 제도의 모호한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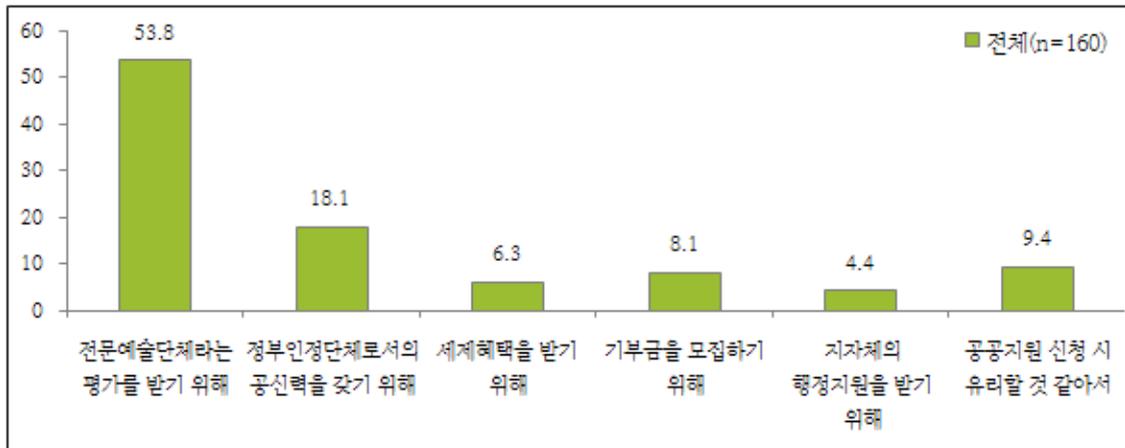


(1) 제도의 운영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는 제도임.
- 제도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운영의 핵심은 ‘지정’과 ‘육성’이나, 지금까지 주로 ‘지정’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육성’은 지원 및 혜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재 ‘육성’에 대한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전체적인 제도운영방향에서 ‘어느’ 단체를 ‘어떻게’ 지정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만약, ‘지정’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현재 가장 대표적이고 뛰어난 단체를, ‘육성’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할 것임.
 - 물론, 두 가지 모두 필요하나 보다 더 핵심으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한 언급임.

- 현재 제도운영의 목적 및 방향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때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음.
- 실제로 예술단체들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려 한 주요 목적은 전문적인 예술단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됨.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려고 한 주요 목적은 ‘전문적인 예술단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기 위해’가 절반 이상인 53.8%로 나타났고,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18.1%)’,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법적형태별로는 임의단체, 사단법인, 주식회사는 ‘전문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높게 나왔으나 재단법인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림 10.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신청의 주요 목적 ▣



(2) 제도 운영의 효과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현재 9년째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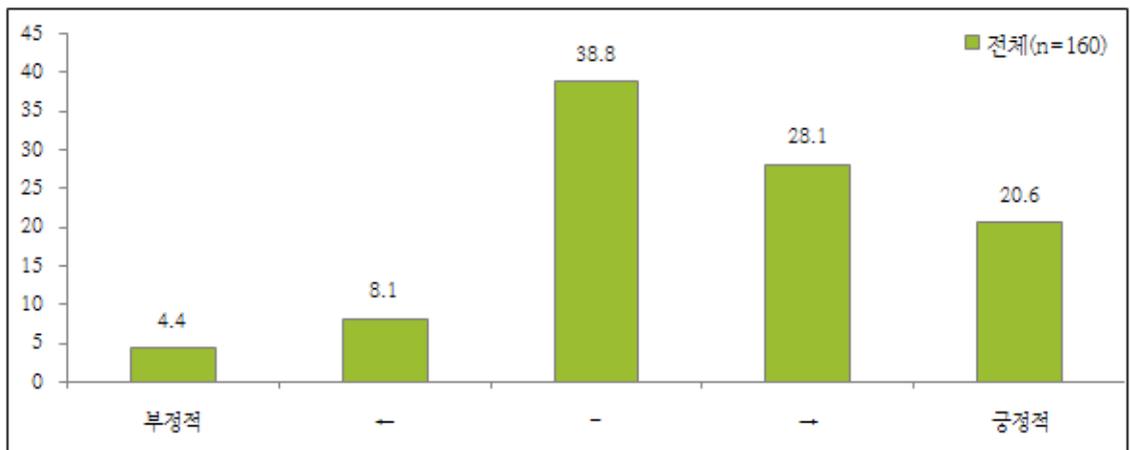
- 단, 각 시·도별 제도 운영도입 시기는 다름.
- 현재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표 8. 지역별 제도운영 도입 시기 ▣

시행 연도	지정 권/지역명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경상남도 / 서울특별시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강원도 / 전라북도
2003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2004년	충청북도
2005년	경기도
2008년	울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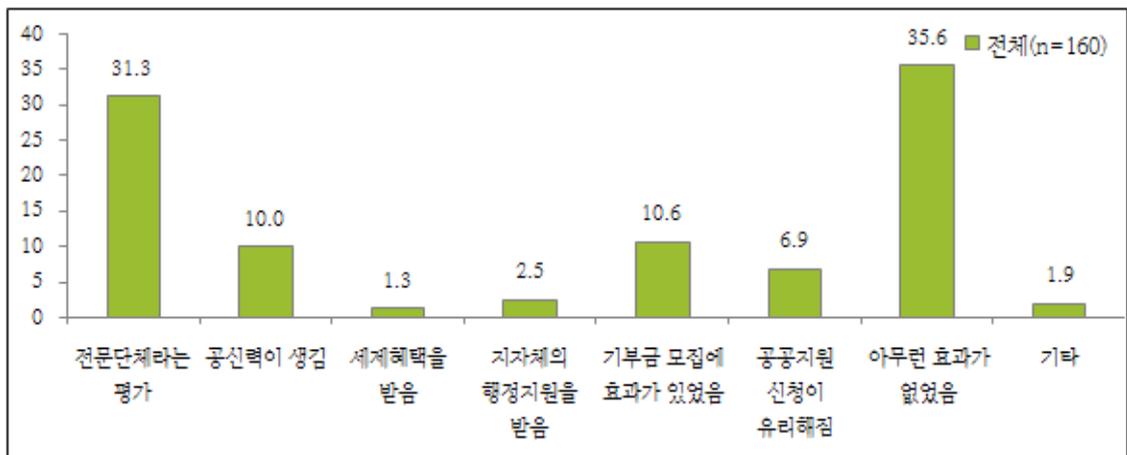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로의 지정은 단체 활동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의 지정이 미친 영향력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이 48.7%로 나타났고 부정적 응답은 12.5%로 나타남.

▣ 그림 11.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이 단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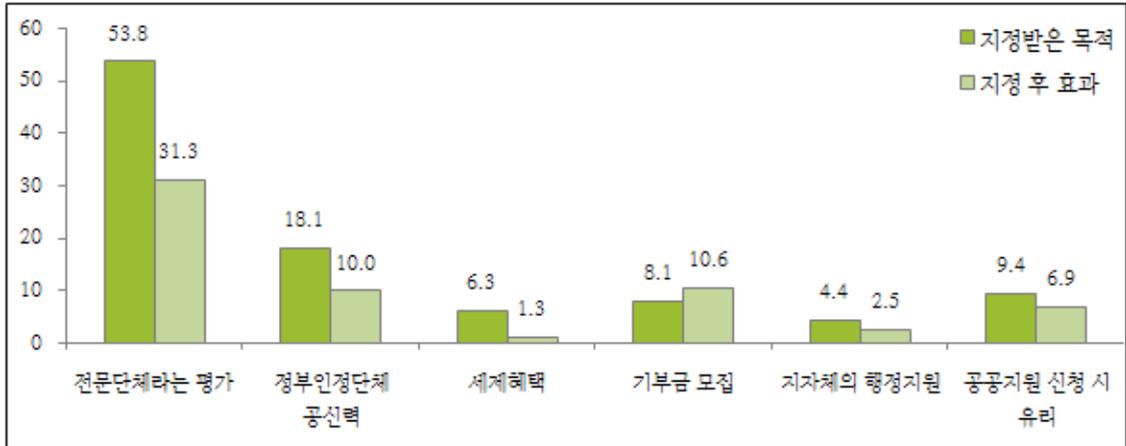
-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이후의 효과에 대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고, ‘전문적인 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31.3%로 나타났음.
 - 전체 조사결과에서 지정 후 세제혜택을 받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모집단 과반수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그림 12.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후 변화사항 ▣



- 특히, 단체들의 지정신청 시의 목적과 지정 후 효과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지정단체들이 느끼는 제도의 효과는 낮은 편임.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목적과 지정받은 후의 효과를 각 1순위까지 비교한 결과(지정 후 효과 질문 문항에서 ‘아무 효과 없었음’ 항목은 제외) 대체로 지정받은 목적에 비해 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나 ‘기부금 모집’ 항목은 목적에 비해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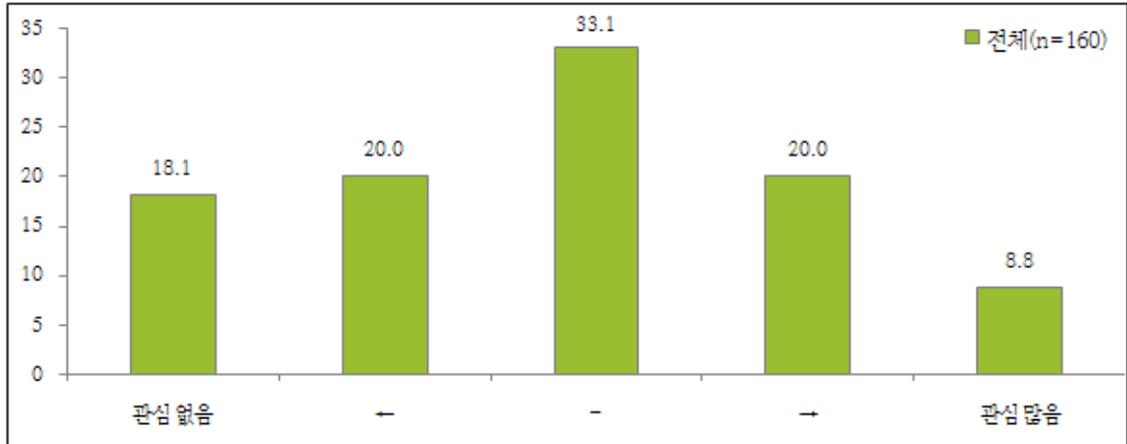
▮ 그림 13.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전의 목적과 지정 후의 효과 비교 ▮



(3) 지정단체의 신뢰성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거나 전문성을 목표로 운영되어 지고 있으므로 제도의 핵심은 ‘전문성’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정대상 및 지정심사 요건 등을 살펴보면 ‘전문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못함.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단체 전체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은 비단 지정단체의 이미지 뿐 만 아니라 제도운영에 있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유기적인 연계방안 마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전체 문화예술단체들에게도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아 제도에 대한 관심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 문화예술단체들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도는 낮은 편(38.1%)으로 나타났음.

▮ 그림 14.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제도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의 관심 정도 ▮



2) 제도 근거법 및 관련 법률의 취약

(1) 문화예술진흥법

가. 문화예술진흥법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근거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는 다른 법에 비하여 매우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로의 지정에 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음. 단,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제1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등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다루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특히,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는 이러한 업무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제2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에 속해 있어서 전문예술법인 지정 및 육성 사업의 취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에서 명시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만 적용되는 사항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시행령에서는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대상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도 다소 모호한 편이며, 국가지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예술단체에서부터 그 밖에 공연장, 예술단, 전시행사 운영 단체 등으로 매우 폭넓게 되어 있음.
 - 실질적으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2년까지 8개단체 지정 이후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 사례가 없음.

(2) 기부금품 모집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적용되지 않는 법률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이때에 ‘문화예술진흥법’이 포함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인’이 적용되므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모두 포함

- 기부금품 모집이 적용되는 대상은 법적유형이 ‘법인’이어야 하므로 모든 법적유형을 아우르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제도에서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이 모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비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를 통해 지정받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포함

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포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동법 4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함(동법시행령 제13조)
 - 그러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도 포함됨.
 -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의 경우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게 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됨.
 - 이는 각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지원재단이 본 제도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임.

(3) 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소득세법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이는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명시되어 있음.
 - 소득세법 상의 지정기부금 범위는 사실상 법인세법상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법상의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대상은 ‘비영리법인’이나,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를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됨.
 - 그러나,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영리법인의 경우 해당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세법상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고유목적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세무처리 시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인정 시 이에 대한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무당국과의 협의 필요
 -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시 기재된 비영리사업 또는 목적사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협의 필요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조세특례제한법

- 기본대상은 비영리법인만 해당되며, 그 범위는 50%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음.
 -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등이며, 비영리법인(전문예술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1항」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 특례대상으로는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외에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포함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로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09년까지 한도)
 -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임.
 - 즉, 전문예술법인·단체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전체 8개 기관/단체만 적용되고 있음. ((재)국립극장발전기금,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서울예술단, 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각 시·도 조례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16개 시·도 모두 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자체별로 명시된 내용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
 - 2001년 각 시도별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지침 중 개정안 (문화관광부 훈령 제72호, 2001.5.15)」마련
 - 또한 같은 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운영 기본지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조례 개정시 참고 자료(조례문안, 관련서식 등) 등을 각 시도에 공지하였음.
 - 각 시도에서는 지침안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함.
 - 조례, 시행규칙, 추가설명자료, 관련서식 등의 마련은 각 지역별로 상이함.

|| 표 9. 16개 시·도 조례의 주요항목 비교 ||

주요항목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조례	○	○	○	○	○	○	○	○	○	○	○	○	○	○	○	○
시행규칙	○	X	○	○	○	○	○	○	○	X	X	○	○	X	X	○
추가설명	X	X	X	○	X	X	X	○	○	X	X	X	X	X	X	○
관련 서식 제공	지정신청서	○	○	X	○	○	○	○	○	○	○	○	○	○	○	○
	지정서	○	○	X	○	○	○	○	○	○	○	○	○	○	○	○
	지정대장부	○	○	X	○	○	○	○	○	○	○	○	○	○	○	○
	실적보고서	X	X	X	X	○	X	○	X	○	X	X	X	○	X	X

- 조례, 시행규칙, 추가설명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함. 특히, 해당범주 안에서 내용은 설명되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표 10. 16개 시·도 조례의 주요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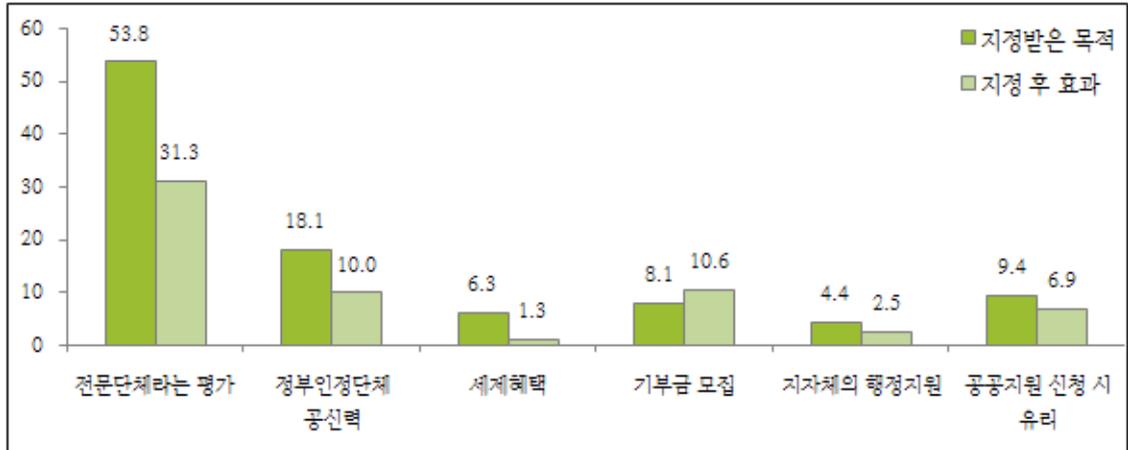
주요내용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지정범위	○	○	○	○	○	○	○	○	○	○	○	○	○	○	○	○
지정취소 사항	○	○	○	○	○	○	○	X	○	○	○	○	○	○	○	○
지원·육성 사항	○	○	○	○	○	○	○	X	○	○	○	○	○	○	○	○
지정대상요건(공통)	○	○	○	○	○	○	○	○	○	○	○	○	○	○	○	○
지정대상요건(분야별)	○	X	○	○	X	X	○	○	○	X	X	X	X	X	X	○
지정계획공고 방법	○	X	○	X	X	○	X	X	X	X	X	X	X	X	X	X
지정신청 방법	○	○	○	○	○	○	○	○	○	○	○	○	○	○	○	○
지정결정 방법	○	X	○	○	○	○	X	○	○	○	X	○	○	○	○	○
사업실적보고	○	X	○	X	○	X	○	X	○	X	X	○	○	X	X	X
관리·재지정 평가기준	X	X	○	○	○	○	○	○	○	X	X	X	X	X	X	○

3) 지정혜택의 불명확성

(1) 정부인증단체로의 신뢰성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국가 또는 각 시·도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정은 자연스럽게 정부인증 단체로의 위상을 가지게 됨.
- 특히, 단체의 지정신청의 목적과 지정 후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인정단체의 공신력’에 대한 부분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인정단체의 공신력’에 대한 기대도(18.1%)에 비하여도 그 효과는 낮은 것으로(10.0%) 나타났음.

▮ 그림 15.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전의 목적과 지정 후의 효과 변화 ▮



(2) 세제상의 혜택

-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가.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 우리나라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부금품 공개 모집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술 단체들은 기부금품 공개 모집 혜택을 누릴만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며, 예술 단체들의 개별적인 노력 뿐 아니라 집단적인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고 있음.

나. 기부금 소득 공제 또는 손금 인정

- 이 혜택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기부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으며, 타 단

체와의 차별성을 갖게 되므로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다고 해서 기부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님.

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 이 혜택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기부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문예술법인 중 영리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전문예술법인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단체는 극히 소수의 국·공립 단체들에만 해당되는 혜택은 전문예술법인 지정으로 인한 혜택이라 보기 어려움.

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면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됨.
- 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함)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라 함은 ①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②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의 증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비영리 고유목적이 없는 전문예술단체와 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은 혜택에 해당되지 않게 되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대부분의 출연은 법인의 설립 시에 이루어 지는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창단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혜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마. 전체 정리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세제혜택 적용에 다소 모호한 지점이 발생함.
 - 실제 적용에 대하여 법적유형 상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를 구분하면 비영리법인·단체를 중심의 혜택이 많이 있음.
 - 혜택 중 ‘지정기부금 손금인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의 인정’에 따르는 부차적인 세제혜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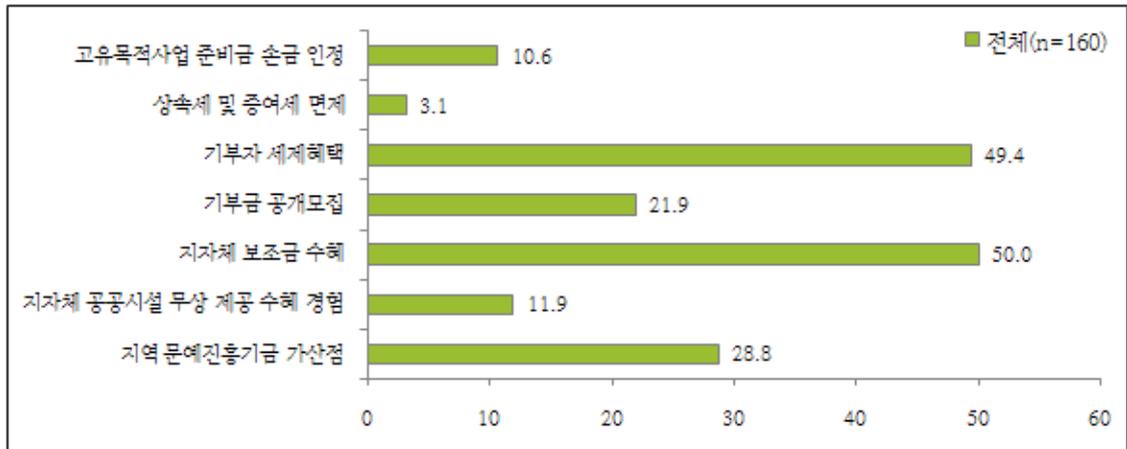
▶ 표 11. 법인형태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혜택 적합성 여부 ▶

구 분	비영리성 법적유형		영리성 법적유형	
	비영리 법인 (사단/재단)	임의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영리법인 (주식회사 등)	임의 단체 (개인사업자)
기부금품 모집	해당	해당인됨	해당	해당인됨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해당	해당	모호	모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해당	해당	해당인됨	해당인됨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해당	해당	모호	모호

- 실질적으로 지정단체들이 느끼는 세제혜택 또한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나타남.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받은 세제혜택사항에 대하여 기부자 세제혜택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기부자 세제혜택’은 전국적으로 과반수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형태에서 각각 77.4%, 60%를 나타냈음. 활동분야에서는 공연장과 전시활동 단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미술 분야에서 기부자 세제혜택이 높고,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비율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비교적 기부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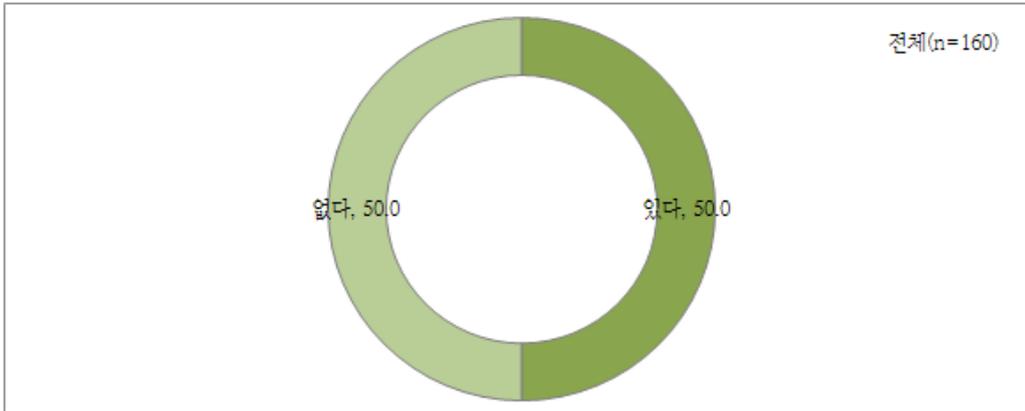
▣ 그림 16.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후 받은 혜택 정도 ▣



(3) 행정상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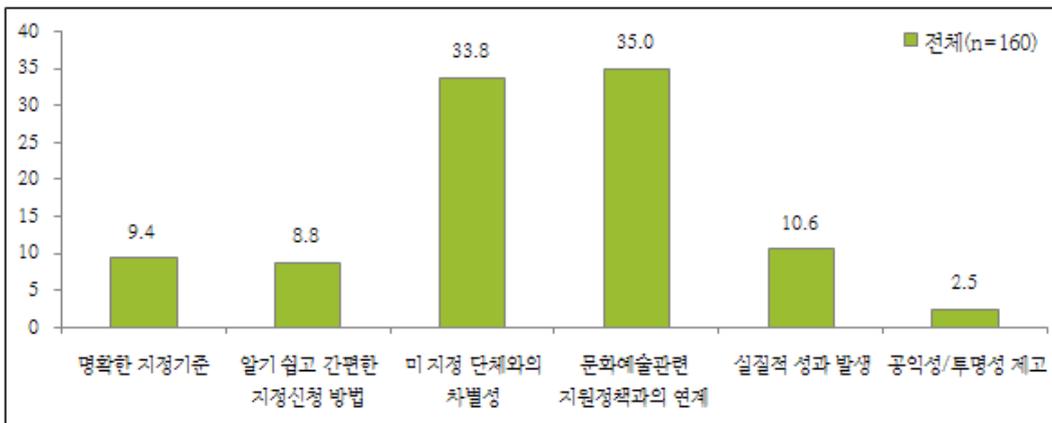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정단체에 필요한 경비 보조, 시설 무상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원 심사에서 가산점 제도를 부여하는 지자체(광주, 강원, 전북)도 있으나 아마저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며, 조례상 해당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무상 사용(부산, 경기)이나 대관 우선 혜택(광주, 강원)이 제시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실질적으로 지정단체들은 ‘지자체 보조금 수혜’가 행정상 가장 큰 혜택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도 절반정도밖에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받은 행정상의 혜택에 대하여 ‘지자체 보조금 수혜’를 받은 경험이 전체의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림 17.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자체 행정상의 혜택 경험 여부 ■



- 특히, 지정단체들은 제도 운영에 대해서 ‘기타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가장 바라고 있음. 이는 각 시·도에서 지정된 단체로써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대상으로서의 다양한 혜택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운영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이 33.8%로 그 뒤를 이었음.

■ 그림 18.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제도 전반에 걸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



4) 16개 시·도별 운영방식의 차이

(1) 지정시기 및 유효기간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는 시기 및 유효기간은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
- 현재 각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음.

▮ 표 12. 16개 시·도별 지정시기 및 유효기간 ▮

지역	지정 횟수	공고		지정	
		시기	기간	지정시기	지정유효기간
서울	1년 1회	10월	2-4주	12월	기간 없음
인천	1년 2회	11월	2주 이하	12월	2년
경기	1년 1회	10월	2-4주	12월	기간 없음
강원	1년 1회	9월	2-4주	2월	2년
대전	1년 1회	6월	2주 이하	7월	3년
충북	1년 1회	11월	2-4주	1월	2년
충남	미운영 /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광주	1년 1회	9-10월	2-4주	11월	2년
전북	1년 1회	9-10월	4-6주	11월	2년
전남	미운영 /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구	1년 1회	12월	2-4주	3월	2년
부산	1년 1회	10월	2-4주	12월	기간 없음
울산	2년 1회	11월	2-4주	1월	2년
경북	미운영 /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경남	2년 1회	10월	2-4주	3월	2년
제주	1년 1회	9-10월	6주 이상	11월	2년

가. 지정공고 및 지정시기

-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 연말(12월)에 심사결과를 공지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2년에 1회 지정하는 지역은 인천, 울산, 경남 3개 시·도임.
 - 주로 하반기에 신청접수 및 지정확정을 하는 편인데 비해 대전은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에 지정확정을 하고 있음.
 - 심사 후 지정확정이 되는 시기는 지역별 차이가 많은 편인데 1월(울산), 2월(강원, 충북), 3월(대구, 경남), 7월(대전) 등으로 나타남.
- 지정공고 시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밖에 없음.
 - 서울시 지정계획 조례

제3조(지정계획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중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한다.

- 경기도 지정계획 조례

제3조 (지정계획 공고)

도지사는 매년 10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및 경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지정계획 시행규칙

제2조(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매년 11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지정심사 및 결과발표 시기 등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지정유효기간은 2년인 지역이 많으나, 유효기간이 없는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3개 시·도이며, 대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년임.
- 조례에 지정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지역은 강원(2년), 대전(3년), 충북(2년), 전북

(2년), 제주(2년)임.

- 강원도 조례

제16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도내 시·군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대전시 시행규칙

제10조(지정 유효기간등) 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신청서상의 명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정부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조례

제10조(지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단체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후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도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조례

제13조의2(지정 유효기간등)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서상의 명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주도 조례 별표사항 : 지정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지정 평가기준 항목에서 향후 2년간 내용을 토대로 지정기간이 2년임을 짐작할 수 있음.

3. 재 지정시 평가 기준

가.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나. 지정 1차연도에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향후 2년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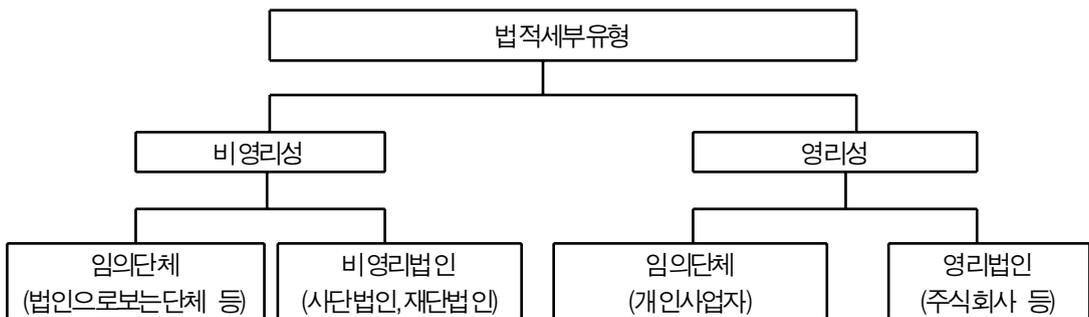
라. 상기 가 내지 다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지정대상 자격요건

가. 법적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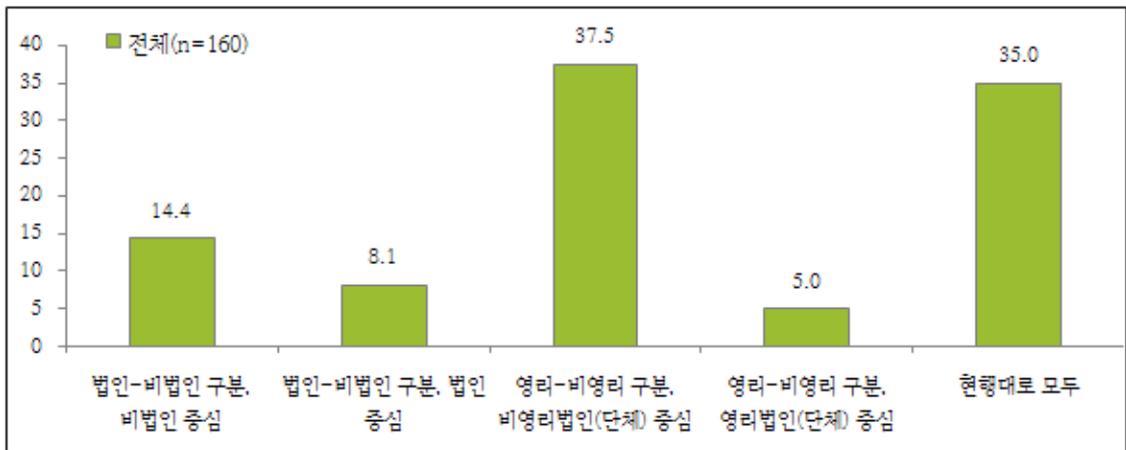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법적유형은 임의단체와 법인을 포괄하고 있으며,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모두가 대상임.
- 현재 영리법인(주식회사)으로 지정된 단체는 총 23개로 이 중 22개는 서울시, 1개는 경기도에서 지정되었음.
- 이로 인해 법적유형별로 지정혜택에 따른 차이 및 관련법 해석 등의 모호함이 발생하고 있음.

▣ 표 13.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적유형 구분 ▣



- 지정단체들도 제도의 주요대상은 비영리성을 중심으로 한 법인·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적 측면에서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법인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사단, 재단 등)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현행대로 모두’가 35.0%로 나타남.

▣ 그림 19.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나. 설립주체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의 유형은 민간단체에서부터 국·공립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음.
- 특히, 2003년 이후부터 문화재단의 지정이 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출자·출연을 통해 설립한 단체들의 지정도 늘어나고 있음.
- 이는 현재 지정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운영대상과 다소 벗어나는 범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서울시와 제주시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서 지정대상의 범위에 각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단체’를 명시하고 있음.

다. 장르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의 장르는 공연예술, 시각예술로 한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공연장 또는 예술단 운영,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 현재 각 시·도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정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단체 2.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 예술단 운영법인·단체 3.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로 정의하고 있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 등의 분야에 대한 포함내용 등은 고려해 볼 수 있음.

라. 활동유형

- 현재 지정대상의 활동유형은 장르별로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운영 형태로는 단체 운영과 시설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표 14.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 구분 ▮

유형	공연예술	시각예술
단체운영	예술단 운영 법인·단체	전시행사(비엔날레 등) 법인·단체
시설운영	공연장(극장) 운영 법인·단체	전시장 운영 법인·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시설에는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이 중 공연장 운영 법인·단체와 전시장 운영 법인·단체로의 해당범위가 불분명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관련 [문화시설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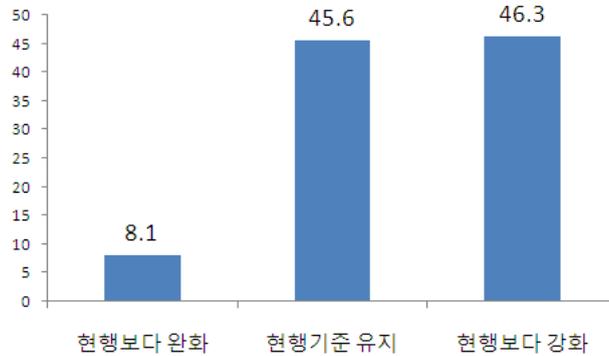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 전시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문화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그 밖의 문화시설

- 관련법에 등록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한 지정범위 표현이 모호함.
 - 공연장의 경우에는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과 아닌 공연장으로 구분됨.
 -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박미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미술관과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됨.
 - 문예회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전수관 등도 지정대상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지정 시 혼돈을 주고 있음.

마. 활동실적

- 신청 시 단체들의 자격요건은 공연예술의 경우 매년 1편 이상, 시각예술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지정단체들은 이러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현행기준보다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청기준이 되는 자격요건에 대하여 ‘현행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단체가 46.3%로 가장 많았고, ‘현행기준 유지’는 45.6%로 나타났으며, ‘현행보다 완화’는 8.1%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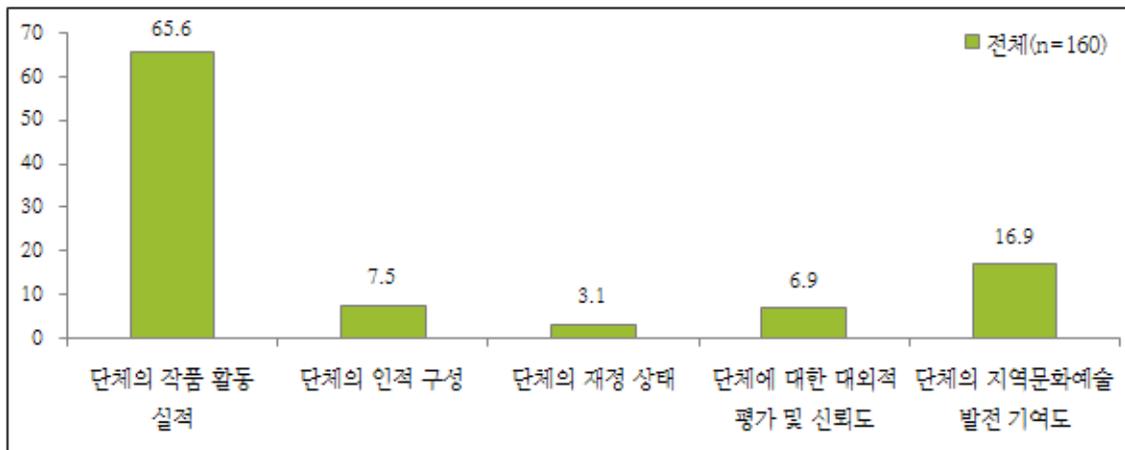
▣ 그림 20.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신청 심사기준 바람 ▣



(3) 지정심사 요건

-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정심사의 ‘지역문화예술발전 기여도’를 주요항목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 ‘활동계획 및 실적서류 첨부상태’가 기준이 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각 시·도별 차이가 큼.
- 이렇게 다른 심사기준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정단체들의 운영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림 21.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심사 시 우선 고려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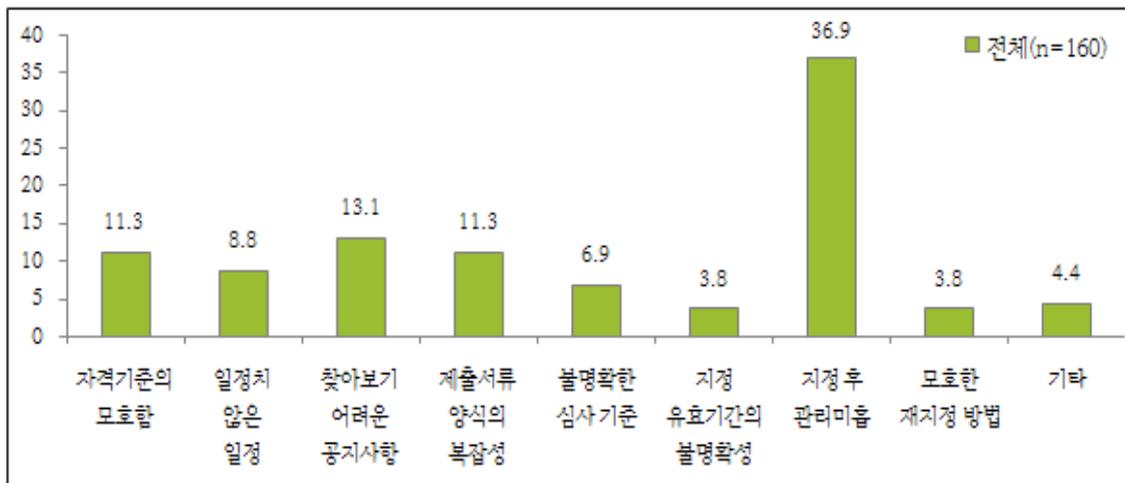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속성 등)’이 65.6%로 가장 높았고, ‘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가 16.9% 등으로 나타남.

5) 지정 후 관리 미흡

- 지정단체들이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사항은 ‘지정 후 관리미흡’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지정 후 관리미흡’이 36.9%로 가장 높았고, ‘찾아보기 어려운 공지사항’이 13.1%로 나타남.

■ 그림 22.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 ■



(1) 지정단체 DB관리

- 현재 각 시·도별 각기 다른 지정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정단체에 대한 정확한 결과 및 관련정보 취합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지정권자는 국가(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시·도에 있다는 사항만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의 DB취합·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하여는 매우 불분명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도 근거법 등이 없고 각 시·도와 의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음.
- 각 시·도별 지정단체 관리의 내용 및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각 지정단체의 관련정보(명칭 변경, 법인격 변경, 소재지 변경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단체에서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변경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2) 재지정 및 지정취소

-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후에 재지정하는 시스템이 지자체마다 다르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대부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정권자에 의하여 취소된 사례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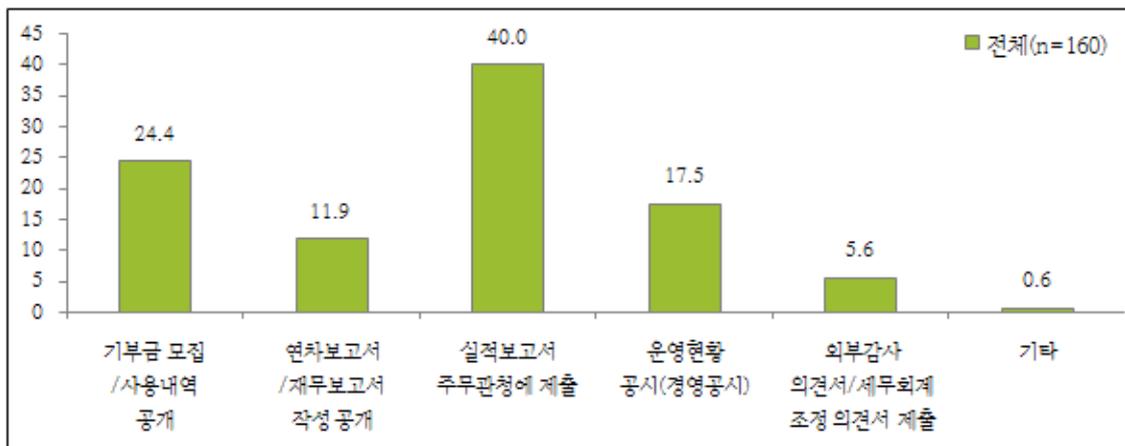
(3) 실적보고

- 현재 지정단체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하도록 조례 상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대구, 부산, 울산임.
 -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에만 실적보고를 받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자료 취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서울시의 경우, 2009년도 3월말까지 113개의 지정된 예술법인단체에 운영실적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한 결과, 79개 법인 및 단체만 제출되었고, 이중 19개소는 미제출이며 제출된 2개소는 공연실적이 전혀 없으며, 2개소는 이미 해산되었고, 이전 등의 사유로 연락이 두절된 단체도 11개소에 달하였음.

- 운영실적보고서 양식이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하여 통일된 실적현황 파악이 불가능함.
- 실적에 대한 정보취합의 부실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운영전문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뢰성을 쌓아나가야 함.
- 따라서 철저한 사후 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상 관련 규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현재 지정단체들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투명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에 실적보고서 제출’의 의지가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공익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이 40.0%로 가장 높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가 24.4%,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단체의 운영현황 공시(경영공시)’가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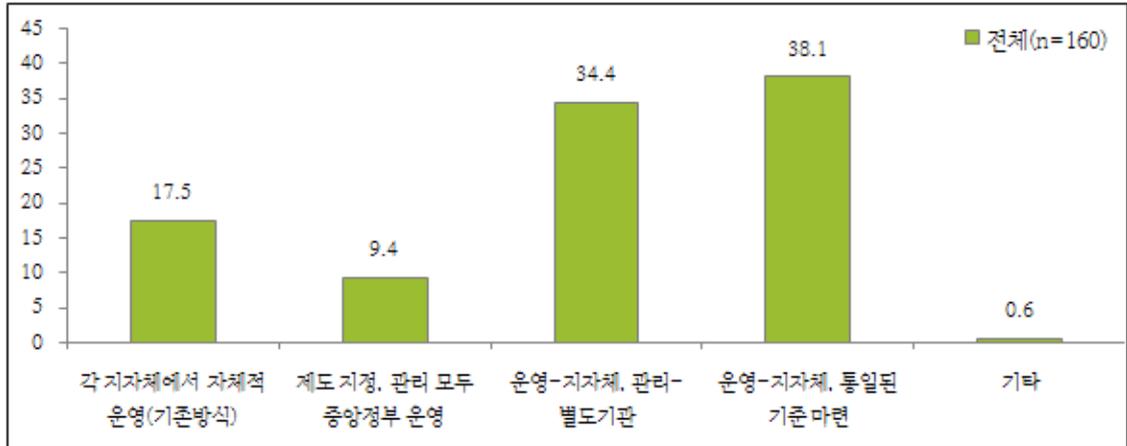
■ 그림 23.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단체의 의무사항 ■



6) 지정내용 및 방법의 통일성 부족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문화예술과의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담당자의 보직변경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타 업무에 비해 중요도가 높지 않음.
 - 본격적인 업무 수행 횟수는 1년에 1회, 2년에 1회 정도로 타 업무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짐.
- 또한 운영과 관련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고 통일된 운영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제도의 내용 및 세법상의 혜택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설명해줄기가 어려움.
- 지정단체에서는 본 제도를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운영상 현재보다 통일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도의 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8.1%로 가장 높았고, ‘제도의 운영은 각 지자체가 하되, 이를 지원 또는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4.4%로 나타남.
 -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17.5%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고 별도의 관리기관을 두거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을 원하는 비율이 72.5%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그림 24.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권과 운영방식 ▮



IV

제도관련 참고사례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1. 국내 사례

1) 비교대상 제도 유형

- 정부가 허가·지정을 통해 해당 법인 및 단체를 육성하는 제도로서 지정된 법인 및 단체에게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각 제도는 발생 및 운영의 목적, 주무부처, 혜택 등은 차이가 있으나 제도운영의 틀 안에서 일반사항에 대한 비교 가능
- 각 제도들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제도의 운영방식의 비교를 통한 현 제도의 취약점 및 보완점 모색

2) 특징별 유형 비교

(1) 근거법 및 주무부처

- 제도운영을 위한 개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까지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타 제도에 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내에 하나의 법조항에

만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표 15. 각 제도의 근거법 비교 】

제도	근거법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2) 주요대상 법적형태

- 대부분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임의단체에서부터 영리법인까지 법적유형 전체를 아우르고 있음.

【 표 16. 각 제도의 주요대상 법적형태 비교 】

제도	제도 주요대상 법적형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임의단체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비영리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임의단체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임의단체(비영리로 인·허가받은 단체) (단, 영리법인은 정관에 사회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지정요건

- 각 제도의 운영목적에 따라 지정요건 등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투명한 회계운영과 활발한 활동실적 등이 기준이 되고 있음.

【 표 17. 각 제도의 지정요건 비교 】

제도	지정요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1)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 유지 (2) 창단(개관)한지 2년 이상이 될 것 (3) 일정 실적이 있어야 함. (공연예술분야 : 매년 1편 이상 정기공연 실적, 시각예술분야 : 매년 4편 이상의 전시실적)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1) 박물관·미술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을 것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사회적기업	(1) 유급근로자 고용 (2) 사회적 목적 실현 (3)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5) 정관이나 규약 (6)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4) 지정시기

- 각 제도의 지정시기를 비교해보면 다른 제도들은 상시적 또는 1년에 4회 이상 신청

및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데에 비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1년에 1회로 한정되어 있음.

- 또한 회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및 지정시기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데에 비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각 시·도별 시기가 다름.

【 표 18. 각 제도의 지정시기 비교 】

제도	지정 시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일반적으로 1년 1회 (각 시·도마다 상이)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상시적으로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1년 4회 (매분기별)
비영리민간단체	상시적으로 지정
사회적기업	1년 4회

(5) 지정기간

- 각 제도의 지정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기간이 없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간은 기간이 없거나 2년, 3년 등 각 시·도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표 19. 각 제도의 지정기간 비교 】

제도	지정 기간
전문예술법인·단체	각 시·도마다 상이(기간없음, 2년, 3년 등)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기간 없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5년 (지정일일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기간 없음
사회적기업	기간 없음 (단, 지원기간은 3년)

(6) 지정절차

- 대부분 제도는 각 시·도지사에게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다른 제도에 비해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는 현지조사를 실시함.

【 표 20. 각 제도의 지정절차 비교 】

제도	지정절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신청서류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주무관청 승인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신청서류 제출 → 시·도지사 접수 → 현지조사 및 등록심의 → 결과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제출 → 주무관청 추천 및 서류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서류 제출 → 주무관청 승인
사회적기업	신청서류 제출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 주무관청 승인

(7) 주무부처 및 접수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제도는 각 시·도의 담당부서에 신청·접수에서부터 지정(인증)까지 진행하고 있음.

【 표 21. 각 제도의 근거법 비교 】

제도	주무부처	접수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담당부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담당부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	각 시·도 담당부서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안전부	1개 시·도 활동 : 각 시·도 담당부서 2개 이상 시·도 활동 : 주무부처
사회적기업	노동부	각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8) 등록증 교부 여부 및 절차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비영리민간단체는 관련 등록증을 별도로 교부하고 있음.

【 표 22. 각 제도의 등록증 교부 여부 및 절차 비교 】

제도	등록증 교부 여부	등록증 교부 시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등록증 교부	지정확정 이후 (시기는 각 시·도별 상이)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등록증 교부	지정확정 이후 (시기는 개별적으로 진행)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
사회적기업	-	-

(9) 신청 시 제출서류

- 각 제도의 신청을 위해 신청서 외에 단체의 법적형태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표 23. 각 제도의 신청 시 제출서류 비교 】

제도	신청 시 제출서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1) 전문예술법인단체 신청서 (2)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사본 (3) 직제 및 회계관련 규정 사본 (4)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사본, 세무서발행 사업지등록증·영업인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해당자 한함) (5)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서) (6) 최근 2년간 공연·전시 실적 증빙자료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미술관 자료 목록

제도	신청 시 제출서류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1) 기부금단체추천서 (2) 법인설립허가서 (3) 등기부등본 (4) 정관 (5)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6)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1) 등록신청서 (2) 단체 회칙(정관)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6) 회원명부 1부 (7) 단체소개서 (8) 단체의 조직기구표 (9)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단체는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2)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3)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4)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 준 충족 확인 서류 (5)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6)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7) 정관이나 규약 등 (8)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

(10) 지정혜택

- 각 제도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게는 세제혜택이 이루어짐.

【 표 24. 각 제도의 지정혜택 비교 】

제도	지정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1)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기부금으로 개인/법인의 필용경비인정/손금처리 (2)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 (3) 지정기부금 단체로 상속세·증여세 면제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1) 세제지원 <설립시> -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면세 -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운영시>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수입증인의 면제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등록자료의 상속세·증여세 유예 - 박물관에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2) 행정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1)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기부금으로 개인/법인의 필용경비인정/손금처리 (2) 지정기부금 단체로 상속세·증여세 면제
비영리민간단체	(1) 재정지원 (2) 우편요금 감면
사회적기업	(1) 경영지원 (2) 시설비 지원 (3)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4) 세제지원 - 연계(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5%내에서 전액 손금처리 가능 -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5) 재정지원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6) 사회적기업가 이카데미 지원 (7)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호된 시장 제공

2. 해외 사례

1) 캐나다의 예술서비스 단체 지정 및 등록제도

(1) 명칭

- 국가지정 예술서비스 단체(national arts service organization)

(2) 운영목적 및 혜택사항

- 비영리단체가 다른 등록된 자선단체와 같은 조건으로 공식적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제도
 - 예술단체는 자선단체 혹은 국가지정 예술서비스 단체 중 하나로 등록해야지 둘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음.
 - 국가지정 예술서비스 단체에 지정이 되면 국세청에 자선단체를 자발적으로 탈퇴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지정요건

-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전시나 공연 후원, 워크숍 운영, 예술과 관련된 개발계획 수행, 혹은 학술대회, 공개경쟁, 특별한 예술이벤트의 조직 및 후원 등의 분야에서 전국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예술을 진흥시켜야 함.
- 반드시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인정된 예술가 커뮤니티를 반영하여야 함.
- 등록 시 등록된 자선단체에 적용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정방법

- 지정절차
 - 1단계 : 캐나다문화유산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 장관 승인 취득
 - 2단계 : 국세청(Minister of National Revenue) 등록
- 지정과 등록의 취소
 - 등록과 지정은 요건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 취소를 위해서는 관할청은 그 사유를 공식문서로 해당 예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예술단체는 60일 이내에 이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취소가 확정되.

2) 호주의 문화기관등록제(Register of Cultural Organisations)

(1) 명칭

- 문화기관등록제(Register of Cultural Organisations)
 - 통칭 the Register 혹은 ROCO

(2) 제도도입 배경 및 목적

- 1991년 도입
- 민간 분야의 문화예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문화기관에 기부자 세금 공제 기관(DGR)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
- 관련법: 소득세법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30-F

(3) 지정대상 및 자격요건

- 호주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세금공제자격(Deductible Gift Recipient, DGR) 부여

※ DGR (Deductible Gift Recipient)

- 반드시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으로부터 득해야 하는 법적 지위
- 문화 분야의 경우, 등록된 Cultural Organisations와 공공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가 해당
- 기부금에 대해 기부자 세금 공제
- 반드시 호주를 소재지로 해야 함

● 법적형태

- 유한회사(limited company)
- 법인격 회사/협회 (incorporated association)
- 재단 (trust)
- 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

● 장르

- 문학,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공예, 디자인, 영화, TV, 라디오, 지역예술, 원주민예술, 혹은 이동가능한 문화유산
- 단, 공공갤러리(public art galleries), 박물관(museums), 도서관(library)은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다른 종류의 세금공제자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됨. 문화기관등록제의 세금공제자격(DGR)과 카테고리가 달라 국세청이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신 호주정부의 Cultural Gift Program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음.

● 공공기금(public fund)을 운영

- 공공기금(public fund)을 운영해야 하며 이 기금에 대한 기부 및 후원은 해당 기관의 다른 기금과 별도의 계좌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된 이자 수입도 포함됨.

※ 공공기금

- 대중이 지원하는 기금, 대중이나 대중의 상당수가 지원하는 기금, 대중이 기금의 운용에 관여하는 펀드를 의미
- 정부 기금, 자산(property) 등은 포함되지 않음.
- Taxation Rulings TR95/27, TR2000/12에 따른 공공기금 설치 규정 준용

- 조성된 기금으로 각 기관의 문화적 목적에 따라 지원금(grants), 장학금, 상금으로 쓰일 수 있음. 신작 제작 당선작을 지원할 경우 홍보 정책, 선정 과정을 담은 공식적인

시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해야 함.

- 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하부실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특히 이 위원회에는 ‘책임지는 사람들(responsible persons)’이 최소한 3인 이상이어야 함. 기금 운영자 자격은 호주 국세청이 규정하고 있음 (평화검사, 종교인, 비영리학교나 대학의 투자역이나 이사, 판사, 법무관, 회계사. 호주주식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규모 있는 단체의 장 혹은 선임행정감독, 의료관계자, 학교교장, 교수 등 교육자, 시장, 의원 등 공직자, 정부가 임명하는 공적 지위에 있었거나 있는 자, 훈장을 받은 자 등)
- 지정받는 기관은 반드시 호주에 위치해야 함.

(4) 지정혜택

- 기부자 세금 공제
- 법인소득세 면제(income tax exemption)는 비영리기관에만 해당하며 세금공제자격(DGR)과는 별개의 프로세스를 통해 득해야 하며 호주 국세청 관할임.
- 지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부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음.
 - 2 달러 이상의 현금 기부
 - 호주국세청에 의해 5,000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측정된 재산
 - 최근 12개월 이내에 구입된 물품
 - 펀드레이징 이벤트에서 모금한 150 달러 이상의 기부금

(5) 지정절차

- 호주의 환경물유산예술부(Dept. of the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에 신청하여 서류 심사를 받음.
- 매년 4개월 단위로 허가
- 관할장관의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각 신청기관에 주의사항 등을 담은 관련 문서가 전달됨

- 등재 허가가 나면 신청서류는 호주 국세청으로 보내지고 DGR 허가 심사가 진행됨.
- 신청기관은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DGR 허가서류를 받음. 즉, 등록기관이 됨과 DGR 획득은 동시에 이루어짐

(6) 지정운영 및 관리

- 등록기관은 기부자들에게 지정된 사실을 알리고 세금공제 기부를 받을 수 있음.
- 매년 7월과 1월 등록기관은 관할관청에 해당 기간(1~6월, 7월~12월) 동안 받은 기부 정보(Statistical Return of Donations form)를 제출해야 함.
 -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서류 접수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기부내용이 없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nil return' 작성 제출) 익명 기부는 피해야 하며, 기부자의 뜻에 따른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명이 기재되어 있는 기부영수증을 포함시킴.
- 연락처나 관련 인적사항 변경 시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새로운 지원금(grants), 장학금, 시상 도입 시 선정 과정을 알려줘야 함. 기금이 소실되거나 소실이 예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함
- 매 3년마다 등록기관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서 갱신함.

3) 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도

(1) 명칭

- The Accreditation Scheme
 - 1988년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국가 등록제도(National Registration Scheme for Museums and Galleries) 실시
 - 2004년도에 와서 이 제도는 인증제도(The Accreditation Scheme)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음.
 - 소장품 관리 전반에 따르는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규범화한 <스펙트럼> 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기록 기준(Spectrum: UK Museum Documentation Standard)을 바탕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인증하는 제도

(2) 운영목적

- 모든 박물관과 갤러리가 박물관 경영, 이용자 서비스, 관람객 시설, 소장품 관리 등에 있어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들을 달성하도록 장려
- (1) 사회를 위해 소장품을 보관하고, (2) 공공 자원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기구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용 촉진
- ‘뮤지엄’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기구로 하여금 공유된 윤리적 기반 강화

(3) 인증요건

- 소장품의 보관 및 기록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
- 소장품 관리 방법 및 이와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출판

(4) 인증기준

- 거버넌스와 박물관 및 미술관 경영
- 이용자 서비스
- 관람객 시설
- 소장품 관리

(5) 인증효력

- 소장품의 보관, 접근, 학습, 다양성 등 향상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성 고양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서비스 향상
-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 향상
- 지원기관과 스폰서들에게 유용한 차별성 부여
- 박물관 및 미술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6) 인증혜택

- 인증된 기관은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지방 정부 연합, 문화재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 등 여러 기구로부터 공인 받음.
- 인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위상과 국가복권기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의 혜택 지원

(7) 인증자격의 유지를 위한 조건

- 인증보고서
 -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은 2년마다, 혹은 MLA의 요구에 따라, 평가 기구에 인증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증계획>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박물관 및 미술관은 각각의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에 규칙적으로 성과 보고를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이러한 보고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장래 계획’에 명기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척 내용이 담겨져 있음.
 - 이러한 자체 보고서의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2년마다 이루어지는 인증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함.

4) 일본의 인정(認定)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정NPO법인)

(1) 명칭

- 인정(認定) 특정비영리활동법인

(2) 운영목적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중에서 조직운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하며 공익증진 기여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NPO법인에 대해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법인

(3) 인증현황

-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퍼블릭 서포트 테스트)가 엄격하여 2008년 8월 20일 현재 3만 4천개의 NPO 중 89개 단체가 인정받음.
- 인정 공시
 - 국세청장관은 관보를 통해 인정상황을 공시한다. 인정의 변경이나 취소 역시 공시.
 - 공시내용 : 인정NPO법인의 명칭, 주요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 인정 유효기간

(4) 유효기간

- 인정유효기간은 국세청 장관이 정한 날부터 5년간(2008년 4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곳은 2년)
 - 단, 인정NPO법인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 인정을 취소 가능

(5) 세제상 특례사항

- 개인이 인정NPO법인에게 기부했을 경우, 해당 기부금을 특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기부금 공제 적용

- 법인이 인정NPO법인에게 기부했을 경우, 손금산입한도액 책정(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특별손금산입한도액)
- 상속재산을 NPO법인에 기부했을 경우 면세

※ 간주 기부금 제도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 중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그 수익사업의 기부금액으로 간주하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20%에 상당

(6) 제출서류

-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소정의 신청서
- 실적판정 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 실적판정 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 재산목록
- 실적판정 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 실적판정 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의 수지계산서
- 임원명부
- 사원 중 10인 이상의 성명 및 주소, 혹은 거주지를 기재한 서면
- 정관
- 인증서 사본
-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함을 설명하는 서류
- 기부금을 충당할 예정인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신청을 한 NPO법인이 법령, 법령에 근거한 행정명령 등의 처분, 혹은 정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관할청이 교부한 증명서

(7) 인증요건

항 목	요 건
(1) 퍼블릭 서포트 테스트 (PTS)	ㄱ. 실적판정기간 중 기부금 등 수입금액÷경상수입금액≥1/5 ㄴ. 소규모 법인의 특례 실적판정 기간 중 (수입기부금 총액①+②)÷(총수입금③)≥1/5 ①수령한 기부금 중 한명 당 기준년도 초과액의 합계금액 ②회원납부 회비 중 공익적 활동에 관한 금액으로 정해진 비율을 제외한 금액 ③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자산매각을 통한 임시수입, 사망증여에 의한 기부금 *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위의 사항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음 ㄷ. 상기 ㄱ, 혹은 ㄴ의 PTS 계산에서 그 법인에게 국가의 보조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에 의해 국가의 보조금 등을 PTS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활동대상에 대해	실적판정기간 중 사업활동 중 다음의 항목이 점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ㄱ. 회원 등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회원이 대상인 활동, 특정 범위의 사람에게 편익이 미치는 활동 ㄴ. 특정 저작물 혹은 특정 사람에 관한 활동 ㄷ. 특정 사람의 뜻에 반하는 활동
(3) 운영조직 및 경리에 대해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것 ㄱ. 운영조직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① 임원 중 친족관계를 갖는 자 등으로 구성하는 가장 큰 그룹의 인원÷임원의 총수≤1/3 ② 임원 중 특정 법인의 임원, 혹은 사용인 등으로 구성된 가장 큰 그룹의 인원÷총수≤1/3 ㄴ. 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 등 감사를 받고 있거나 청색신고법인과 동등의 거래를 기록, 장부를 보존할 것 ㄷ. 부적절한 경리를 하지 않을 것
(4) 사업활동에 대해	다음 중 한가지를 충족시킬 것 ㄱ.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① 종교활동 ② 정치활동 ③ 특정 공직자 등 혹은 정당을 추천, 지지, 반대하는 활동 ㄴ. 임원, 사원 혹은 기부자 등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것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기부를 하지 않는 것 ㄷ. 실적판정기간에 특정비영리활동에 든 사업비÷총사업비≥80%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후에 그 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할 것 ㄹ. 해외로의 송금 혹은 금전의 반출(그 금액이 200만엔 이하일 경우 제외)을 할

항 목	요 건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할 것(재해에 대한 원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할 것)
(5) 정보공개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열람시킬 것 ㄱ. 사업보고서 등, 임원명부 및 정관 등 ㄴ. 임원보수 및 종업원 급여에 관한 규정 ㄷ. (4)의 ㄷ 및 ㄹ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의 사본 ㄹ. 자금에 관한 사항, 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기부금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 ㅁ. 기부금을 충당할 예정의 사업 내용을 기재한 서류
(6) 부정행위 등에 대해	법령 위반, 부정 행위, 공익에 반하는 사실 등이 없을 것
(7) 설립 후 경과기관에 대해	설립일 이후 1년 이상을 경과했을 것
(8) 관할청의 증명에 대해	관할청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교부받을 것

(8) 인증단체의 의무사항

- 보고의무 : 사업연도 종료 후의 보고, 지원금 및 해외송금 등의 보고
- 정보공개 : 인정NPO법인이 행하는 정보공개(열람), 국세청이 행하는 정보공개(열람)
- 변경 사항 보고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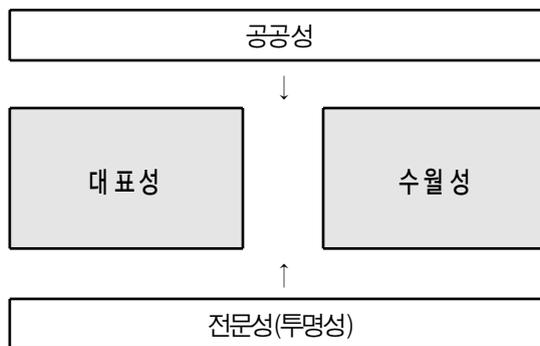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의 기본방향
2.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토대 강화

1.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의 기본방향

1) 제도의 미션 재정립

- 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제도의 미션 자체의 모호함을 가져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미션 수립을 시도함.
- 새로운 미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대표하는 뛰어난 예술집단이 더욱 경쟁력을 갖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체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제도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바라보는 핵심적 가치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전제로 한 대표성과 수월성임.
- 이때 대표성이란 선도성(先導性, the initiative) 을 말하며, 수월성(秀越性, excellence) 이란 수행하는 활동이나 결과물인 작품의 우수성을 말함.
 - 선도성(先導性, the initiative)은 같은 지역, 장르, 부문 등에서 차별적인 성과를 내는 예술단체가 다른 단체의 롤 모델이 되는 리더십을 말함. 예술부문의 지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임.
 - 수월성(秀越性, excellence)은 예술적 질적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예술품을 만드는 단체는 그 결과물을, 예술품을 유통하는 단체는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말함.



- 이를 전제로 다음의 초점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자 함.
 - 제도 초점 1. 제도를 통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전문성을 인증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임
 - 제도 초점 2. 국공립기관의 국가나 지자체 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부금 조성 등을 통한 간접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기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제도 초점 3.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
 - 제도 초점 4.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문화예술법인·단체를 인증하고 더욱 경쟁력을 갖도록 하여 롤(roll) 모델이 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반의 질적 수준을 향상

2) 제도의 운영 시스템 조정

- 제도의 표준화를 통해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정비
 - 프로세스와 일정 등의 표준화
 - 제도의 기본 포맷의 표준화
- 국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조례에 근거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지정기준, 절차, 관리 등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제도 운영 시스템이 취약하였던 바 이를 보완할 필요 있음.
- 제도의 운영 시스템 개선안의 주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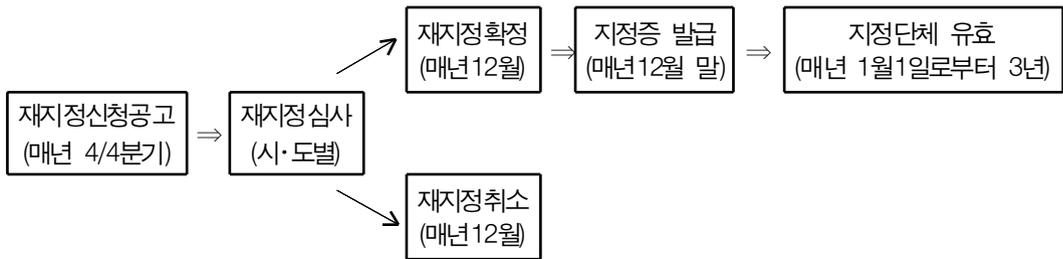
	〈기존〉	⇒	〈개선안〉
지정권자	문화체육관광부/16개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16개 시·도
신청공고시기	시·도별 상이	⇒	매년 4/4분기 (1년 1회)
지정시기	시·도별 상이	⇒	매년 12월 (1년 1회)
지정유효기간	시·도별 상이	⇒	신규지정 3년 / 재지정 3년
지정유효시기	시·도별 상이	⇒	지정후 차기연도 1월1일부터 유효

● 일정별로 보는 제도운영 시스템

- 신규지정



- 재지정 및 취소



- 변경 : 수시로 가능 (단,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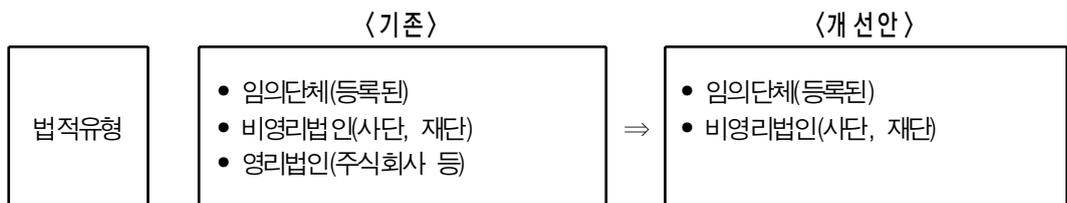


3) 제도의 대상 조정

- 제도의 미션과 제도의 가치를 구체적이고 명확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1) 법적 유형을 통해 본 대상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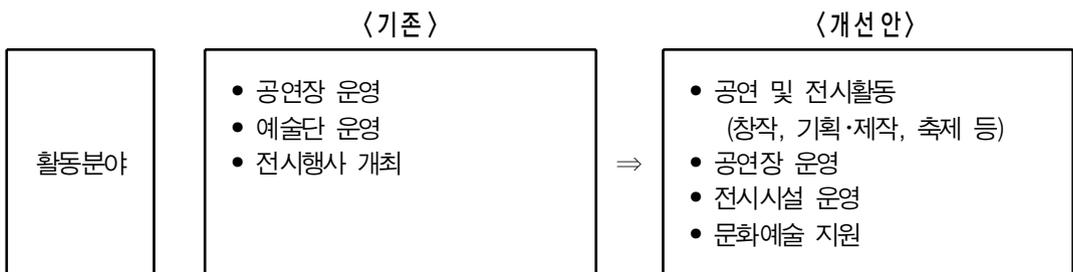
- 법적유형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하며, 영리법인은 제외함.



- 이 제도는 문화예술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전제로 세제지원, 기부여건 마련 등 국가 및 사회의 직·간접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 그 동안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이 혼재되어 있어 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선택이 대부분 부분 적용에 그친 바 있음. 이는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에 대한 지원정책 방식이 다르기 때문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제도의 취지상 주된 대상은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국한하여 영리법인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있으며, 기부자에 대해 세제적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영리법인의 경우 투자여건 조성 등 별도의 문화산업적 접근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노력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2) 활동 분야로 본 대상 조정

- 활동분야(장르)는 공연예술, 시각예술(미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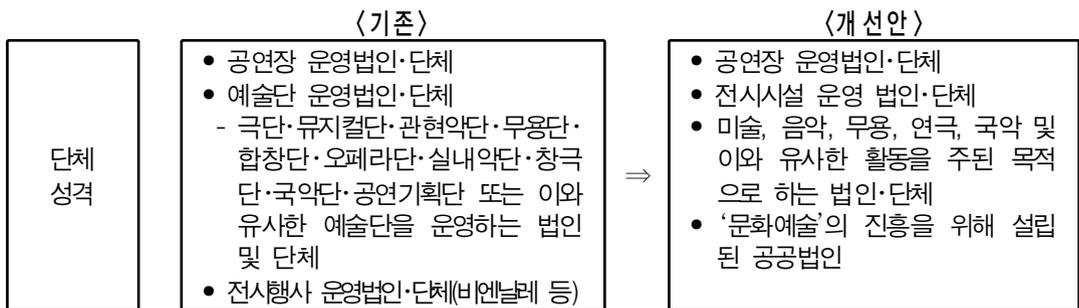


- 활동분야는 기존과 같이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되, 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함.
 - 공연 및 전시 활동 : 공연 또는 시각예술의 창작 뿐 아니라 기획, 축제 등도 포함
 - 공연장 운영 : 현행과 같음.

- 전시시설 운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해당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제외한 전시시설의 운영을 말함.
- 문화예술 지원 : 공연 및 시각예술의 활동과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지원법인을 별도로 분류함.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범위를 공연장,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령의시행을위한조례제정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는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및 단체,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 중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범위로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시도함.
-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중 문학, 영화, 연예, 건축, 출판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들도 포함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운영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제도의 통일성, 효과성이 떨어지며, 또한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지정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3) 단체 성격으로 본 대상 조정

- 예술활동단체 외에 이를 지원하는 공공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예술활동 직접 수행하는 예술단체(기획·제작 단체), 공연장 및 전시시설 운영단체 외에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 출연 문화재단 등도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히 문화예술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 지원기관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 단체의 활발한 재원마련 활동이 현장의 문화예술단체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참고로 서울시 조례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법인’을 이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4) 제도의 틀 조정

- 제도의 영향력 확대와 동기부여를 위해 본 대상 외에 잠재적 대상을 설정하고 우수 지정단체 제도를 실시
- 현 제도는 2~3년의 활동기간, 공간 및 실적을 갖춘 단체에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음.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지정의 전후에 각 한 개의 층위를 추가로 상정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삼음
- 3개 층위는 아래와 같음

▣ 표 25. 층위별 해당기관 ▣

층위	해당기관	역할	지원 사항
1층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홈페이지에 단체 등록 (활동실적 공개)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정보·교육·컨설팅 지원
2층위	전문예술법인·단체	연도별 실적/경영 보고	· 제도 관련 직간접 혜택 제공(기부금품 모집, 세제혜택 등) · 지자체별 행정적 지원 · 정책지원사업의 우선 대상
3층위	지정 단체 중 우수 선정 단체	평가/심사를 거쳐 우수 단체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1년간 우수 단체로서의 지위 · 정부 표창, 상금 등 인센티브 확대

- 1층위 : 제도의 잠재적 고객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미지정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 컨설팅 등에 참여할 자격 부여
 - 제도 전용 홈페이지의 준회원에 준하는 혜택
 -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 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취합하는 정보를 표준화할 경우 여기에 수록되는 법인과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 2층위 :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에 의해 지정된 법인과 단체
- 3층위 : 우수 지정법인 또는 단체
 - 매년 10개 내외의 우수법인 및 단체를 선정
 -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실제 업무는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지원센터)가 위임받아 진행
 - 선정된 법인 및 단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사례로 홍보에 적극 활용

5) 혜택과 의무의 확대와 명확화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의한 현행 혜택사항들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정 기관들이 혜택에 따른 혼선을 줄일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제도, 기관의 네트워크 강화 및 행정적 지원, 재정 지원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건들을 확대해야 함.
- 지정단체에 대한 혜택은 크게 ①제도적 혜택과 ②정책적 혜택으로 나눌 수 있음. 전자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실행하고 후자는 정책을 통해 실행하는 것임.

(1) 혜택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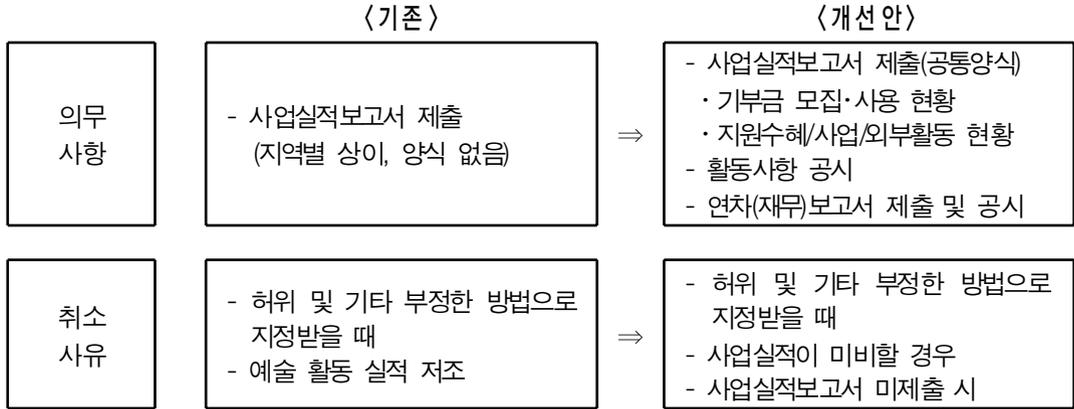
	〈기존〉	⇒	〈개선안〉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공개모집허용(법인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00%/50% 구분)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 단체 - 기부금공개모집허용(단체, 법인 모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전체 100%)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행정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행정지원(일부) · 필요경비 보조 · 상주계약에 의한 공연·전시시설 무상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행정지원(공통) · 필요경비 보조 · 상주계약에 의한 공연·전시시설 무상제공 - 문예진흥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 시 가산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통한 지원 · 온라인 컨설팅 지원 · 지정부 제작 배포 ·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통한 지원 · 컨설팅 지원 확대(고문변호사, 고문화계사 매칭 지원) · 디렉토리북 제작 등 홍보 강화 ·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 지정단체 인력 교육 지원 · 전문인력 배치 지원 · 우수단체 선정(인센티브 부여) · 기부금 모집 활성화 지원 ·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창출 등 정책제도간 연계

(2) 의무사항

- 현재는 지원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의무 사항도 명확하지 않음
- 훈령을 통해 지정취소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는데,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을 때, 2)실태조사 결과 예술 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게 된 때’라는 조항만 있음.

- 단, 일부 지역에서 지역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사항을 확대하며, 이를 재지정 근거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제도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토대 강화

1) 법률적 근거 마련

- 이 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의 3개항, 동법의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및 각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 등임.
 - 이 때문에 법률적 근거의 수준차가 발생함. 즉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세부사항이 없고 각 시도가 제정한 조례는 편차가 있음.
 - 이 때문에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감을 갖기 어려움.
- 이 제도와 연관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역조례 개정 및 지역조례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지자체별 상이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자체별 시행에 큰 편차를 두고 있으므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시행령 및 훈령 강화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 특히, 본 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전문성과 공공성에 근거한 대표성, 수월성은 제도 개선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함.
- 현재 지정 및 보고,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에 공고, 신청, 심의, 지정, 보고 및 지정취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2)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법시행령 법률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가. 개정 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임무를 분명히 함.
- 제도 운영의 통일성·표준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근거 마련
- 전문예술법인 외의 단체도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

나. 개정 취지

- 현행 제도관련 근거법률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육성의 지정·육성에 관하여 제도의 목적과 기부금품 모집허용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타 필요사항을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제7조 제2항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을 전문예술법인 뿐만 아니라, 전문예술단체에게도 동일하게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혜택의 동일성 유지)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제7조 제3항의 경우,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여 현 상황의 큰 틀은 유지하도록 함.

다.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성 확보

현행	개정안	비고
	“ <u>전문예술법인등</u> ”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전문예술법인</u> 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전문예술법인</u> 들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전문예술단체도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
③ <u>전문예술법인</u> 또는 <u>전문예술단체</u> 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u>외에 전문예술법인등의</u>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개정 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임무를 분명히 하는 법개정에 맞추어 제도와 관련된 사항(지정권자, 지정유효기간, 지정절차, 제출서류, 변경사항 등)을 명확히 함.

나. 개정 취지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현 시행령에는 지정범위만 명시되어 있음. 지정범위 외에 지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통하여 기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 대상의 법적 유형을 민법·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기존의 상법에 근거한 영리법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함.
- 지정, 변경 및 취소, 지정유효기간, 의무, 심의, 지원 등 제도의 운영에 필수적인 공통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함.

- 지정유효기간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 제도 운영에 필수한 필수적인 서식을 통일함.

다.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등"이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령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삭제)	신설항목과 중복 삭제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삭제)	신설항목과 중복 삭제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삭제)	신설항목과 중복 삭제
(신설)	1.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중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특별법 상의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중 공연장 및 전시시설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특별법 상의 법인 또는 단체	
(신설)	3.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신설)	제4조의2 (전문예술법인등의 지정·취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연 1회 이상의 지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지정유효기간은 차기년도 시작일부터 3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예술법인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이	

현행	개정안	비고
	<p>나 단체 중 국가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법인, 2 이상의 시·도에서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외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등은 지정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조의3에 의한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설)	<p>제4조의3(운영실적보고) 제4조의 제3항에 의해 전문예술법인등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간 운영실적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신설)	<p>제4조의4(전문예술법인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제3항</p>	

V.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현행	개정안	비고
	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부칙 제4조(지정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유효기간의 정함이 없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유효기간을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체운영현황서(1)		
① 단체명 :		
② 단체소개 * 단체설립목적 및 방향 (300자 이내)		
③ 단체 성격	설립주체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광역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기초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민간
	운영주체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광역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기초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민간
	소속형태	<input type="checkbox"/> 국립전속단체 <input type="checkbox"/> 공립전속단체(광역) <input type="checkbox"/> 공립전속단체(기초)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
④ 단체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연예술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연기획·제작사 <input type="checkbox"/> 공연관련 축제조직 <input type="checkbox"/> 전시기획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연장 운영단체 <input type="checkbox"/> 전시장 운영단체 <input type="checkbox"/> 지원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⑤ 사업자등록유형		<input type="checkbox"/> 법인사업자등록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등록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
⑥ 보유시설	전용연습실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면적 m)
	전용사무실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면적 m)
	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면적 m ² / 석)
	전시장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면적 m)
⑦ 인력현황	단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상근직 : 명 / 비상근직 : 명)
	지원(행정)인력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정규직 : 명 / 비정규직 : 명)
⑧ 자산규모	자산총액	원 (자산총액=자본+부채)
	자본	원
	부채	원
⑨ 예산	전년도 수입액 (○○○○년)	원
	전년도 지출액 (○○○○년)	원
	당해연도 수입액 (○○○○년)	원

단체운영현황서(2)

⑩ 사업실적 (전년도 ~ 당해연도 현재까지)

공연단체	공연제목	공연기간	장소	공연일수	공연횟수	관객수

전시단체	전시제목	전시기간	장소	전시일수	전시횟수	관객수

공연장	공연장명	가동일수	공연건수	공연횟수	관객수

전시장	전시장명	가동일수	전시일수	전시개최수	관객수

기타단체	사업명	장소	기간	일수	횟수

〈별지 제2호 지정증〉

[지정번호 : ○○시(도) 제 호]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증

1. 법인(단체)

- 명 칭 :
- 소재지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적형태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법인으로보는단체 개인사업자
- 단체유형 :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 문화예술지원 등 기타단체 기타
- 주요목적사업 :

2. 지정내용

- 지정권자 :
- 지정확정일자 : 년 월
- 지정유효기간 : 년 월 - 년 월
- 지정형태 :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지정내용 : 신규지정 재지정

위 _____ 법인(단체)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도지사) (인)

〈별지 제3호 : 지정대장부〉

○○○○년도
○○시(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부

- ○○○○년도 신청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도 심사일 : 년 월 일
- ○○○○년도 심사위원 명단 :
- ○○○○년도 지정단체 수 : ○○개 단체
- ○○○○년도 지정단체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도 담당자 : ○○시 ○○부 이름

지정형태	법적유형	단체유형	법인·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비고 (지정연혁)

〈별지 제4호 운영실적보고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보고서-0000년		
▶ 제출처 : ▶ 제출일자 : ▶ 작성담당 : (이름) (부서/직책)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① 단체명		
② 대표자명		
③ 신청 후 단체 변경사항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법적형태 <input type="checkbox"/> 운영형태 <input type="checkbox"/> 장르 ※ 변경내용 기재	
④ 인력	단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상근직 : 명 / 비상근직 : 명)
	지원(행정)인력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정규직 : 명 / 비정규직 : 명)
⑤ 예산	수입총액	원
	지출총액	원
⑥ 기부금	기부금 수취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부금 액수	- 전체 총액 : 원 - 개인기부금 : 원 - 기업기부금 : 원
⑦ 공공지원금	지원 수혜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지원기관명/내역	
⑧ 지정혜택 활용 및 수혜여부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 <input type="checkbox"/> 기부금(품) 공개모집 <input type="checkbox"/>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시·도 행정지원 (구체적내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인증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선정	

⑨ 활동 실적

공연단체	공연제목	공연기간	장소	공연일수	공연횟수	관객수

전시단체	전시제목	전시기간	장소	전시일수	전시횟수	관객수

공연장	공연장명	가동일수	공연건수	공연횟수	관객수

전시장	전시장명	가동일수	전시일수	전시개최수	관객수

기타단체	사업명	장소	기간	일수	횟수

3) 지자체 조례 개정 지침안

(1) 필요성

- 현재 각 시·도의 운영현황의 많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이외에 각 시·도의 조례 개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각 시·도별 운영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과 세부적 지침을 통해 이러한 편차를 줄임으로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조례 개정을 위한 지침으로 삼고자 함.

(2) 각 시·도 조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정절차 세부사항
 - 지정신청 공지 방법
 - 지정신청 시기
 - 신청서 제출처
 - 제출서류 목록
 - 지정심사 결정시기 및 기간
- 심사절차 세부사항
 - 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 심사위원회 자격요건
- 심사기준 세부사항
 - 심사기준 요건
 - 심사방법
- 지정단체의 지원사항
 - 시·도의 별도의 지원사항

(3) 심사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 공통사항

- 단체가 해당분야의 전문성 및 수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 재정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 조직도 및 사업기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법인 및 단체의 영속성에 대하여
- 법인 및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의 구체성에 대하여
-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에 대하여

● 단체유형별 특수사항

▶ 공연예술단체

- 최근 2년 간의 공연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관객확보율·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
-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 경력·해외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

▶ 공연장 운영단체

- 최근 2년 간의 공연된 작품(대관,기획) 등의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관객확보율·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
- 최근 2년 간의 공간의 활용도 및 활용의 적극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 상태·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

▶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
-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

-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
- ▶ 지원기관 등 기타단체
 - 최근 2년간 지원사업의 현황 및 목적사업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협력 여부 및 적극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목적에 적합한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재 지정시 평가 기준
 -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지정 1차 연도에 작성된 사업실적, 활동보고서(향후계획 포함),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 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향후 2년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 평가

4) 세제혜택 개선 및 그에 따른 세법 개정(안)

(1) 지정기부금 단체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가. 목적

- 지정기부금 단체 확대

나. 개정취지

- 당초의 입법 취지는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었으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비영리법인만 지정기부금에 적용이 되므로 모든 전문예술법인과 단체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로 법을 개정하여야 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제약조건

이 있으므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 다목을 삽입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함.

-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것 등으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가 제36조제1항에서 삭제되고 제2항에 신설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에서도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다.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p> <p>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p> <p>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p>	<p>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동일)</p> <p>(동일)</p> <p>(동일)</p> <p>(동일)</p>	

현행	개정안	비고
<p>단체</p> <p>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기를 받은 <u>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u></p> <p>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p> <p>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p> <p>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p> <p>(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p> <p>(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p> <p>(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p> <p>(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p>	<p>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기를 받은 <u>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u></p> <p>(동일)</p> <p>(동일)</p> <p>(동일)</p> <p>(동일)</p> <p>(동일)</p> <p>(동일)</p> <p>(동일)</p>	<p>괄호부분 삭제</p>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현행	개정안	비고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동일)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동일)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동일)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동일)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동일)	
(신설)	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	라목 추가

● 소득세법시행령

현행	개정안	비고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동일)	

현행	개정안	비고
<p>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것</p> <p>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p> <p>(신설)</p>	<p>(동일)</p> <p>7. 「<u>문화예술진흥법</u>」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u>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u></p>	<p>7항 추가</p>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가. 목적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의 확대

나. 개정취지

- 모든 비영리법인은 비영리 고유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한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은 것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문예술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금액만큼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은 실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관련 시행령에서는 지방문화원과 예술의 전당 그리고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된 전문예술법

인은 모두 8개 단체임.

- 현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의 100% 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전문예술단체는 구조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음.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p>■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p>	<p>■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일)</p>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p> <p>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p> <p>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p> <p>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p>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일)</p>	

현행	개정안	비고
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u>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u>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시행령에서 전문예술법인 명기
■ <u>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u>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삭제)	시행령에서 정하였으므로 시행규칙 조문 삭제

(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 목적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확대

나. 개정취지

- 기부금 모집 허용은 전문예술법인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가 큰 편은 아님.
- 그러나 이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체의 경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며, 단체의 재원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함.
- 아울러 전문예술단체의 경우에도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듯이 17.4%가 공개모집 경험이 있었으며 적극적인 재원조성 활동이 필요하므로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전문예술법인 뿐만 아니라 전문예술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관련법률 개정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문화예술진흥법」개정만으로도 충분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2006.3.24>】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일)	현행 법안 유지

● 문화예술진흥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p>	<p>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p>	전문예술단체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추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정할 내용은 없음.

3.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1)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개요

(1) 영역 구분

- DB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통합 관리
- 협력을 통한 영역 확장
- 지정단체를 위한 지원활동 확대
- 지원센터 운영 확대

(2) 개요

① 정보 통합 관리	DB 시스템 구축 및 등록제 마련	
② 협력을 통한 영역 확장	제도간 협력 확대	문광부 관련 제도간 협력 및 노동부·행자부등 타부처간 협력 강화
	기관 네트워크 강화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메세나협의회, 지역재단 등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
③ 지원활동의 확대	상주단체 활성화를 통한 기관·단체의 협력 체계 마련	
	세무, 노무, 회계, 법, 경영 관련 컨설팅을 통한 단체 역량 강화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	
	인증 고유 번호제 및 우수단체 선정 시스템 마련	
	공공기관 및 기업의 우선 구매 여건 마련	
④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역량강화	우수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 직접 지원 사업 마련	
	법적 근거 마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역량 강화
		문화예술단체 DB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능
	평가센터 역할 확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평가
		예술경영 전문인력 양성, 파견
		인증 고유번호 발급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심사, 지원
		온·오프라인 컨설팅
직간접 지원 여건 안정화	포럼, 해외 탐방등 단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기부 여건 활성화 마련	

2) 세부내용

(1) DB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통합 관리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인증을 받은 단체 뿐 만 아니라 예비 단체를 포함한 전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DB 시스템 구축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필요한 상시 자료로 활용
 - 대상 단체도 자기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축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미지정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 컨설팅 등에 참여할 자격 부여
 - 제도 전용 홈페이지의 준회원에 준하는 혜택
- 문화예술단체 DB시스템 구축은 현행 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 가능할 것임. 정보공유를 통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단체들의 DB가 구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있음.
- DB에 포함될 사항

구분		DB 관리 기본항목
단체 정보	단체명	- 단체명/시설명
	대표자	- 대표자명
	목적	- 단체 활동 목적
	단체유형	- 사업 등록 형태 - 창립일자 - 국공립 소속여부 - 설립/운영주체 - 활동 성격 - 주요 활동 장르 - 상주/전속단체 여부
	연락처	- 사무실/대표자/담당자
운영 현황	자산규모	- 자산총액 (자본액/부채액)
	보유시설	- 전용사무실 (면적/소유형태) - 전용연습실 (면적/소유형태) - 공연장/전시장 (규모/객석수/소유형태)
	회원제	- 회원제도 운영 여부

구분		DB 관리 기본항목
	인력현황	- 단원 - 행정인력 - 기타인력
	예산현황	- 수입액(자체수입/공공지원수입/기부금 등) - 지출액(사업비/경상비) ※기부금 사용액
	활동실적	- 작품제작 공연실적 - 공연장 기동현황 - 전시장 기동현황 - 자체기획 공연 실적 - 대관기획 공연 실적

(2) 협력을 통한 영역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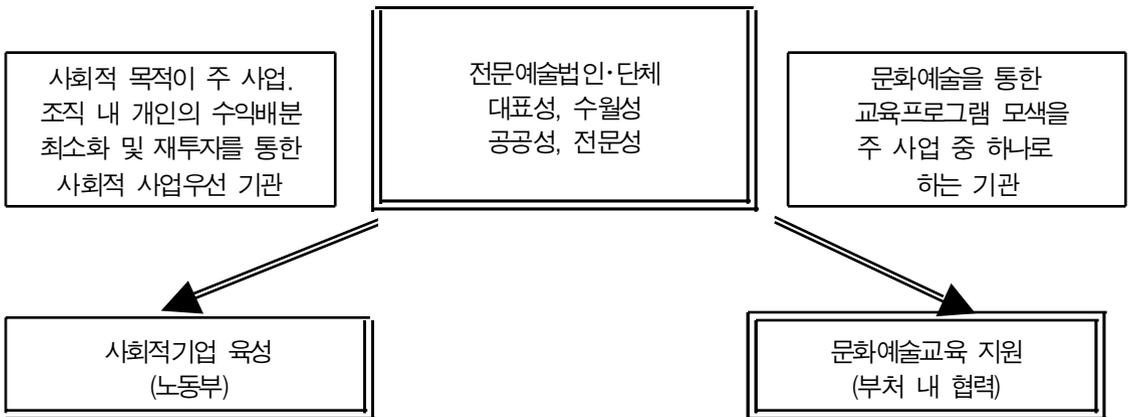
가. 제도간 협력 확대

- 제도와 연관이 있는 제도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제도는 물론 지정된 단체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
- 그 중의 한 예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협력 형태가 있음.
 - 제도 제정 당시 예술정책 환경은 국가경쟁력으로서 문화예술의 중요성,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와 민간지원 활성화, 예술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당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확보는 시장경제에 문화예술시장을 내놓는 다기 보다 공기관의 자생력 확보, 기부문화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봄.
 - 이런 의도는 유지하되 전문예술법인·단체 또한 사회적 공익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있음.
 - 2007년 1월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에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2005년 12월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와 사회적 지원의 의무를 제기하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향하는 바는 경쟁력 있는 작품 생산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을 통한 사회적 기여가 중요시 되는 시기이며, 제도 간 협력할 수 있는 여건 확대를 통한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이 사회적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전문예술법인·단체를 포함시킴으로써, 제도 내 기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사회적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그림 25. 제도간 협력 형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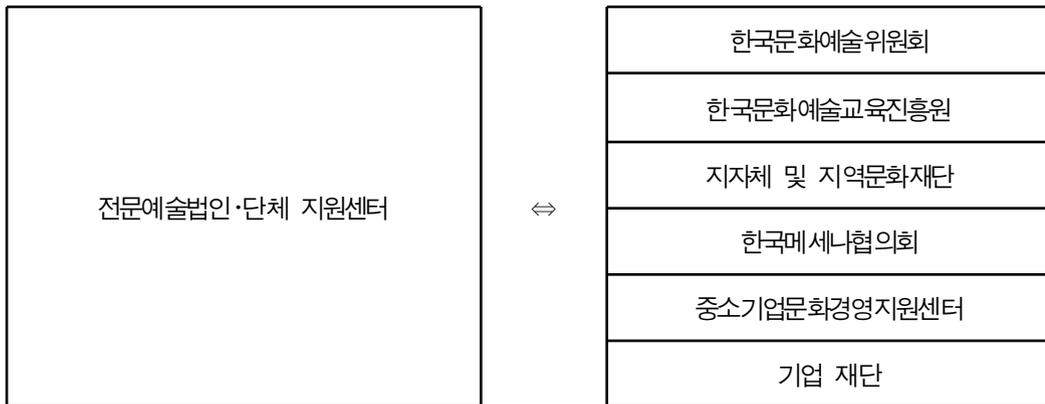


나. 기관 네트워크 강화

- 제도의 운영 중심이 되는 문화부와 지원센터는 지정 단체가 지원을 받는 직접적인 지원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네트워킹의 기초적 수단은 MOU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됨은 기관들의 활동 및 운영의 전문성을 사업실적과 계획을 통해 인증하는 과정임. 이 제도를 안정화 시키고 관련기관들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관련된 지원 사업에서 지정단체에 가산점을 주도록 제도화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함.

- 관련 사업 중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전용공간지원,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레지던스 운영지원 사업 등
 - 지자체 및 지역재단에서 지원하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공연창작활성화지원, 공연 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등 전문단체들의 작품활성화,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등
- 지원기관이나 지자체 외에도 최근 기업들의 문화메세나 지원의 확대는 한국메세나협의회, 중소기업문화경영지원센터, 각 기업 및 기업재단들의 사회·문화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정보제공, 사업 공유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높이고, 단체들로 하여금 사회공헌의 여건 확대를 맺어나가야 함.

| 그림 26. 기관 네트워크 (안) |



(3) 지원 활동의 확대

가. 상주단체 제도 등 추진

- 2007년 기준 전국의 문예회관은 160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가동률은 40.8%에 머물고 있음. 문예회관은 연습실(92개), 전시장(129개), 회의장(58개), 강의실(43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³⁾

- 2001년 본 제도가 제정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주요하게 거론되는 활성화 사업은 ‘상주단체 운영’임. 상주단체란 한 공연장에 전속이 아닌 방식으로 상주해있는 예술단체를 일컬으며, 상주에 관한 계약에 의해 공연장 관계설정 및 수평적 관계, 단체 경영과 예산 운영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는 형태
- 해외의 경우에는 ‘예술인 상주제도’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창작공간을 통한 예술가 레지던트, 학교협력, 예술 공간 상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예술 활동의 전문성 확대 및 소통으로서 상주제는 매우 중요한 운영방식중 하나임.⁴⁾
-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문예회관과 달리 예술가들의 창작 레지던트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창작공간들이 서울, 경기, 인천, 대구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예술 강사제는 강사의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는데 집중되어있다면, 한편에서는 기간제교사로서 문화예술교육강사의 학교현장과견을 통한 지속적 교육프로그램개발이 논의되기도 하고 있음.
- 한편 국내 예술단체들의 경우 공공기관과 관계는 전속단체이거나 입주단체 형태이며, 민간단체들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연습실, 공연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점을 갖고 있음.
- 이에 적극적 상주단체제도의 확산을 통해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이 지역문예회관과 협력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문화예술단체는 적극적 사업개발과 단체 운영 지속성의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임.
- 또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개선은 단체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증을 공식화시키며, 더불어 지역 문예회관, 창작 공간(아트팩토리)을 중심으로 한 상주단체제도가 안정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2008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4) 전병태,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상주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나. 컨설팅

-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의 확대 실시
 - 법률, 세무, 노무, 기부금 손금인정, 경영, 인력운영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
 - 프로그래밍과 유통과 관련된 사항
 - 중장기계획 등 단체의 경영전략과 관련된 사항
- 컨설팅 방식은 질의응답식의 일회적 상담을 넘어 컨설턴트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예를 들어 전문가 풀 구성과 단체별 분야별 담당 컨설턴트 배정 검토
 -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을 점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 도입
 - 집중적인 니즈가 있는 분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구조적 해결을 위해 노력
- 2007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온라인 컨설팅을 시작하였고, 단체들의 질의에 대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전문적 의견들을 제공해 주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은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및 단체운영의 적합성, 목표 타당성, 사회적 여건 분석 등의 단체 경영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이 전문적 기관으로 안정·활성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다. 인력 지원

- 지정된 단체에 특정 부문의 인력 고용을 지원함. 그 대상은 우선적으로 회계, 펀드레이징, 단체운영 등의 분야에서부터 점차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확대함.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인력지원사업은 불안정한 매출과 수익구조로 기획경영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문화예술단체에 도움을 주고 있음. 인력지원뿐 아니라, 기획경영 인력을 통해 단체안정화, 사업 확장을 모색하기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평가임.
- 그러나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일몰제 형태로 이후 계획이 마련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예술 경영의 가치로 대학원에 관련 학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불안정한 예술시장, 단체의 열악한 환경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획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움.
- 한편 기획전문인력은 전문예술단체로 하여금 작품의 홍보, 마케팅, 단체 회계 업무 외에도 전문예술단체들의 운영전략을 모색하고, 사회여건을 분석하며 다양한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단체 안정화에 필요한 인력임.
- 지난 3년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한 CoP(Community of Practice)구축은 전문인력에 대한 이론 교육을 넘어서 참여자들간의 적극적인 관계와 실제 운영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며, 참여자간에 현장 활동가로서 살아있는 현장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과정으로 전문인력 사업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기능까지도 마련해 주었음.⁵⁾
-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작중심의 전문예술단체들이 보다 적극적 마케팅과 기획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며, 더불어 전문예술단체들의 전문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임.

라. 인증 고유번호제 및 우수단체 선정 시스템 마련

-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 목적 및 효과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전문단체로서의 평가’임. 국내 문화예술단체를 규정할 수 있는 조직형태가 별도로 없었기에 전문예술단체라는 인증은 많은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임.
- 그러나 지자체별로 다른 인증기준, 심사방식에서 아직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별 편차와 전문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의 문제제기로 제도가 활성화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5)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사업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 이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인증 고유번호제’와 ‘우수단체 선정 시스템’의 마련을 제안함.
-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자체 인증제도는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갖게 되지만, 별도로 전문예술법인·단체임을 공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공통번호와 지역번호를 통한 인증 고유번호제를 두고,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통지까지의 과정을 통해 단체들이 외부에 전문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방안은 비영리민간단체법에서 벤치마킹한 것임.⁶⁾
- ‘우수단체 선정제도’란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이 기관에 대하여 직접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임. 이 제도는 전문단체 간에는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 우수단체 선정은 현재 지자체 선정위원의 범위를 넘어, 폭넓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단체평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임.

마. 공공기관 및 기업의 우선 구매 여건 마련

- 최근 문화 복지의 필요성속에 문화, 사회, 복지, 교육공간에서의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필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교육·복지예산 마련을 통해 다양한 사회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기업들의 직원 연수, 기업공헌활동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예술을 통한 교육가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 기관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부족은 단체선정과정에서 공급기관들의 프로그램 전문성, 운영의 투명성의 문제로 상품구매에 대한 적절한 기준, 전문성 검증에

6)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자체, 평가센터의 평가를 통해 인증되어진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확대는 단체들이 다양한 사업으로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4)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의 역량 확대

가. 법적 근거 마련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는 2005년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위탁기관이 변경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는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불안정한 구조임.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의 역할은 컨설팅 지원, 사업설명회, 현황조사 및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와 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 이후 전문예술법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네트워크 협력 추진, 기부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 마련 등이 함께 마련되어질 때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안정화 되면서 단체들의 역량, 사회적 입지도 확대될 것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가 지원센터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이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운영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특별법인화될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기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때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를 법에 명기하는 방안

나. 역할 확대

- 문화예술단체 DB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능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현황, 실적, 경영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고, 문화예술단체들의 현황 자료들이 축적될 수 있는 DB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기능이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문화재단 등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평가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에 대한 평가지표 마련, 방향 모색
 - 제도뿐만 아니라 지정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등 사업 전개
- 예술경영전문인력 양성· 파견
 - 예술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추진은 전문인력 공고 및 모집, 교육, 현장 파견 및 운영 관리,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 강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인증 고유번호 발급 및 우수기관 선정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된 기관들에 대한 인증 고유번호 발급 업무 수행
 - 우수 기관의 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심사, 지원 활성화 추진
- 컨설팅의 확대
 -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에 필요한 세무, 노무, 회계, 법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통한 소통의 역할

다. 지정단체에 대한 간접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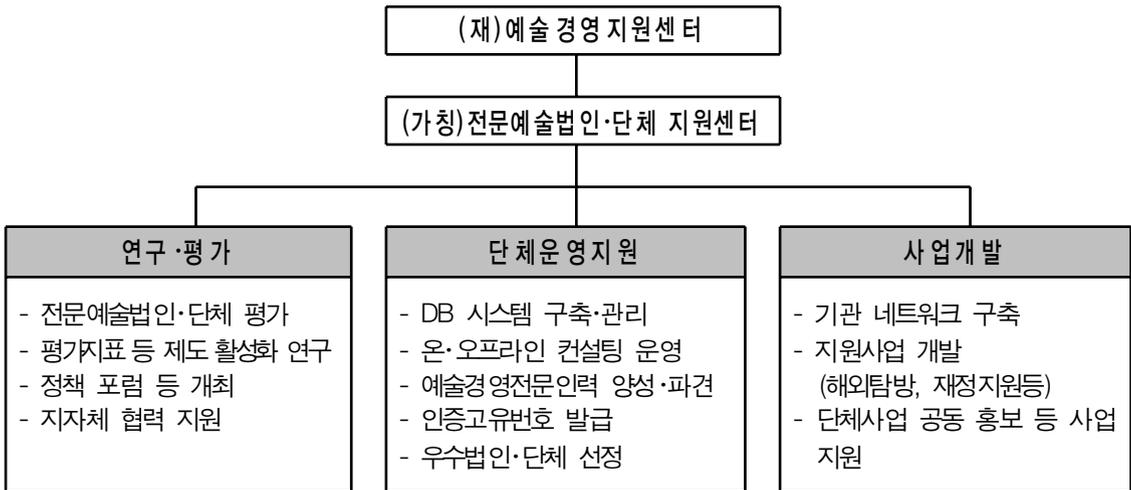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 대상 해외 관련기관 탐방프로그램, 예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문화 포럼 개최 등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와 지역·기업재단간의 네트워크 강화로 전문 단체들의 사회적 여건 확대 마련

- 사회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재단 및 단체의 기부활성화 여건 마련 및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기부·지원이 확대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라.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는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추가되는 역할과 활동을 감당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합당함.

|| 그림 27.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사업영역(안) ||



마.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운영의 다른 선택 가능성

-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는 ‘지원’을 목적과 기능으로 하고 있음.
-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가 제도 운영에 직접 개입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됨.
 -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기는 어려움.
 -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의 역할 증대가 ‘규제 완화’와 ‘분권’의 시대적 흐름

름에 역행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

-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가 소속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법인격이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특별법인을 추진 중이라 유동적인 현실
-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다음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지정 심의의 일부 : 단계 또는 분야를 나눠 표준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가 맡음
 - 인증 업무
 - 지정 법인 및 단체의 의무 확인과 DB화

4. 중장기 로드맵

1) 로드맵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단기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 공유와 법적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다음과 같이 시차를 두고 중장기에 걸친 제도 정비를 제안하며, 2009년 3/4분기 부터 순차적인 시행이 필요

표 26. 제도 정비에 따른 일정 개요

구분	내용	2009년 3/4분기	2009년 4/4분기	2010년 1/4분기	2010년 2/4분기	2010년 3/4분기	2010년 4/4분기	2011년	2012년	2013년
제도 정비(안) 마련	제도의 대상 조정									
	제도의 틀 조정									
	운영기본방향 조정									
	혜택과 의무 명확화									
정비안 의견수렴										
정비안 확정										
제도의 토대 강화	법률적 근거 마련									
	관련 법률 개정									
	후속조치									
운영 활성화	지원센터의 확대									
	시스템구축									
	지원 활동의 확대									
새 제도 실시	새 제도 실시									
	대상 조정에 따른 유예									

2) 실행에 필요한 몇 가지 이슈와 조치들

(1) 과도기 불가피

- 제도가 내용상 차이가 있는 조례에 따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데 과도기가 있을 것임.
- 제도의 리포지셔닝에 필요한 불가피한 위기로 판단됨.
- 중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 플랜에 따라 실행할 필요 있음.
- 특히 중요도가 높은 이슈들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 있음.

(2) 영리법인의 제외로부터 생기는 문제

- 제도의 대상에서 영리법인을 제외하게 되어 이미 지정된 단체의 진로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 2가지 방안을 제시함
 - ① 비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법인은 영리법인에서 벗어나도록 유도
 - ② 순수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영리법인도 마찬가지임.
- 현재 지정된 단체의 절대 다수가 서울에 소재한 법인임. 이것은 지정기간이 없는 지정이라는 의미임. 이 계획에 따르면 법개정후 3년간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 2가지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지정기간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

- 지정기간 및 재지정에 대한 시도의 조례의 차이에 따라 심지어 재지정 조항이 없는 시도까지 다양함.
- 지정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대체로 2년이 다수이지만 지정단체들은 3년 또는 5년을 선

호함.

-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정된 단체들에게는 일정한 기간의 유예기간(최대 3년)이 필요함.
- 유예기간 동안은 구제도에 의해 지정된 단체와 새 제도에 의해 지정된 단체가 병행

(4) 법개정 시기의 변수

- 법개정이 새 제도 실시일정의 주요변수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 법개정에 필요한 이해당사자 및 기관(관련부처 및 입법부)과의 대화가 필요

(5)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

- 새로운 법적 근거에 따라 시도의 조례는 일제히 개정해야 함.
- 시도의 형편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6) 예산 확보의 문제

- 새로운 제도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의 운영과 활동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2010년부터 확보되어야 함.

(7) 지정단체의 적절한 규모

- 현재 지정단체는 전체 대상의 10% 정도로 추정됨.
- 새로운 제도의 취지로 제도를 표준화할 경우 ‘선도성’과 ‘수월성’의 기본 방향에 맞는 규모를 책정할 필요 있음.

(8) 조속한 리포지셔닝 정착

- 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 : 이미 지정받은 단체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시도의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필요
- 제도 미실시 시도의 경우에 새 제도의 실시와 함께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
- 서울, 경기 등 대형 시도가 앞장서 새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등 정책 파트너와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

붙임

- I. 인식조사 결과
- II. 그룹인터뷰
- III. 해외사례 조사 붙임자료

I. 인식조사 결과

1. 조사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미비한 지정혜택 등으로 인하여 지정단체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정된 단체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중장기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다양한 지원혜택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지정단체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오직 통계 분석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비밀은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3월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 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기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 조사기관 : (주)엔아이코리아
- 조사기간 : 2009. 3. 11 ~ 3. 31
- 조사대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단체

I. 단체 일반정보

1. 단체명/대표자명 _____

2. 귀 단체가 소재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시 ② 인천시 ③ 경기도 ④ 강원도
 ⑤ 대전시 ⑥ 충청북도 ⑦ 충청남도
 ⑧ 광주시 ⑨ 전라북도 ⑩ 전라남도
 ⑪ 대구시 ⑫ 부산시 ⑬ 울산시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3.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최초 지정일	년	월	일
재 지정일(1차)	년	월	일
재 지정일(2차)	년	월	일
재 지정일(3차)	년	월	일

4. 귀 단체의 법적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임의단체 ② 비영리 사단법인 ③ 비영리 재단법인 ④ 주식회사(상법인)

5. 귀 단체의 주된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공연활동 단체 (연주 및 공연단체) ② 기획 및 제작사
 ③ 축제 조직 ④ 공연장 운영
 ⑤ 전시활동 단체(비엔날레 등) ⑥ 기타 지원기관

6. 귀 단체의 활동 장르는 무엇입니까?

- ① 연극 ② 음악 ③ 무용 ④ 전통 ⑤ 미술 ⑥ 복합

II. 지정 혜택

7.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 ②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 ③ 지원혜택사항으로 명시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 ④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 ⑤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간지원/ 인력지원)
- ⑥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
- ⑦ 기타 _____

8.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1순위: /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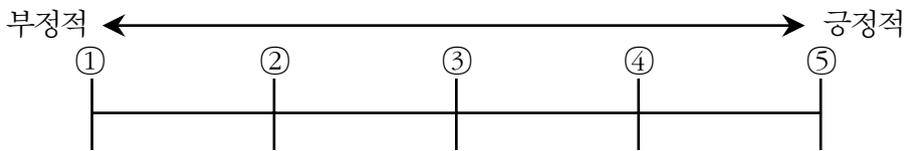
- ①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
- ②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이 생겼다.
- ③ 관련 세제혜택을 받았다.
- ④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았다. (공간지원/ 인력지원)
- ⑤ 기부금 모집에 효과 있었다.
- ⑥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이 유리해졌다.
- ⑦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 ⑧ 기타 _____

9. ‘전문예술법인·단체’ 로 지정된 후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세부사항	있다	없다
세제 혜택	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인정을 받은 적이 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를 받은 적이 있다.		
기부금 혜택	③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		
	④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던 적이 있다.		

		세부사항	있다	없다
지자체 지원	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		
	⑥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공연장, 전시장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⑦	지역 문예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은 적이 있다.		

10 ‘전문예술법인·단체’로의 지정이 귀 단체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III. 지정 방법

1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신청대상 자격기준의 모호함
- ② 매년 일정치 않은 지정신청 기간, 심사기간, 결과발표 일시
- ③ 찾아보기 어려운 지정신청 공지사항
- ④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성
- ⑤ 불명확한 심사 기준
- ⑥ 지정유효기간의 불명확성
- ⑦ 지정 후 관리미흡
- ⑧ 재지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모호
- ⑨ 기타 _____

12.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법적형태 상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형태별 다르게 적용되는 세제혜택 등에 혼란

이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법인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인과 비법인을 구분하여, 비법인(임의단체,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 ② 법인과 비법인을 구분하여, 법인(사단, 재단, 주식회사 등)을 중심으로
- ③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사단, 재단 등)를 중심으로
- ④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여, 영리법인·단체(상법인 등)를 중심으로
- ⑤ 현행대로 모두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13.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정은 각 지자체(광역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 제도대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② 제도 지정에서 관리까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 ③ 제도의 운영은 각 지자체가 하되, 이를 지원 또는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
- ④ 제도의 운영은 각 지자체가 하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⑤ 기타_____

14.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주기는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만약 주기를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까?

- ① 매 분기별 ② 1년에 두 번 ③ 1년마다 한번 ④ 2년마다 한번 ⑤ 3년마다 한번
- ⑥ 기타_____

15.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각 지역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한번 지정되면 그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⑥ 유효기간 없음

16.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분야별 자격요건(신청기준)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분야 (공연장 운영법인 포함)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함.
전시분야	창립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 이상의 창작(기획)전시프로그램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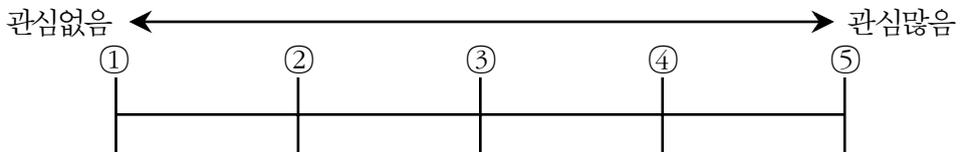
현행 자격요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② 현행보다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 ③ 현행보다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17. 2008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86개의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규모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보다 축소되어야 한다.
- ② 현재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 ③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18.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에 대한 주변(예술단체 등)의 관심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V. 지정제도 정책 일반

19.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 육성(소수의 탁월한 단체를 대상으로 함)
- ② 예술단체의 법인화 유도(일정한 조건을 갖춘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함)
- ③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 지원(비영리 부문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함)
- ④ 기타 _____

20.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속성 등)
- ② 단체의 인적 구성(대표자, 전문인력 보유상태 등)
- ③ 단체의 재정 상태(건전성, 투명성 등)
- ④ 단체에 대한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
- ⑤ 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 ⑥ 기타 _____

21.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운영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명확한 지정기준
- ② 알기 쉽고 간편한 지정신청 방법
- ③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
- ④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 방안
- ⑤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실질적 성과 발생
- ⑥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⑦ 기타 _____

22. 향후 ‘전문예술법인·단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시, 어떤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공연 및 전시 활동(창작) 지원
- ② 긴급 자금의 대출 및 융자 지원
- ③ 단체에 필요한 인력 지원
- ④ 단체에 필요한 공간(연습실 등) 지원
- ⑤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 ⑥ 기부자 소득공제 범위확대 및 기부금 모금 활성화 지원
- ⑦ 홍보 및 마케팅 역량 지원
- ⑧ 조직운영·인사·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가 지원
- ⑨ 상주단체 기회 제공
- ⑩ 기타 _____

23. 현행 제도상 지정기부금 단체에게는 공익성, 투명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 ② 매년 단체의 연차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공개
- ③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 ④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단체의 운영현황 공시(경영공시)
- ⑤ 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받아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
- ⑥ 기타 _____

2.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2001년부터 시행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정된 단체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대상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경험이 있는 단체

3) 조사설계

- 조사기간 : 2009년 3월 11일 ~ 3월 31일
-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FAX조사 병행)
- 유효표본수 : 160개

4) 조사내용

영역	주요 조사 내용
단체 일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명 - 소재지역 - 법적형태 - 주요 활동분야 및 장르
지정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목적 - 지정 후 효과 및 혜택 - 지정 영향
지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 - 제도적으로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법인형태 - 지정 관리 방법 - 지정 주기

영역	주요 조사 내용
	- 지정 유효기간 - 자격요건 - 지정규모 - 지정제도에 관한 주변의 관심
지정제도 정책 일반	- 지정제도의 정책적 목표 - 지정 심사 시 우선 고려 사항 - 개선점 - 지원정책 수립 시 중점 사항 -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5) 응답단체 현황

- 본 조사의 응답단체는 총 160개임.
- 지역별로는 서울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영남권 22.5%, 중부권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법적형태별로는 임의단체가 53.8%로 가장 높았고, 사단법인이 33.1%로 나타남.
- 활동분야는 공연활동단체가 73.8%로 가장 높았고, 전시활동단체가 9.4%로 나타남.
- 활동장르별로는 음악이 28.8%, 연극 23.8%, 전통 20.6% 등의 순이었음.

▮ 표 27. 인식조사 응답단체 법적유형별 현황 ▮

	법적유형	조사대상 수	응답 대상 수	조사대상 비율	응답대상 비율
1	임의단체	191	86	58.4%	53.8%
2	사단법인	77	53	23.5%	33.1%
3	재단법인	34	15	10.4%	9.4%
4	주식회사	25	6	7.6%	3.8%
	합계	327	160	100.0%	100.0%

▣ 표 28. 인식조사 응답단체 활동분야별 현황 ▣

	활동분야	조사대상 수	응답대상 수	조사대상 비율	응답대상 비율
1	공연단체	234	118	71.6%	73.8%
2	기획사	25	7	7.6%	4.4%
3	축제	11	7	3.4%	4.4%
4	공연장	15	8	4.6%	5.0%
5	전시	22	15	6.7%	9.4%
6	기타	20	5	6.1%	3.1%
	합계	327	16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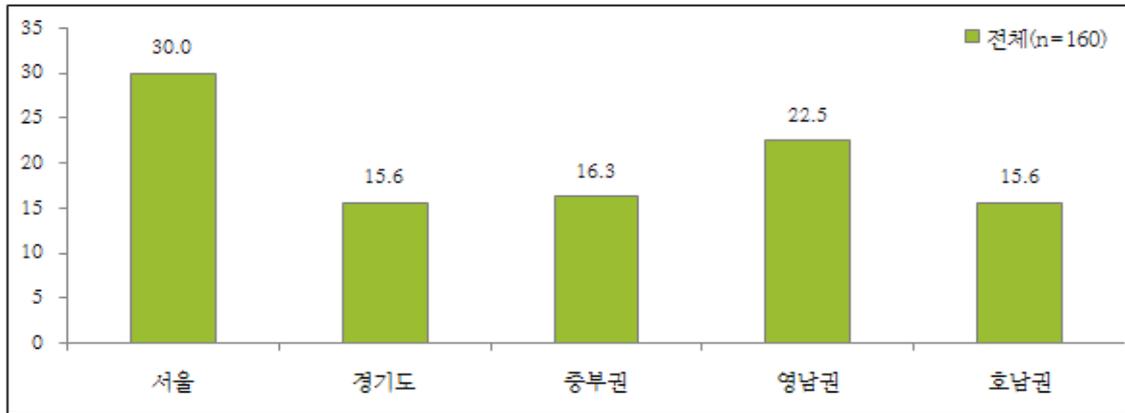
▣ 표 29. 인식조사 응답단체 장르별 현황 ▣

	장르	조사대상 수	응답대상 수	조사대상 비율	응답대상 비율
1	연극	78	38	23.9%	23.8%
2	음악	84	46	25.7%	28.8%
3	무용	25	9	7.6%	5.6%
4	전통	61	33	18.7%	20.6%
5	미술	20	13	6.1%	8.1%
6	복합	59	21	18.0%	13.1%
	합계	327	160	100.0%	100.0%

3. 조사결과

1) 단체 일반정보

(1) 소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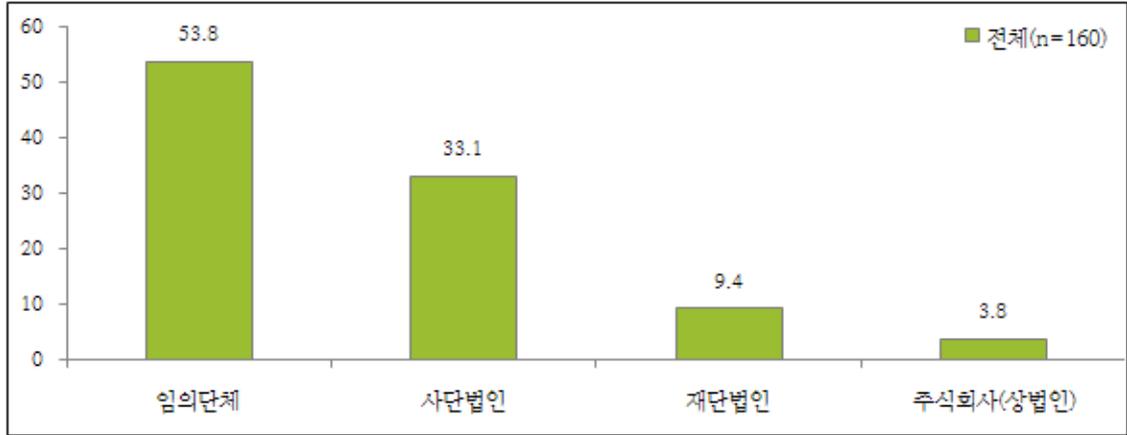


● 응답업체의 소재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30.0%로 가장 높았고, 영남권이 22.5%, 중부권이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 수	서울	경기도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합계
■ 전체 ■	(160)	30,0	15,6	16,3	22,5	15,6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22,1	17,4	22,1	26,7	11,6	100,0
사단법인	(53)	32,1	9,4	9,4	22,6	26,4	100,0
재단법인	(15)	40,0	33,3	13,3	6,7	6,7	100,0
주식회사	(6)	100,0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30,5	14,4	15,3	21,2	18,6	100,0
기획/제작사	(7)	42,9		28,6	14,3	14,3	100,0
축제조직	(7)	14,3	14,3	42,9	28,6		100,0
공연장운영	(8)	37,5	50,0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33,3	13,3	13,3	33,3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20,0	40,0	2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28,9	15,8	34,2	7,9	13,2	100,0
음악	(46)	37,0	13,0	4,3	23,9	21,7	100,0
무용	(9)	66,7	22,2	11,1			100,0
전통	(33)	6,1	15,2	18,2	39,4	21,2	100,0
미술	(13)	30,8	7,7	15,4	38,5	7,7	100,0
복합	(21)	38,1	23,8	9,5	19,0	9,5	100,0

(2) 법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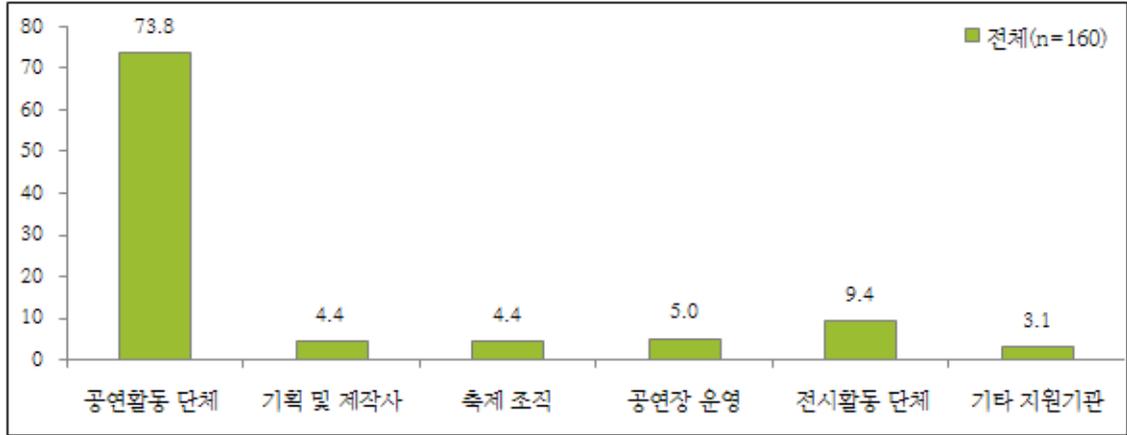


● 응답 단체의 법적형태를 살펴보면, 임의단체가 53.8%로 가장 높았고, 사단법인 33.1%, 재단법인 9.4%, 주식회사(상법인) 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상법인)	합계
■ 전체 ■	(160)	53.8	33.1	9.4	3.8	100.0
■ 지역 ■						
서울	(48)	39.6	35.4	12.5	12.5	100.0
수도권	(25)	60.0	20.0	20.0		100.0
중부권	(26)	73.1	19.2	7.7		100.0
영남권	(36)	63.9	33.3	2.8		100.0
호남권	(25)	40.0	56.0	4.0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61.9	33.1	2.5	2.5	100.0
기획/제작사	(7)	42.9	14.3		42.9	100.0
추제조직	(7)	14.3	57.1	28.6		100.0
공연장운영	(8)	12.5		8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46.7	46.7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40.0	4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78.9	18.4	2.6		100.0
음악	(46)	45.7	41.3	2.2	10.9	100.0
무용	(9)	55.6	33.3	11.1		100.0
전통	(33)	54.5	45.5			100.0
미술	(13)	53.8	38.5	7.7		100.0
복합	(21)	23.8	19.0	52.4	4.8	100.0

(3) 주요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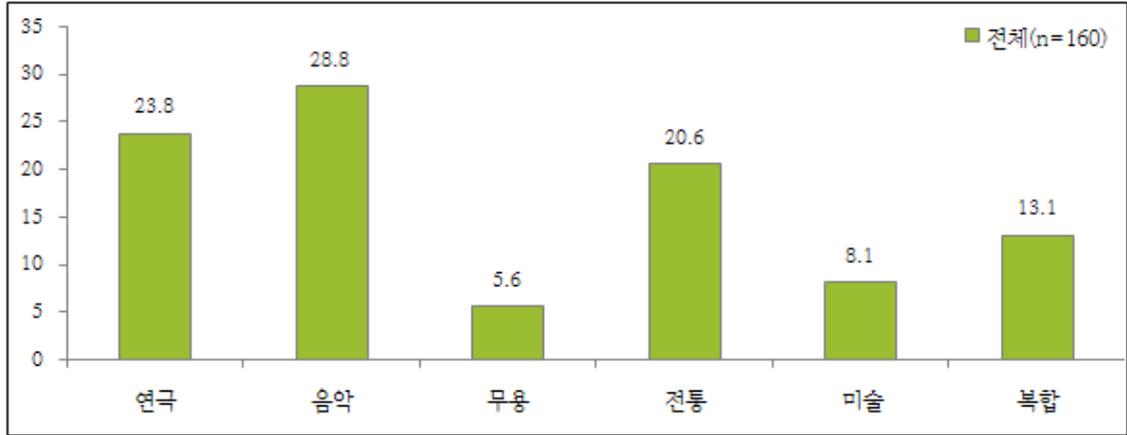


● 응답 단체의 주된 활동분야를 질문한 결과, 공연활동 단체가 73.8%로 가장 높았고, 전시활동 단체 9.4%, 공연장 운영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공연활동 단체 (연주 및 공연단체)	기획 및 제작사	축제 조직	공연장 운영	전시활동 단체(비엔 날레 등)	기타 지원기관	합계
■ 전체 ■	(160)	73.8	4.4	4.4	5.0	9.4	3.1	100.0
■ 지역 ■								
서울	(48)	75.0	6.3	2.1	6.3	10.4		100.0
수도권	(25)	68.0		4.0	16.0	8.0	4.0	100.0
중부권	(26)	69.2	7.7	11.5		7.7	3.8	100.0
영남권	(36)	69.4	2.8	5.6	2.8	13.9	5.6	100.0
호남권	(25)	88.0	4.0			4.0	4.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84.9	3.5	1.2	1.2	8.1	1.2	100.0
사단법인	(53)	73.6	1.9	7.5		13.2	3.8	100.0
재단법인	(15)	20.0		13.3	46.7	6.7	13.3	100.0
주식회사	(6)	50.0	5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81.6	5.3	7.9	2.6	2.6		100.0
음악	(46)	95.7	4.3					100.0
무용	(9)	100.0						100.0
전통	(33)	90.9				3.0	6.1	100.0
미술	(13)					100.0		100.0
복합	(21)	19.0	14.3	19.0	33.3		14.3	100.0

(4) 주요 활동장르



● 활동 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이 28.8%로 가장 높았고, 연극 23.8%, 전통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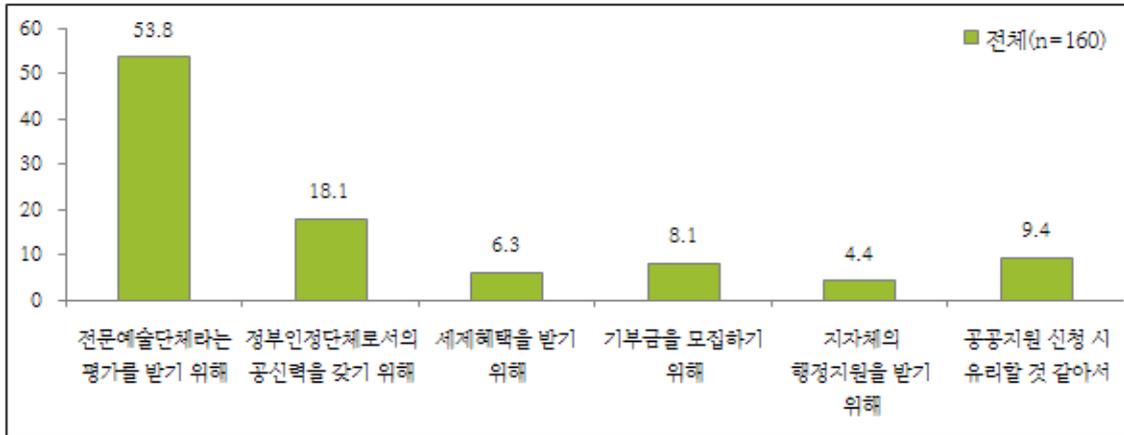
단위 : (개), %

	사례수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미술	복합	합계
■ 전체 ■	(160)	23.8	28.8	5.6	20.6	8.1	13.1	100.0
■ 지역 ■								
서울	(48)	22.9	35.4	12.5	4.2	8.3	16.7	100.0
수도권	(25)	24.0	24.0	8.0	20.0	4.0	20.0	100.0
중부권	(26)	50.0	7.7	3.8	23.1	7.7	7.7	100.0
영남권	(36)	8.3	30.6		36.1	13.9	11.1	100.0
호남권	(25)	20.0	40.0		28.0	4.0	8.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34.9	24.4	5.8	20.9	8.1	5.8	100.0
사단법인	(53)	13.2	35.8	5.7	28.3	9.4	7.5	100.0
재단법인	(15)	6.7	6.7	6.7		6.7	73.3	100.0
주식회사	(6)		83.3				16.7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26.3	37.3	7.6	25.4		3.4	100.0
기획/제작사	(7)	28.6	28.6				42.9	100.0
축제조직	(7)	42.9					57.1	100.0
공연장운영	(8)	12.5					8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7			6.7	8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40.0		60.0	100.0

3) 지정 혜택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목적

가. 1순위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 2순위까지 응답을 받은 결과, 1순위로는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기 위해’가 절반 이상인 53.8%로 나타났고,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18.1%)’,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전문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높게 나타났음.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 항목이 서울(4.2%), 수도권(0%), 중부권(0%)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항목이 각각 2.8%, 0%로 낮게 나타났음. 직접적인 지원혜택보다는 지정을 받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지 향상 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법적형태에 따른 지정목적은 임의단체, 사단법인, 주식회사에서 ‘전문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높게 나왔으나 재단법인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로 높게 나타난 항목을 분석해보면 공연활동단체는 전문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중요시하고(61%), 기획제작사는 전문성(42.9%)과 세제혜택(28.6%),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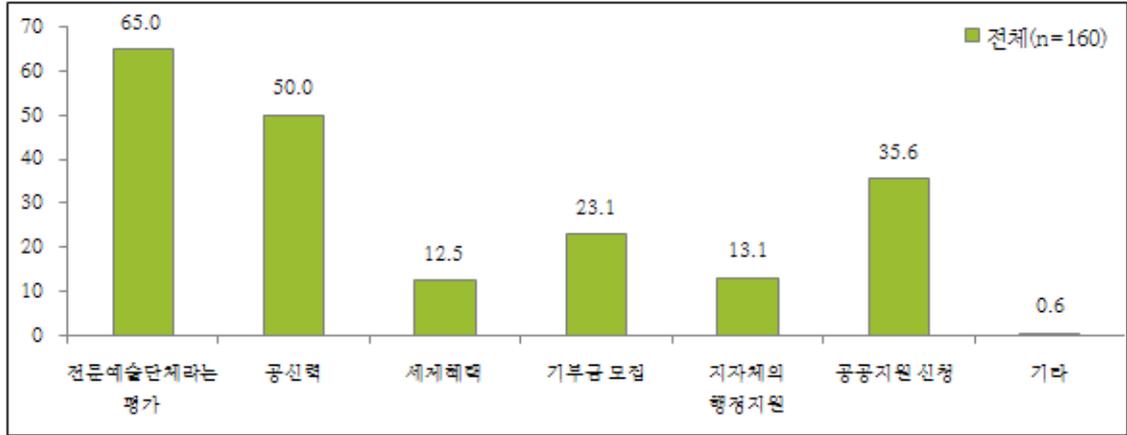
제조직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의 결과인 정부인정단체로서의 공신력(42.9%), 공연장은 기부금(50%)과 전문예술단체라(25%)는 평가를 중요시함

● 기타의견으로는 ‘세계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정착하기 위하여’ 라는 지정 목적이 있음.

단위 : (개), %

	사례 수	전문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정부인정단 체로서의 공신력을 갖기 위해	세 제혜택 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지 자 체의 행정지원 을 받기 위해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	합계
■ 전체 ■	(160)	53.8	18.1	6.3	8.1	4.4	9.4	100.0
■ 지역 ■								
서울	(48)	56.3	12.5	8.3	8.3	4.2	10.4	100.0
수도권	(25)	52.0	16.0	12.0	16.0		4.0	100.0
중부권	(26)	50.0	26.9	7.7	3.8		11.5	100.0
영남권	(36)	44.4	27.8	2.8	8.3	5.6	11.1	100.0
호남권	(25)	68.0	8.0		4.0	12.0	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60.5	18.6	5.8	1.2	5.8	8.1	100.0
사단법인	(53)	52.8	15.1	7.5	7.5	3.8	13.2	100.0
재단법인	(15)	20.0	26.7	6.7	46.7			100.0
주식회사	(6)	50.0	16.7		16.7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61.0	15.3	5.1	3.4	5.1	10.2	100.0
기획/제작사	(7)	42.9	14.3	28.6			14.3	100.0
축제조직	(7)	28.6	42.9		28.6			100.0
공연장운영	(8)	25.0	12.5	12.5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46.7	20.0	6.7	13.3	6.7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2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65.8	15.8	2.6	2.6	5.3	7.9	100.0
음악	(46)	60.9	10.9	6.5	6.5	6.5	8.7	100.0
무용	(9)	44.4	11.1	22.2			22.2	100.0
전통	(33)	48.5	30.3	6.1		3.0	12.1	100.0
미술	(13)	53.8	15.4		15.4	7.7	7.7	100.0
복합	(21)	28.6	23.8	9.5	33.3		4.8	100.0

나. 1+2순위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 모두를 살펴보면,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가 65.0%로 가장 높았고,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50.0%)’, ‘문화예술진흥 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3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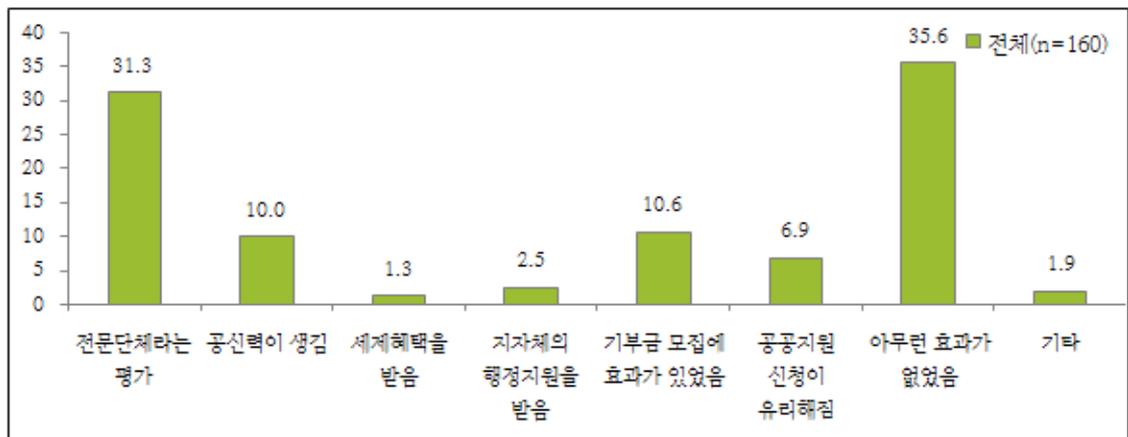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전문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정부인정 단 체로서의 공신력을 갖기 위해	세 제혜택 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지원 을 받기 위해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	기타	합계
■ 전체 ■	(160)	65.0	50.0	12.5	23.1	13.1	35.6	0.6	100.0
■ 지역 ■									
서울	(48)	68.8	54.2	14.6	22.9	10.4	29.2		100.0
수도권	(25)	60.0	48.0	24.0	36.0	4.0	28.0		100.0
중부권	(26)	65.4	53.8	7.7	11.5	11.5	46.2	3.8	100.0
영남권	(36)	55.6	44.4	11.1	25.0	16.7	47.2		100.0
호남권	(25)	76.0	48.0	4.0	20.0	24.0	2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69.8	54.7	8.1	16.3	12.8	38.4		100.0
사단법인	(53)	62.3	45.3	15.1	22.6	17.0	35.8	1.9	100.0
재단법인	(15)	46.7	46.7	20.0	66.7	6.7	13.3		100.0
주식회사	(6)	66.7	33.3	33.3	16.7		5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72.0	53.4	7.6	16.1	12.7	38.1		100.0
기획/제작사	(7)	57.1	28.6	42.9	14.3		57.1		100.0

단위 : (개), %

	사례 수	전문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정부인정 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갖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	기타	합계
축제 조직	(7)	42.9	71.4	14.3	42.9		14.3	14.3	100.0
공연장운영	(8)	37.5	50.0	37.5	62.5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0.0	20.0	20.0	33.3	33.3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20.0	80.0	2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71.1	60.5	5.3	13.2	10.5	36.8	2.6	100.0
음악	(46)	69.6	43.5	10.9	19.6	17.4	39.1		100.0
무용	(9)	77.8	44.4	22.2			55.6		100.0
전통	(33)	63.6	63.6	12.1	18.2	9.1	33.3		100.0
미술	(13)	69.2	15.4	15.4	23.1	38.5	38.5		100.0
복합	(21)	38.1	47.6	23.8	66.7	4.8	19.0		100.0

(2) 지정 효과

가.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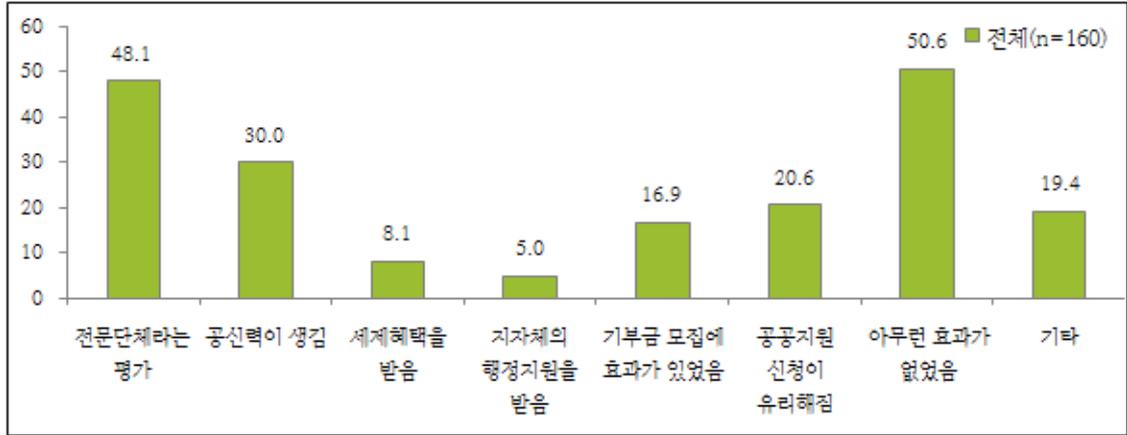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순서대로 2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만을 살펴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고,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31.3%로 나타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사 모집단의 과반수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아 전체 조사대상에서 지정 후 세제혜택을 받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활동분야에 따른 지원효과를 살펴보면 공연활동단체의 경우 전문단체(37.3%)라는 평가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획/제작사의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다(85.7%)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직접적인 효과가 매우 낮고, 대부분 대외적인 인지도나 공식력 등의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정효과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지정 후 효과가 없거나 미미,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이해 부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부족,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라는 대외적인 명분에 그침 의견이 나옴.

단위 : (개), %

	사례수	전문 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이 생겼다.	관련 세제혜택 을 받았다.	지자체의 행정지원 을 받았다.	기부금 모집에 효과 있었다.	공공지원 신청이 유리해졌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기타	합계
■ 전체 ■	(160)	31.3	10.0	1.3	2.5	10.6	6.9	35.6	1.9	100.0
■ 지역 ■										
서울	(48)	33.3	16.7	2.1	2.1	4.2	6.3	35.4		100.0
수도권	(25)	28.0	4.0	4.0	4.0	20.0	4.0	32.0	4.0	100.0
중부권	(26)	38.5	3.8			7.7	3.8	46.2		100.0
영남권	(36)	33.3	11.1		2.8	16.7	5.6	27.8	2.8	100.0
호남권	(25)	20.0	8.0		4.0	8.0	16.0	40.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31.4	4.7		3.5	8.1	8.1	40.7	3.5	100.0
사단법인	(53)	34.0	15.1	1.9	1.9	11.3	7.5	28.3		100.0
재단법인	(15)	20.0	20.0	6.7		26.7		26.7		100.0
주식회사	(6)	33.3	16.7					5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37.3	5.9		2.5	9.3	8.5	33.9	2.5	100.0
기획/제작사	(7)		14.3					85.7		100.0
축제 조직	(7)	28.6		14.3		28.6		28.6		100.0
공연장 운영	(8)	12.5	25.0	12.5		25.0		25.0		100.0
전시 활동단체	(15)	13.3	33.3			13.3	6.7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20.0		2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31.6	5.3		2.6	5.3	7.9	47.4		100.0
음악	(46)	30.4	6.5			15.2	6.5	41.3		100.0
무용	(9)	22.2	11.1				22.2	33.3	11.1	100.0
전통	(33)	45.5	9.1		9.1	9.1	6.1	15.2	6.1	100.0
미술	(13)	15.4	30.8			7.7	7.7	38.5		100.0
복합	(21)	23.8	14.3	9.5		19.0		33.3		100.0

나. 1+2순위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1순위와 2순위 응답 모두를 살펴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았고, ‘전문적인 (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있다’는 응답이 48.1%로 나타남.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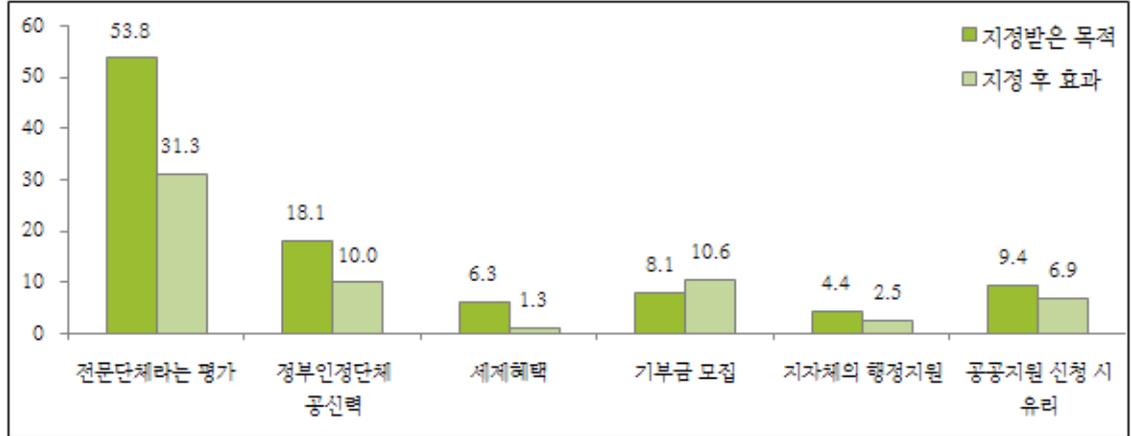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전문예술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 공신력이 생겼다.	관련 세제혜택을 받았다.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았다.	기부금 모집에 효과가 있었다.	공공지원 신청이 유리해졌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기타	합계
■ 전체 ■	(160)	48.1	30.0	8.1	5.0	16.9	20.6	50.6	19.4	100.0
■ 지역 ■										
서울	(48)	50.0	37.5	16.7	4.2	8.3	14.6	47.9	18.8	100.0
수도권	(25)	40.0	28.0	12.0	4.0	28.0	12.0	48.0	24.0	100.0
중부권	(26)	53.8	26.9			11.5	26.9	57.7	23.1	100.0
영남권	(36)	47.2	27.8	5.6	2.8	19.4	33.3	44.4	19.4	100.0
호남권	(25)	48.0	24.0		16.0	24.0	16.0	60.0	12.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52.3	25.6	1.2	3.5	12.8	24.4	58.1	22.1	100.0
사단법인	(53)	45.3	37.7	13.2	7.5	18.9	20.8	39.6	17.0	100.0
재단법인	(15)	40.0	33.3	33.3	6.7	40.0		33.3	6.7	100.0
주식회사	(6)	33.3	16.7				16.7	83.3	33.3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54.2	28.0	4.2	5.1	14.4	23.7	50.8	19.5	100.0
기획/제작사	(7)	28.6	28.6					100.0	28.6	100.0
축제조직	(7)	42.9	28.6	28.6		28.6	14.3	42.9	14.3	100.0

단위 : (개), %

	사례 수	전문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 공신력이 생겼다.	관련 세제혜 택을 받았다.	지자체 의정지 원을 받았다.	기부금 모집에 효과 있었다.	공지원 공신력 유리해 졌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기타	합계
공연장운영	(8)	37.5	50.0	37.5	12.5	37.5		25.0		100.0
전시활동단체	(15)	26.7	40.0	20.0		20.0	20.0	40.0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20.0		20.0	40.0	20.0	6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55.3	28.9		2.6	10.5	23.7	57.9	21.1	100.0
음악	(46)	45.7	26.1	4.3	4.3	17.4	15.2	60.9	23.9	100.0
무용	(9)	44.4	44.4	11.1			22.2	44.4	33.3	100.0
전통	(33)	57.6	30.3	3.0	12.1	18.2	36.4	33.3	9.1	100.0
미술	(13)	30.8	38.5	15.4		15.4	15.4	46.2	38.5	100.0
복합	(21)	38.1	28.6	33.3	4.8	33.3	4.8	47.6	4.8	100.0

(3) 지정 목적과 지정 효과 비교⁷⁾

가. 1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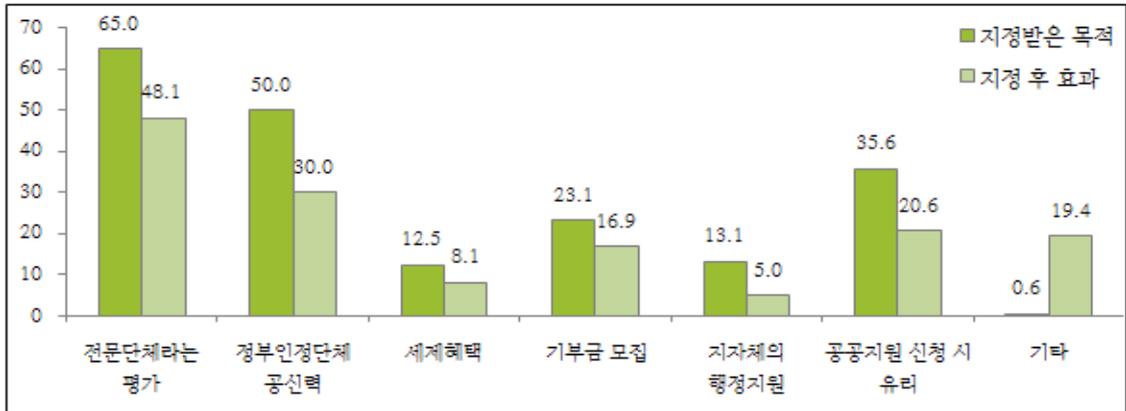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목적과 지정받은 후의 효과를 각각 1순위끼리 비교한 결과, 대체로 지정받은 목적에 비해 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나, ‘기부금 모집’ 항목은 목적에 비해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재단법인의 경우 지정효과 중 모든 항목에서 고른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타 법적

7) 지정 후 효과 질문 문항에서 ‘아무 효과 없었음’ 항목은 제외하고 비교함.

유형에 비해 ‘기부금모집효과’가 26.7%로 높게 나타남. 이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목적 중 가장 높은 항목이었던 ‘기부금 모집’ 목적(46.7%)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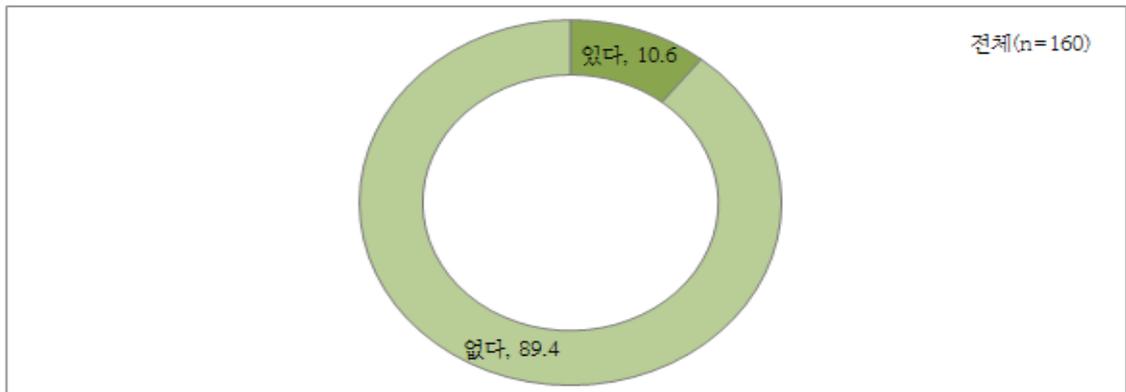
나. 1+2순위 비교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목적과 지정받은 후의 효과를 1순위와 2순위 모두 비교한 결과, 대체로 지정받은 목적에 비해 효과가 낮게 나타남.
- 지정받은 후의 ‘기타’ 항목에서는 대체로 ‘효과 없음’과 ‘효과를 모르겠음’ 등의 의견이 나타남.

(4) 지정 혜택

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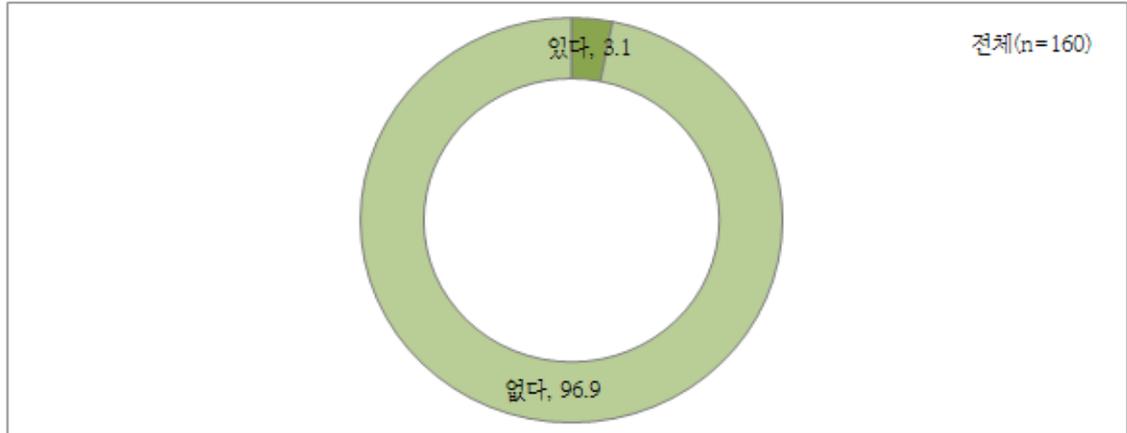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인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전체의 10.6%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 례 수	있다	없다	합 계
■ 전체 ■	(160)	10.6	89.4	100.0
■ 지역 ■				
서울	(48)	18.8	81.3	100.0
수도권	(25)	4.0	96.0	100.0
중부권	(26)	3.8	96.2	100.0
영남권	(36)	11.1	88.9	100.0
호남권	(25)	8.0	92.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2.3	97.7	100.0
사단법인	(53)	13.2	86.8	100.0
재단법인	(15)	53.3	46.7	100.0
주식회사	(6)		100.0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7.6	92.4	100.0
기획/제작사	(7)		100.0	100.0
축제조직	(7)	14.3	85.7	100.0
공연장운영	(8)	50.0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20.0	80.0	100.0
기타 지원기관	(5)		10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2.6	97.4	100.0
음악	(46)	10.9	89.1	100.0
무용	(9)	11.1	88.9	100.0
전통	(33)	3.0	97.0	100.0
미술	(13)	23.1	76.9	100.0
복합	(21)	28.6	71.4	100.0

나.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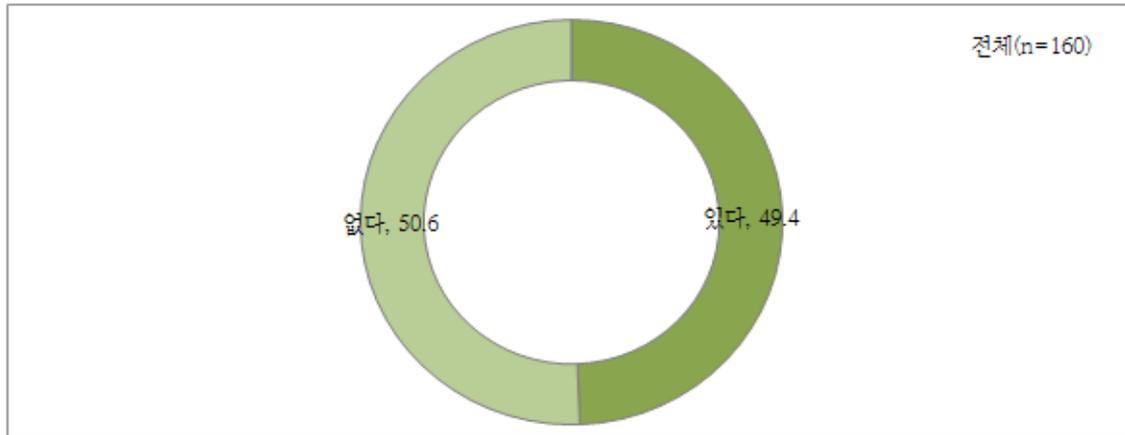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전체의 3.1%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 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3.1	96.9	100.0
■ 지역 ■				
서울	(48)	4.2	95.8	100.0
수도권	(25)		100.0	100.0
중부권	(26)	3.8	96.2	100.0
영남권	(36)	2.8	97.2	100.0
호남권	(25)	4.0	96.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100.0	100.0
사단법인	(53)	9.4	90.6	100.0
재단법인	(15)		100.0	100.0
주식회사	(6)		100.0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0.8	99.2	100.0
기획/제작사	(7)		100.0	100.0
축제조직	(7)	14.3	85.7	100.0
공연장은운영	(8)		10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20.0	80.0	100.0
기타·지원기관	(5)		10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5.3	94.7	100.0
음악	(46)	2.2	97.8	100.0
무용	(9)		100.0	100.0
전통	(33)		100.0	100.0
미술	(13)	15.4	84.6	100.0
복합	(21)		100.0	100.0

다. 기부자 세제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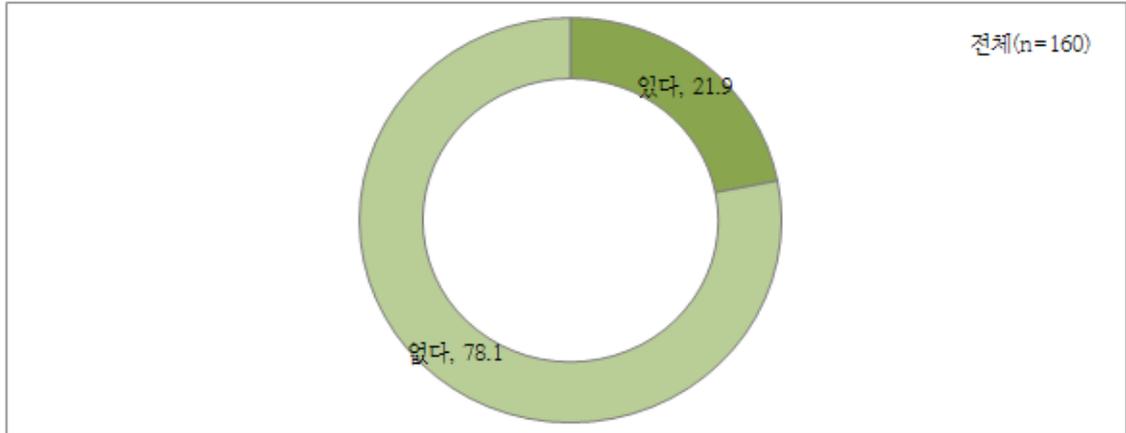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전체의 절반 정도인 49.4%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49.4	50.6	100.0
■ 지역 ■				
서울	(48)	52.1	47.9	100.0
수도권	(25)	52.0	48.0	100.0
충부권	(26)	30.8	69.2	100.0
영남권	(36)	50.0	50.0	100.0
호남권	(25)	60.0	40.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31.4	68.6	100.0
사단법인	(53)	77.4	22.6	100.0
재단법인	(15)	60.0	40.0	100.0
주식회사	(6)	33.3	6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49.2	50.8	100.0
기획/제작사	(7)		100.0	100.0
축제조직	(7)	57.1	42.9	100.0
공연장운영	(8)	62.5	3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6.7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40.0	6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34.2	65.8	100.0
음악	(46)	56.5	43.5	100.0
무용	(9)	55.6	44.4	100.0
전통	(33)	48.5	51.5	100.0
미술	(13)	61.5	38.5	100.0
복합	(21)	52.4	47.6	100.0

라. 기부금 공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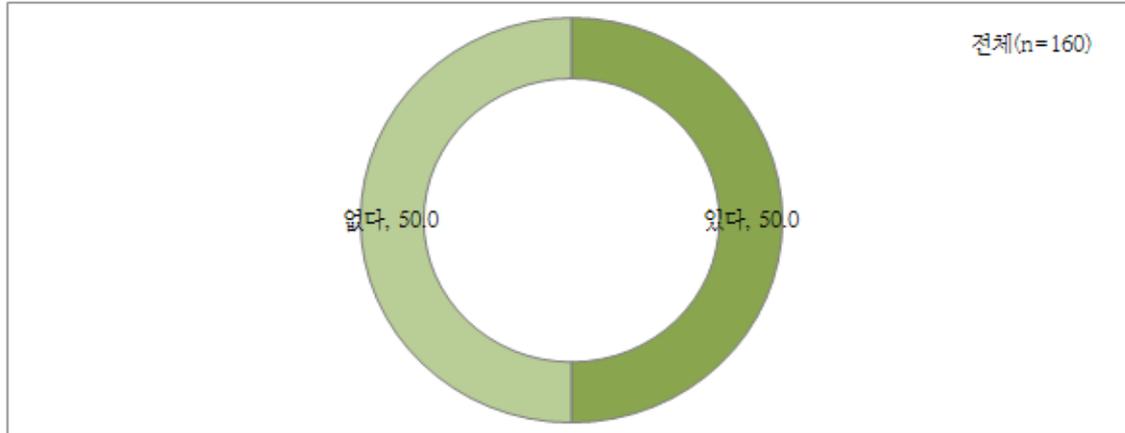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21.9%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21.9	78.1	100.0
■ 지역 ■				
서울	(48)	16.7	83.3	100.0
수도권	(25)	24.0	76.0	100.0
충북권	(26)	23.1	76.9	100.0
영남권	(36)	27.8	72.2	100.0
호남권	(25)	20.0	80.0	100.0
■ 법적 형태 ■				
임의단체	(86)	17.4	82.6	100.0
사단법인	(53)	28.3	71.7	100.0
재단법인	(15)	33.3	66.7	100.0
주식회사	(6)		100.0	100.0
■ 활동 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19.5	80.5	100.0
기획/제작사	(7)	14.3	85.7	100.0
축제 조직	(7)	28.6	71.4	100.0
공연장 운영	(8)	37.5	6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40.0	60.0	100.0
기타 지원기관	(5)		100.0	100.0
■ 활동 장르 ■				
연극	(38)	18.4	81.6	100.0
영화	(46)	21.7	78.3	100.0
무용	(9)	33.3	66.7	100.0
전통예술	(33)	18.2	81.8	100.0
미술	(13)	38.5	61.5	100.0
복합	(21)	19.0	81.0	100.0

마. 지자체 보조금 수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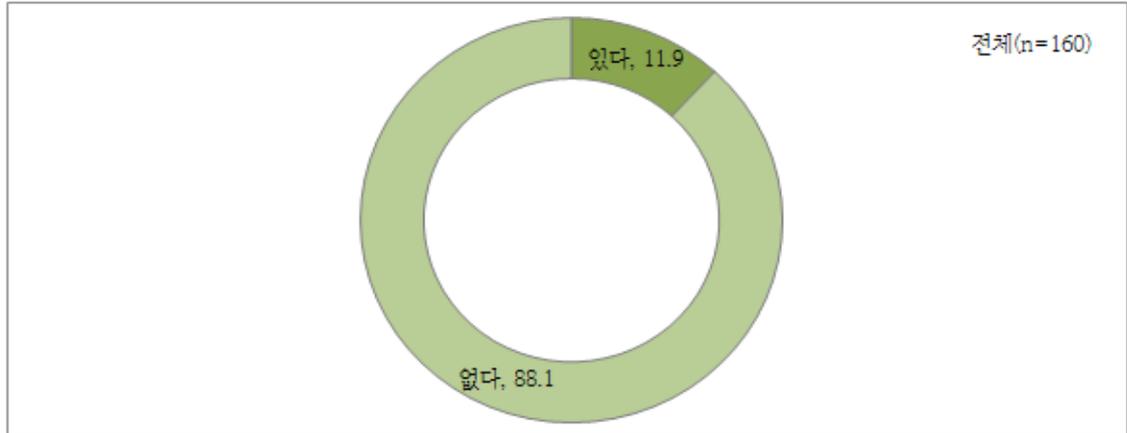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전체의 절반인 50.0%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 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50.0	50.0	100.0
■ 지역 ■				
서울	(48)	35.4	64.6	100.0
수도권	(25)	36.0	64.0	100.0
충부권	(26)	50.0	50.0	100.0
영남권	(36)	66.7	33.3	100.0
호남권	(25)	68.0	32.0	100.0
■ 법적 형태 ■				
임의단체	(86)	46.5	53.5	100.0
사단법인	(53)	62.3	37.7	100.0
재단법인	(15)	26.7	73.3	100.0
주식회사	(6)	50.0	50.0	100.0
■ 활동 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48.3	51.7	100.0
기획/제작사	(7)	57.1	42.9	100.0
축제 조직	(7)	71.4	28.6	100.0
공연장 운영	(8)	25.0	75.0	100.0
전시활동단체	(15)	53.3	4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80.0	20.0	100.0
■ 활동 장르 ■				
연극	(38)	47.4	52.6	100.0
음악	(46)	52.2	47.8	100.0
민요/용무	(9)	44.4	55.6	100.0
전통	(33)	57.6	42.4	100.0
미술	(13)	53.8	46.2	100.0
복합	(21)	38.1	61.9	100.0

바.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 무상 제공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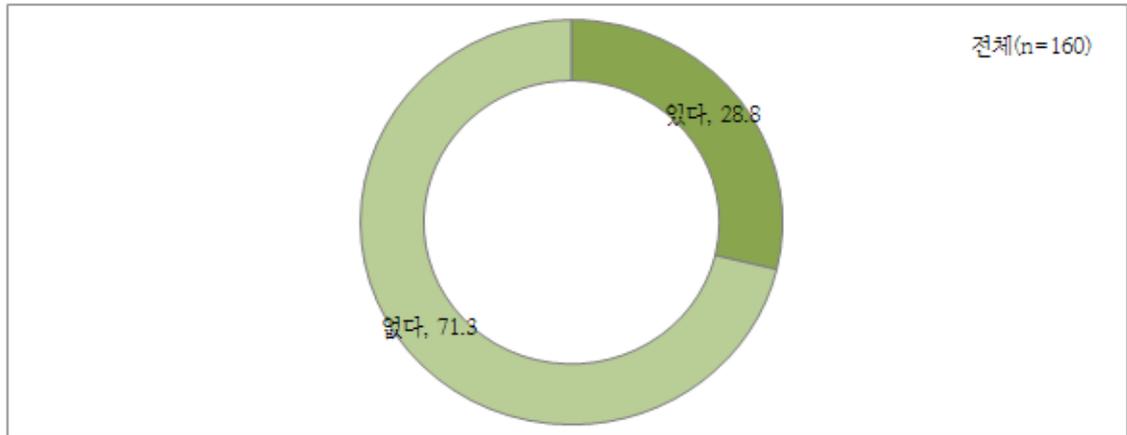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공연장, 전시장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11.9%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11.9	88.1	100.0
■ 지역 ■				
서울	(48)	6.3	93.8	100.0
수도권	(25)	4.0	96.0	100.0
충부권	(26)	15.4	84.6	100.0
영남권	(36)	19.4	80.6	100.0
호남권	(25)	16.0	84.0	100.0
■ 법적 형태 ■				
임의단체	(86)	7.0	93.0	100.0
사단법인	(53)	20.8	79.2	100.0
재단법인	(15)	13.3	86.7	100.0
주식회사	(6)		100.0	100.0
■ 활동 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7.6	92.4	100.0
기획/제작사	(7)	14.3	85.7	100.0
축제조직	(7)	14.3	85.7	100.0
공연장운영	(8)	12.5	8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40.0	60.0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80.0	100.0
■ 활동 장르 ■				
연극	(38)	13.2	86.8	100.0
음악	(46)	2.2	97.8	100.0
미디어	(9)		100.0	100.0
전통예술	(33)	18.2	81.8	100.0
미술	(13)	38.5	61.5	100.0
복합	(21)	9.5	90.5	100.0

사. 지역 문예 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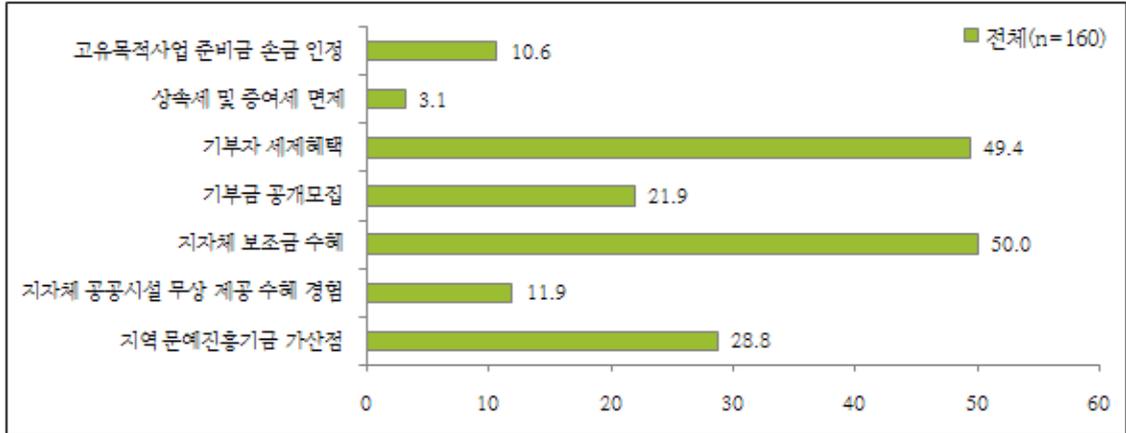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지역 문예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28.8%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 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28.8	71.3	100.0
■ 지역 ■				
서울	(48)	25.0	75.0	100.0
수도권	(25)	32.0	68.0	100.0
충부권	(26)	34.6	65.4	100.0
영남권	(36)	25.0	75.0	100.0
호남권	(25)	32.0	68.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32.6	67.4	100.0
사단법인	(53)	30.2	69.8	100.0
재단법인	(15)	6.7	93.3	100.0
주식회사	(6)	16.7	83.3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34.7	65.3	100.0
기획/제작사	(7)	14.3	85.7	100.0
축제조직	(7)	14.3	85.7	100.0
공연장운영	(8)		10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8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8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28.9	71.1	100.0
음악	(46)	28.3	71.7	100.0
무용	(9)	55.6	44.4	100.0
전통	(33)	39.4	60.6	100.0
미술	(13)	15.4	84.6	100.0
복합	(21)	9.5	90.5	100.0

아. 전체비교



- 위에서 제시된 7가지 혜택을 비교해보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49.4%)’, ‘지역 문예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은 적이 있다(2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인정’의 경우 재단법인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연장 분야에서 50%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반면 임의단체가 2.3%로 어느 정도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분야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됨.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는 개인 재산을 출현하여 단체설립이나 작품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전시활동단체 미술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기부자 세제혜택’은 전국적으로 과반수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형태에서 각각 77.4%, 60%를 나타냈음. 활동분야에서는 공연장과 전시활동 단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미술 분야에서 기부자 세제혜택이 높고,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비율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기부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부자 세제혜택의 비율과 공개모집 비율을 비교한 그래프 막대)
- ‘지자체 보조금 수혜 경험’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는 영남권, 호남권 등의 지방에서 수혜비율이 높게 나타남. 각 지자체와 연계성이 높은 축제분야의 경우 71.4%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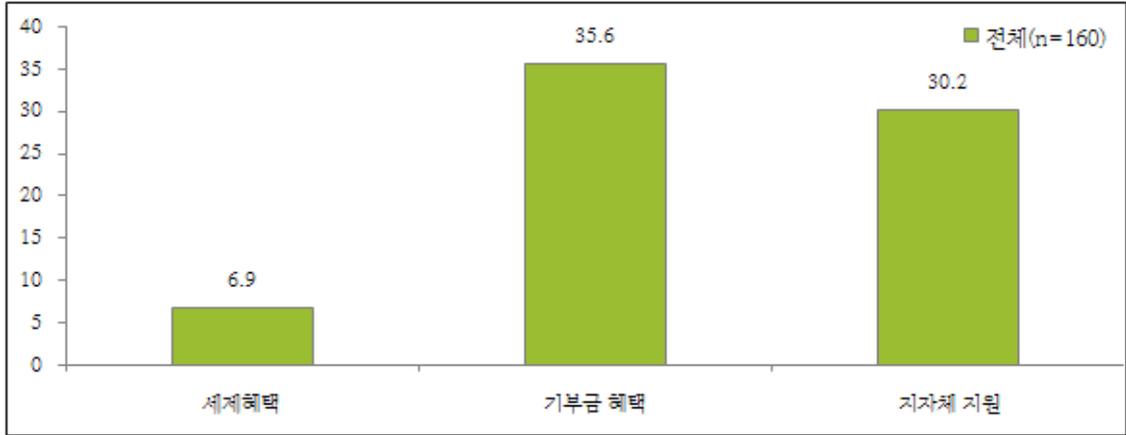
높은 지자체 보조금 수혜비율을 나타냄.

- ‘지역 문예 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은 장르는 무용분야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무용분야에서 문예진흥기금 가산점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 (개), %

	사례 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기부자 세제 혜택	기부금 공개모집	지자체 보조금 혜택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 무상 제공 혜택	지역 문예 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
■ 전체 ■	(160)	10.6	3.1	49.4	21.9	50.0	11.9	28.8
■ 지역 ■								
서울	(48)	18.8	4.2	52.1	16.7	35.4	6.3	25.0
수도권	(25)	4.0	0.0	52.0	24.0	36.0	4.0	32.0
중부권	(26)	3.8	3.8	30.8	23.1	50.0	15.4	34.6
영남권	(36)	11.1	2.8	50.0	27.8	66.7	19.4	25.0
호남권	(25)	8.0	4.0	60.0	20.0	68.0	16.0	32.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2.3	0.0	31.4	17.4	46.5	7.0	32.6
사단법인	(53)	13.2	9.4	77.4	28.3	62.3	20.8	30.2
재단법인	(15)	53.3	0.0	60.0	33.3	26.7	13.3	6.7
주식회사	(6)	0.0	0.0	33.3	0.0	50.0	0.0	16.7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7.6	0.8	49.2	19.5	48.3	7.6	34.7
기획/제작사	(7)	0.0	0.0	0.0	14.3	57.1	14.3	14.3
축제조직	(7)	14.3	14.3	57.1	28.6	71.4	14.3	14.3
공연장운영	(8)	50.0	0.0	62.5	37.5	25.0	12.5	0.0
전시활동단체	(15)	20.0	20.0	66.7	40.0	53.3	40.0	13.3
기타 지원기관	(5)	0.0	0.0	40.0	0.0	80.0	20.0	20.0
■ 활동장르 ■								
연극	(38)	2.6	5.3	34.2	18.4	47.4	13.2	28.9
음악	(46)	10.9	2.2	56.5	21.7	52.2	2.2	28.3
무용	(9)	11.1	0.0	55.6	33.3	44.4	0.0	55.6
전통	(33)	3.0	0.0	48.5	18.2	57.6	18.2	39.4
미술	(13)	23.1	15.4	61.5	38.5	53.8	38.5	15.4
복합	(21)	28.6	0.0	52.4	19.0	38.1	9.5	9.5

자. 차원별 비교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해당되는 혜택에 대해서 세제혜택(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기부금 혜택(기부자 세제혜택, 기부금 공개모집), 지자체 지원(지자체 보조금 수혜, 지자체 공공시설 무상 수혜, 지역 문예진흥 기금 신청 시 가산점 혜택)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기부금 혜택’이 3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지원(30.2%)’, ‘세제혜택(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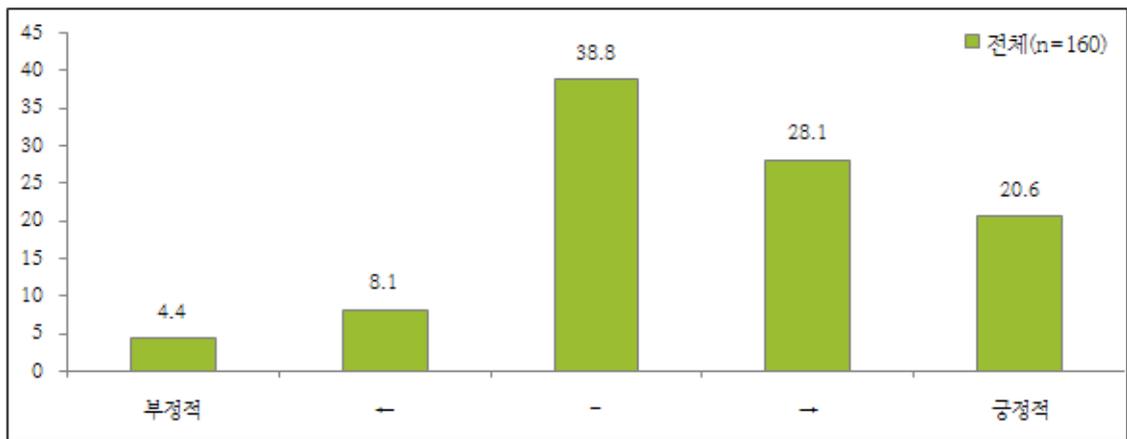
단위 : (개), %

	사례수	세제혜택	기부금 혜택	지자체 지원
■ 전체 ■	(160)	6.9	35.6	30.2
■ 지역 ■				
서울	(48)	11.5	34.4	22.2
수도권	(25)	2.0	38.0	24.0
중부권	(26)	3.8	26.9	33.3
영남권	(36)	6.9	38.9	37.0
호남권	(25)	6.0	40.0	38.7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1.2	24.4	28.7
사단법인	(53)	11.3	52.8	37.7
재단법인	(15)	26.7	46.7	15.6
주식회사	(6)	0.0	16.7	22.2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4.2	34.3	30.2
기획/제작사	(7)	0.0	7.1	28.6
축제조직	(7)	14.3	42.9	33.3

단위 : (개), %

	사례수	세제혜택	기부금 혜택	지자체 지원
공연장운영	(8)	25.0	50.0	12.5
전시활동단체	(15)	20.0	53.3	35.6
기타 지원기관	(5)	0.0	20.0	40.0
■활동장르■				
연극	(38)	3.9	26.3	29.8
음악	(46)	6.5	39.1	27.5
무용	(9)	5.6	44.4	33.3
전통	(33)	1.5	33.3	38.4
미술	(13)	19.2	50.0	35.9
복합	(21)	14.3	35.7	19.0

(5) 지정 후 영향



- 전문예술법인·단체로의 지정이 미친 영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적(④+⑤)’ 응답이 48.7%로 나타났고, ‘부정적(①+②)’ 응답은 12.5%로 나타남.
- ‘부정적’을 1점, ‘긍정적’을 5점으로 두고 응답의 평균을 구한 결과 3.5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한 단체는 기획/제작사로 보통이하라는 의견이 100%로 긍정적인 의견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 다른 장르에 비해 문예진흥기금 신청시 가산점 활용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무용과 기부금 등의 세제혜택을 받은 미술분야, 지자체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축제분야의 경

우 지정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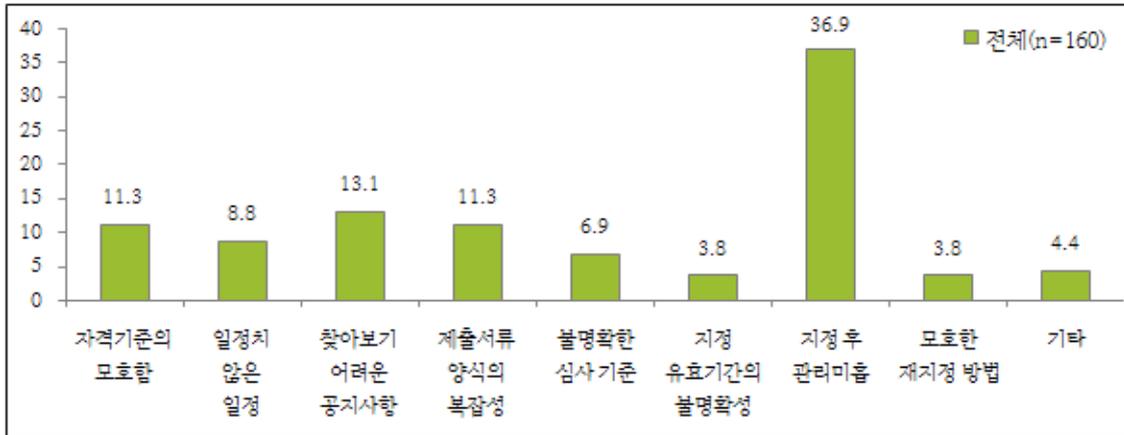
단위 : (개), %, 점

	사례수	부정적 ①	← ②	- ③	→ ④	긍정적 ⑤	합계	평균
■ 전체 ■	(160)	4.4	8.1	38.8	28.1	20.6	100.0	3.5
■ 지역 ■								
서울	(48)	6.3	4.2	29.2	35.4	25.0	100.0	3.7
수도권	(25)		16.0	36.0	32.0	16.0	100.0	3.5
중부권	(26)		7.7	53.8	19.2	19.2	100.0	3.5
영남권	(36)	5.6	11.1	33.3	25.0	25.0	100.0	3.5
호남권	(25)	8.0	4.0	52.0	24.0	12.0	100.0	3.3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4.7	11.6	47.7	22.1	14.0	100.0	3.3
사단법인	(53)	3.8	3.8	26.4	37.7	28.3	100.0	3.8
재단법인	(15)			33.3	33.3	33.3	100.0	4.0
주식회사	(6)	16.7	16.7	33.3	16.7	16.7	100.0	3.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5.1	7.6	39.8	26.3	21.2	100.0	3.5
기획/제작사	(7)	14.3	28.6	57.1			100.0	2.4
축제조직	(7)		14.3	42.9	28.6	14.3	100.0	3.4
공연장운영	(8)		12.5	25.0	37.5	25.0	100.0	3.8
전시활동단체	(15)			26.7	53.3	20.0	100.0	3.9
기타 지원기관	(5)			40.0	20.0	40.0	100.0	4.0
■ 활동장르 ■								
연극	(38)	2.6	10.5	44.7	23.7	18.4	100.0	3.4
음악	(46)	13.0	8.7	41.3	23.9	13.0	100.0	3.2
무용	(9)			33.3	22.2	44.4	100.0	4.1
전통	(33)		9.1	27.3	30.3	33.3	100.0	3.9
미술	(13)			30.8	53.8	15.4	100.0	3.8
복합	(21)		9.5	47.6	28.6	14.3	100.0	3.5

4) 지정 방법

(1) 지정 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

가. 1순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지정 후 관리미흡’이 36.9%로 가장 높았고, ‘찾아보기 어려운 공지사항’이 13.1%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 의무는 있으나 지정 후 미흡한 혜택, 지정법인단체 선정 투명성 검증 필요, 짧은 지정 기간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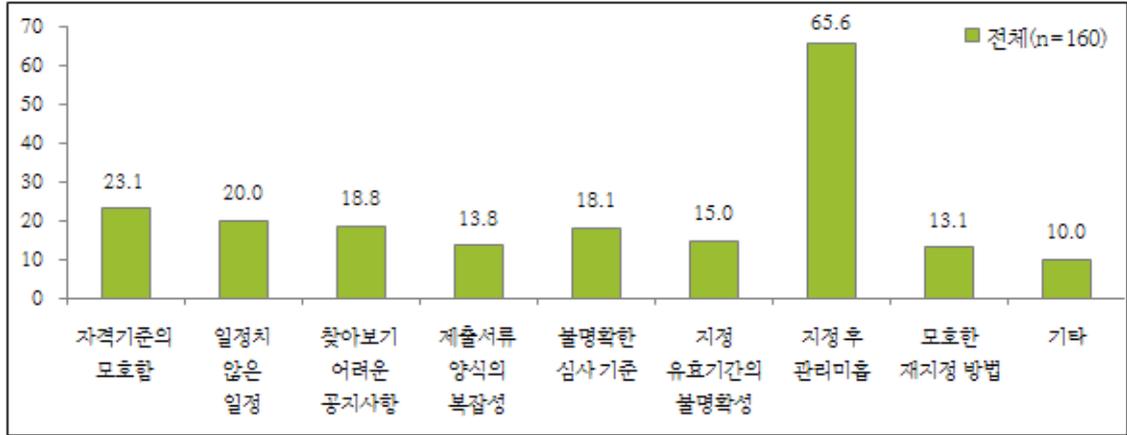
단위 : (개), %

	사례수	신청대상 자격기준의 모호함	매년 일정치 않은 신청,심사 기간, 결과발표 일시	찾아보기 어려운 지정신청 공지사항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성	불명확한 심사 기준	지정유효 기간의 불명확성	지정 후 관리미흡	재지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모호	기타	합계
■ 전체 ■	(160)	11.3	8.8	13.1	11.3	6.9	3.8	36.9	3.8	4.4	100.0
■ 지역 ■											
서울	(48)	14.6	4.2	20.8	4.2	6.3	4.2	31.3	6.3	8.3	100.0
수도권	(25)	4.0	12.0	8.0	16.0	8.0		44.0	4.0	4.0	100.0

단위 : (개), %

	사례수	신청대상 자격 기준의 모호함	매년 일정치 않은 신청,심사 기간, 결과발표 일시	찾아보기 어려운 지정신청 공지사항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성	불명확한 심사 기준	지정유효 기간의 불명확성	지정 후 관리미흡	재지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모호	기타	합계
중부권	(26)	11.5	7.7	7.7	7.7	7.7		50.0	3.8	3.8	100.0
영남권	(36)	5.6	8.3	13.9	11.1	8.3	5.6	44.4	2.8		100.0
호남권	(25)	20.0	16.0	8.0	24.0	4.0	8.0	16.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7.0	11.6	14.0	7.0	7.0	4.7	41.9	4.7	2.3	100.0
사단법인	(53)	18.9	5.7	11.3	20.8	7.5	1.9	30.2		3.8	100.0
재단법인	(15)	6.7	6.7	13.3	6.7		6.7	26.7	13.3	20.0	100.0
주식회사	(6)	16.7		16.7		16.7		5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14.4	9.3	11.0	11.9	5.1	4.2	37.3	4.2	2.5	100.0
기획/제작사	(7)		14.3	28.6		28.6		28.6			100.0
축제조직	(7)		14.3	42.9				28.6		14.3	100.0
공연장운영	(8)		12.5	25.0	12.5			37.5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7		6.7	13.3	20.0	6.7	33.3		1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6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5.3	15.8	7.9	2.6	7.9	7.9	39.5	5.3	7.9	100.0
음악	(46)	17.4	6.5	8.7	10.9	8.7	2.2	41.3	2.2	2.2	100.0
무용	(9)		11.1	22.2	11.1		11.1	33.3	11.1		100.0
전통	(33)	15.2	3.0	18.2	27.3			33.3	3.0		100.0
미술	(13)	7.7		7.7	7.7	23.1	7.7	30.8		15.4	100.0
복합	(21)	9.5	14.3	23.8	4.8	4.8		33.3	4.8	4.8	100.0

나. 1+2순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 모두 살펴보면, ‘지정 후 관리미흡’이 65.6%로 가장 높았고, ‘자격기준의 모호함(23.1%)’, ‘매년 일정치 않은 지정신청 기간, 심사기간, 결과발표 일시(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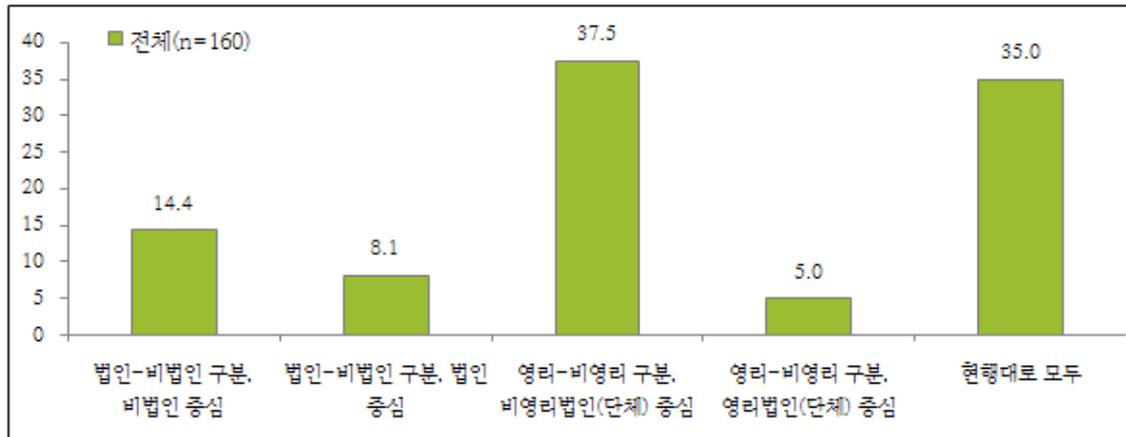
단위 : (개), %

	사례수	신청대상 자격기준의 모호함	매년 일정치 않은 신청심사 기간 결과발표 일시	찾아보기 어려운 지정신청 공지사항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성	불명확한 심사 기준	지정유효기간의 불명확성	지정 후 관리미흡	재지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모호	기타	합계
■ 전체 ■	(160)	23.1	20.0	18.8	13.8	18.1	15.0	65.6	13.1	10.0	100.0
■ 지역 ■											
서울	(48)	27.1	16.7	22.9	6.3	12.5	20.8	56.3	18.8	12.5	100.0
수도권	(25)	20.0	20.0	12.0	20.0	12.0	16.0	76.0	16.0	4.0	100.0
중부권	(26)	23.1	15.4	15.4	7.7	34.6	15.4	76.9	3.8	7.7	100.0
영남권	(36)	13.9	27.8	16.7	13.9	19.4	11.1	69.4	13.9	13.9	100.0
호남권	(25)	32.0	20.0	24.0	28.0	16.0	8.0	56.0	8.0	8.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14.0	19.8	19.8	8.1	19.8	19.8	74.4	16.3	8.1	100.0
사단법인	(53)	32.1	20.8	18.9	24.5	20.8	9.4	50.9	9.4	9.4	100.0
재단법인	(15)	26.7	26.7	13.3	13.3		13.3	60.0	13.3	20.0	100.0
주식회사	(6)	66.7		16.7		16.7		83.3		16.7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25.4	21.2	17.8	14.4	16.1	16.1	65.3	16.9	5.1	100.0
기획제작사	(7)	14.3	14.3	28.6		71.4		57.1		14.3	100.0

단위 : (개), %

	사례수	신청대상 자격기준 의 모호함	매년 일정치 않은 신청심사 기간, 결과발표 일시	찾아보기 어려운 지정심사 공지사항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성	불명확 한 심사 기준	지정유효 기간의 불명확성	지정 후 관리미 흡	재지정 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모호	기타	합계
축제 조직	(7)	14.3	14.3	57.1		14.3	28.6	57.1		14.3	100.0
공연장운영	(8)	25.0	25.0	25.0	25.0			75.0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20.0	6.7	13.3	26.7	20.0	73.3		2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20.0			60.0		8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15.8	26.3	18.4	5.3	18.4	23.7	71.1	13.2	7.9	100.0
음악	(46)	34.8	10.9	15.2	15.2	13.0	13.0	65.2	19.6	10.9	100.0
무용	(9)	22.2	22.2	33.3	11.1		22.2	66.7	22.2		100.0
전통	(33)	15.2	24.2	21.2	27.3	24.2	12.1	60.6	9.1	6.1	100.0
미술	(13)	15.4	15.4	7.7	7.7	30.8	15.4	76.9		30.8	100.0
복합	(21)	28.6	23.8	23.8	9.5	19.0	4.8	57.1	9.5	9.5	100.0

(2) 제도적 주요 대상 법인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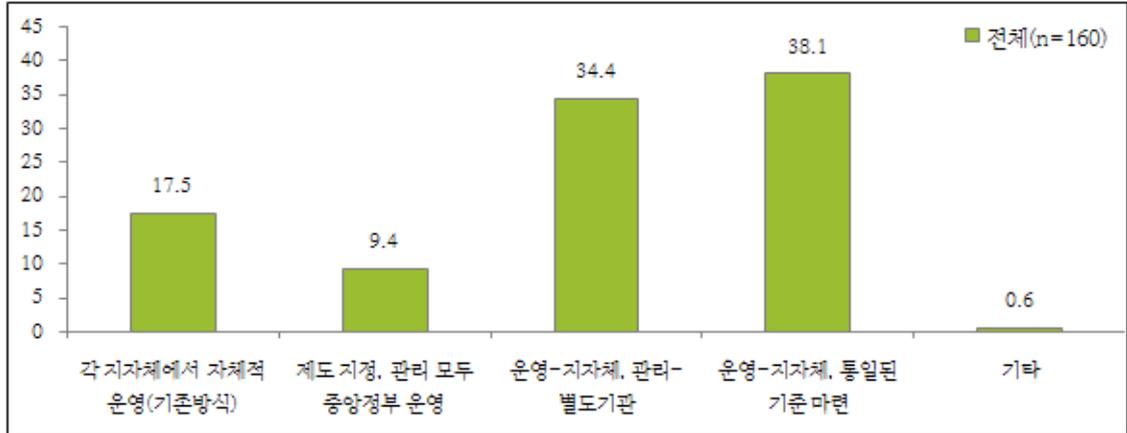
- 제도적 측면에서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법인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사단, 재단 등)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현행대로 모두’가 35.0%로 나타남.
- 법적형태에 따라 임의단체에서 현행대로 모두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주식회사는 각각 66%, 40%, 33.3%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여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원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각 형태별로 주요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형태에 차이가 있음.

단위 : (개), %

	사례 수	법인-비법인 구분, 비법인 중심	법인-비법인 구분, 법인 중심	영리-비영리 구분, 비영리법인 (단체) 중심	영리-비영리 구분, 영리법인 (단체) 중심	현행대로 모두	합계
■ 전체 ■	(160)	14.4	8.1	37.5	5.0	35.0	100.0
■ 지역 ■							
서울	(48)	12.5	12.5	39.6	6.3	29.2	100.0
수도권	(25)	8.0	12.0	32.0	8.0	40.0	100.0
중부권	(26)	23.1		26.9	7.7	42.3	100.0
영남권	(36)	8.3	8.3	36.1	2.8	44.4	100.0
호남권	(25)	24.0	4.0	52.0		20.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24.4	1.2	19.8	5.8	48.8	100.0
사단법인	(53)	3.8	11.3	66.0	1.9	17.0	100.0
재단법인	(15)		20.0	40.0	6.7	33.3	100.0
주식회사	(6)		50.0	33.3	16.7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15.3	7.6	35.6	4.2	37.3	100.0
기획/제작사	(7)	28.6	14.3	42.9	14.3		100.0
축제조직	(7)			42.9	14.3	42.9	100.0
공연장운영	(8)	12.5	25.0	25.0		3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53.3	6.7	2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40.0		4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28.9		23.7	2.6	44.7	100.0
음악	(46)	4.3	17.4	43.5	4.3	30.4	100.0
무용	(9)	22.2		44.4	22.2	11.1	100.0
전통	(33)	15.2	3.0	36.4	3.0	42.4	100.0
미술	(13)	15.4		53.8	7.7	23.1	100.0
복합	(21)	4.8	19.0	38.1	4.8	33.3	100.0

(3) 지정단체 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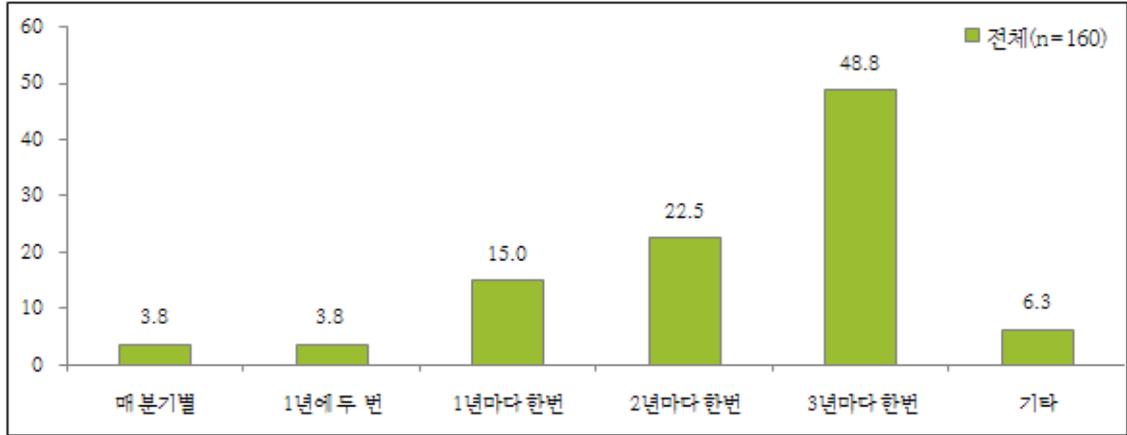
- 현재 각 지자체(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도의 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8.1%로 가장 높았고, ‘제도의 운영은 각 지자체가 하되, 이를 지원 또는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4.4%로 나타남.
-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17.5%로 가장 낮게 나타나 현 제도운영에 있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고 별도의 관리기관을 두거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을 원하는 비율이 72.5%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됨.
- 법적형태에 따라서는 임의단체의 경우 ‘제도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이를 지원 및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라고 43%가 응답한 반면, 재단법인은 ‘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53.3%가 응답하여 법적형태별로 차이가 나타남
- 활동분야 별로 기획/제작사와 축제조직은 ‘제도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이를 지원 및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에 높은 비율이 나타난 반면, 공연장운영과 전시 활동단체의 경우 ‘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 지자체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중앙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단위 : (개), %

	사례수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 운영(기존방식)	제도 지정, 관리 모두 중앙정부 운영	운영-지자체, 관리-별도기관	운영-지자체, 통일된 기준 마련	기타	합계
■ 전체 ■	(160)	17.5	9.4	34.4	38.1	0.6	100.0
■ 지역 ■							
서울	(48)	29.2	8.3	20.8	41.7		100.0
수도권	(25)	8.0	8.0	56.0	24.0	4.0	100.0
중부권	(26)	11.5	3.8	42.3	42.3		100.0
영남권	(36)	8.3	11.1	44.4	36.1		100.0
호남권	(25)	24.0	16.0	16.0	4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12.8	5.8	43.0	37.2	1.2	100.0
사단법인	(53)	24.5	15.1	22.6	37.7		100.0
재단법인	(15)	20.0	6.7	20.0	53.3		100.0
주식회사	(6)	16.7	16.7	50.0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18.6	11.9	33.1	35.6	0.8	100.0
기획/제작사	(7)	28.6		42.9	28.6		100.0
축제조직	(7)	14.3		42.9	42.9		100.0
공연장운영	(8)	12.5		37.5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6.7	6.7	33.3	5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4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23.7	2.6	39.5	31.6	2.6	100.0
음악	(46)	19.6	17.4	30.4	32.6		100.0
무용	(9)	22.2	11.1	22.2	44.4		100.0
전통	(33)	9.1	12.1	42.4	36.4		100.0
미술	(13)	7.7	7.7	23.1	61.5		100.0
복합	(21)	19.0		33.3	47.6		100.0

(4) 지정 주기



- 현재 각 지역별로 다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주기에 대해서 적정주기를 질문한 결과, ‘3년마다 한 번’이 48.8%로 가장 높았고, ‘2년마다 한 번(22.5%)’, ‘1년마다 한 번(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정주기에 관한 기타의견으로는 5년에 한번 지정, 영구적으로 자격부여하고 신규단체만 3년에 한 번씩 등록, 실적에 따라 주기 조정, 단체 설립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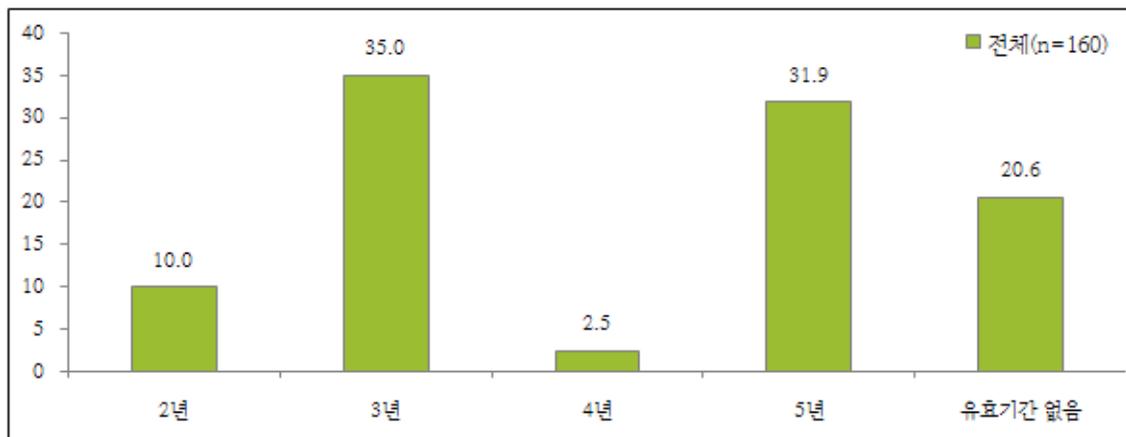
단위 : (개), %

	사례수	매분기별	1년에 두 번	1년 마다 한번	2년 마다 한번	3년 마다 한번	기타	합계
■ 전체 ■	(160)	3.8	3.8	15.0	22.5	48.8	6.3	100.0
■ 지역 ■								
서울	(48)	6.3	12.5	20.8	16.7	37.5	6.3	100.0
수도권	(25)	4.0		36.0	24.0	28.0	8.0	100.0
중부권	(26)				19.2	76.9	3.8	100.0
영남권	(36)	5.6		11.1	25.0	50.0	8.3	100.0
호남권	(25)			4.0	32.0	60.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2.3	1.2	12.8	25.6	53.5	4.7	100.0
사단법인	(53)	3.8	1.9	17.0	18.9	49.1	9.4	100.0
재단법인	(15)	6.7	13.3	20.0	26.7	26.7	6.7	100.0
주식회사	(6)	16.7	33.3	16.7		33.3		100.0
■활동분야■								

단위 : (개), %

	사례 수	매 분기별	1년에 두 번	1년 마다 한 번	2년 마다 한 번	3년 마다 한 번	기타	합계
공연활동단체	(118)	3.4	2.5	14.4	22.9	50.0	6.8	100.0
기획/제작사	(7)		14.3		14.3	71.4		100.0
축제조직	(7)			14.3	28.6	42.9	14.3	100.0
공연장운영	(8)	12.5	12.5	25.0	12.5	3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7	6.7	20.0	20.0	40.0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4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5.3		7.9	18.4	60.5	7.9	100.0
음악	(46)	2.2	4.3	19.6	26.1	39.1	8.7	100.0
무용	(9)			11.1	44.4	44.4		100.0
전통	(33)	6.1		12.1	21.2	57.6	3.0	100.0
미술	(13)		7.7	23.1	23.1	38.5	7.7	100.0
복합	(21)	4.8	14.3	19.0	14.3	42.9	4.8	100.0

(5) 지정 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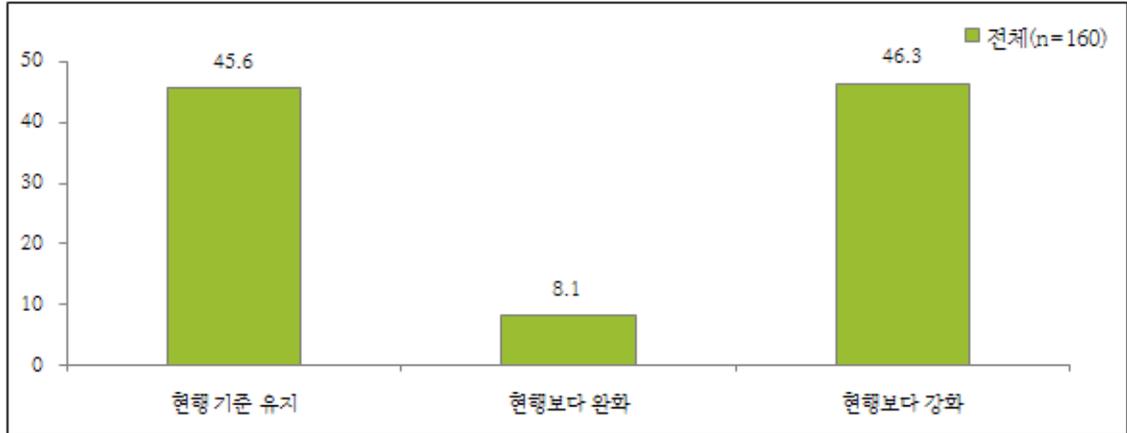


- 현재 각 지역별로 다른 지정 유효기간에 대해서 적정 유효기간을 질문한 결과, ‘3년’이 35.0%로 가장 높았고, ‘5년(31.9%)’, ‘유효기간 없음(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2년	3년	4년	5년	유효기간 없음	합계
■ 전체 ■	(160)	10.0	35.0	2.5	31.9	20.6	100.0
■ 지역 ■							
서울	(48)	4.2	27.1		35.4	33.3	100.0
수도권	(25)	8.0	32.0	8.0	24.0	28.0	100.0
중부권	(26)	7.7	50.0	3.8	26.9	11.5	100.0
영남권	(36)	13.9	30.6	2.8	33.3	19.4	100.0
호남권	(25)	20.0	44.0		36.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8.1	36.0	3.5	33.7	18.6	100.0
사단법인	(53)	9.4	35.8	1.9	28.3	24.5	100.0
재단법인	(15)	26.7	33.3		26.7	13.3	100.0
주식회사	(6)		16.7		50.0	33.3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7.6	35.6	3.4	28.8	24.6	100.0
기획/제작사	(7)	14.3	42.9		42.9		100.0
축제조직	(7)	14.3	42.9		14.3	28.6	100.0
공연장운영	(8)	12.5	50.0		25.0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20.0		60.0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40.0	2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7.9	31.6	5.3	34.2	21.1	100.0
음악	(46)	13.0	28.3	4.3	23.9	30.4	100.0
무용	(9)		55.6		22.2	22.2	100.0
전통	(33)	9.1	42.4		30.3	18.2	100.0
미술	(13)	15.4	15.4		61.5	7.7	100.0
복합	(21)	9.5	47.6		33.3	9.5	100.0

(6) 자격요건 기준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청기준이 되는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행보다 강화’가 46.3%로 가장 높았고, ‘현행기준 유지’가 45.6%로 나타났으며, ‘현행보다 완화’는 8.1%에 불과함.
- 전 장르에 걸쳐 현행기준을 유지하거나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특히 음악과 연극분야는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전문예술단체라는 평가’ 지정목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반영되었다고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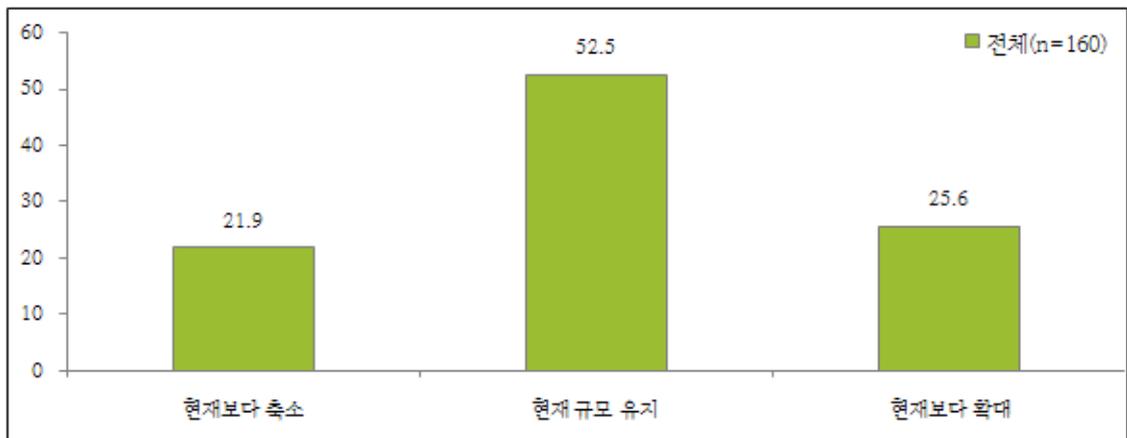
단위 : (개), %

	사례 수	현행 기준 유지	현행보다 완화	현행보다 강화	합계
■ 전체 ■	(160)	45.6	8.1	46.3	100.0
■ 지역 ■					
서울	(48)	50.0	6.3	43.8	100.0
수도권	(25)	32.0	8.0	60.0	100.0
중부권	(26)	50.0	3.8	46.2	100.0
영남권	(36)	44.4	8.3	47.2	100.0
호남권	(25)	48.0	16.0	36.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48.8	8.1	43.0	100.0
사단법인	(53)	41.5	9.4	49.1	100.0
재단법인	(15)	46.7	6.7	46.7	100.0
주식회사	(6)	33.3		66.7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44.9	5.9	49.2	100.0

단위 : (개), %

	사례수	현행 기준 유지	현행보다 완화	현행보다 강화	합계
기획/제작사	(7)	42,9	14,3	42,9	100,0
축제 조직	(7)	57,1		42,9	100,0
공연장운영	(8)	37,5		6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40,0	26,7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80,0	2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44,7	7,9	47,4	100,0
음악	(46)	37,0	4,3	58,7	100,0
무용	(9)	55,6		44,4	100,0
전통	(33)	54,5	9,1	36,4	100,0
미술	(13)	46,2	23,1	30,8	100,0
복합	(21)	47,6	9,5	42,9	100,0

(7) 지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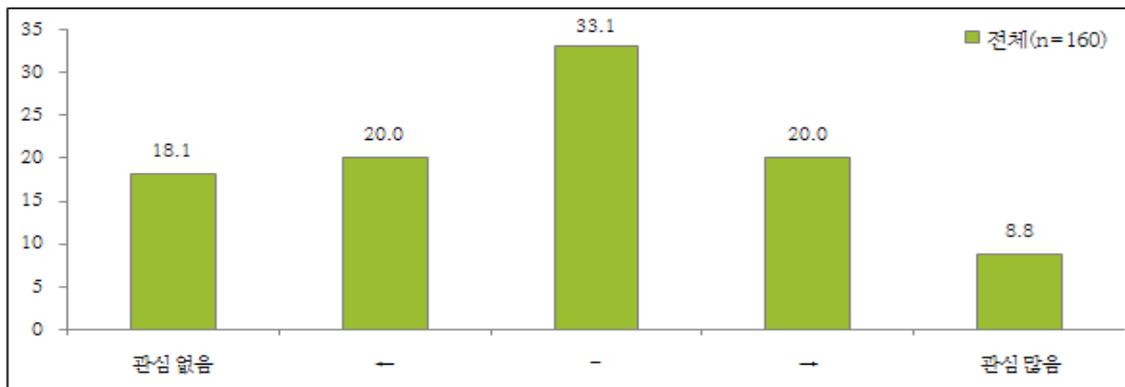


- 현재 290여 개의 단체로 이루어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현재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2.5%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확대’는 25.6%, ‘현재보다 축소’는 21.9%로 나타남.
- 활동분야에 따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재규모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기획/제작사의 경우 현재 규모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85.7%로 가장 높았으며, 공연장의 경우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62.5%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 수	현재보다 축소	현재 규모 유지	현재보다 확대	합계
■ 전체 ■	(160)	21.9	52.5	25.6	100.0
■ 지역 ■					
서울	(48)	18.8	56.3	25.0	100.0
수도권	(25)	24.0	60.0	16.0	100.0
중부권	(26)	15.4	57.7	26.9	100.0
영남권	(36)	27.8	36.1	36.1	100.0
호남권	(25)	24.0	56.0	20.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16.3	60.5	23.3	100.0
사단법인	(53)	28.3	45.3	26.4	100.0
재단법인	(15)	26.7	26.7	46.7	100.0
주식회사	(6)	33.3	66.7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22.9	55.1	22.0	100.0
기획/제작사	(7)		85.7	14.3	100.0
축제조직	(7)	28.6	28.6	42.9	100.0
공연장운영	(8)		37.5	6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20.0	46.7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20.0	2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13.2	57.9	28.9	100.0
음악	(46)	34.8	45.7	19.6	100.0
무용	(9)	33.3	55.6	11.1	100.0
전통	(33)	15.2	60.6	24.2	100.0
미술	(13)	23.1	53.8	23.1	100.0
복합	(21)	14.3	42.9	42.9	100.0

(8) 지정제도에 대한 주변의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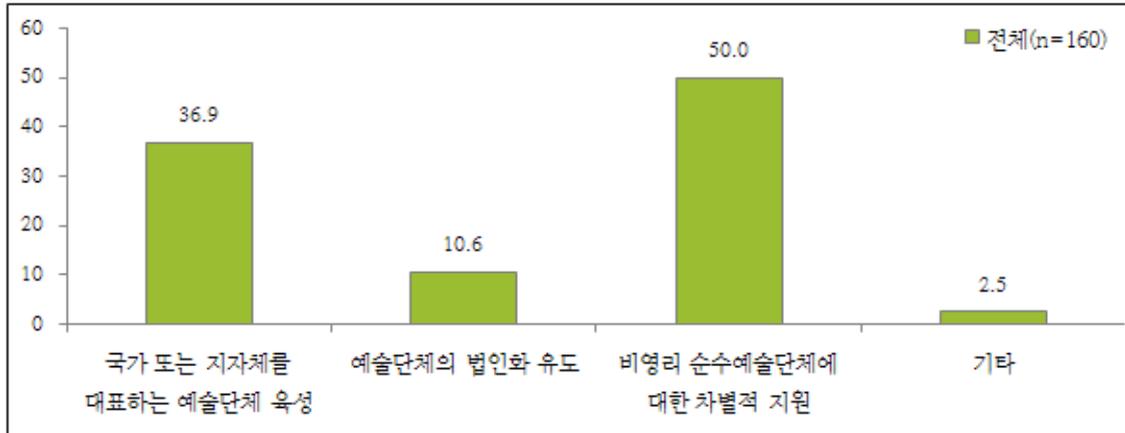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에 대한 주변(예술단체 등)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 있음(④+⑤)’은 28.8%, ‘관심 없음(①+②)’은 38.1%로 나타남.
- ‘관심 없음’을 1점으로, ‘관심 많음’을 5점으로 두고 평균을 구한 결과, 2.8점으로 다소 관심이 없는 편으로 나타남.
- 무용분야의 경우 타 장르에 비해 주변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를 분석해보면 기부자세제혜택 55.6%, 기부금 공개모집 33.3%, 자자체 보조금 수혜경험 44.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특히 지역 문예 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 항목에서 55.6%로 타 장르 대비 지정의 효과가 높아 보통이상으로 주변의 관심을 받는 비율이 66.6%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됨.

단위 : (개), %, 점

	사례수	관심 없음 ①	← ②	- ③	→ ④	관심 많음 ⑤	합계	평균
■ 전체 ■	(160)	18.1	20.0	33.1	20.0	8.8	100.0	2.8
■ 지역 ■								
서울	(48)	18.8	14.6	39.6	20.8	6.3	100.0	2.8
수도권	(25)	20.0	20.0	32.0	20.0	8.0	100.0	2.8
중부권	(26)	15.4	30.8	30.8	15.4	7.7	100.0	2.7
영남권	(36)	22.2	19.4	25.0	19.4	13.9	100.0	2.8
호남권	(25)	12.0	20.0	36.0	24.0	8.0	100.0	3.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20.9	25.6	32.6	16.3	4.7	100.0	2.6
사단법인	(53)	13.2	11.3	28.3	30.2	17.0	100.0	3.3
재단법인	(15)	20.0	6.7	53.3	13.3	6.7	100.0	2.8
주식회사	(6)	16.7	50.0	33.3			100.0	2.2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16.9	20.3	31.4	22.9	8.5	100.0	2.9
기획/제작사	(7)	28.6	28.6	42.9			100.0	2.1
축제조직	(7)	28.6	14.3	14.3	14.3	28.6	100.0	3.0
공연장운영	(8)	25.0	12.5	62.5			100.0	2.4
전시활동단체	(15)	13.3	26.7	26.7	26.7	6.7	100.0	2.9
기타 지원기관	(5)	20.0		60.0		20.0	100.0	3.0
■ 활동장르 ■								
연극	(38)	13.2	21.1	39.5	18.4	7.9	100.0	2.9
음악	(46)	21.7	19.6	30.4	21.7	6.5	100.0	2.7
무용	(9)	22.2	11.1	33.3	11.1	22.2	100.0	3.0
전통	(33)	9.1	24.2	21.2	33.3	12.1	100.0	3.2
미술	(13)	15.4	30.8	23.1	23.1	7.7	100.0	2.8
복합	(21)	33.3	9.5	52.4		4.8	100.0	2.3

5) 지정제도 정책 일반

(1) 지정제도의 정책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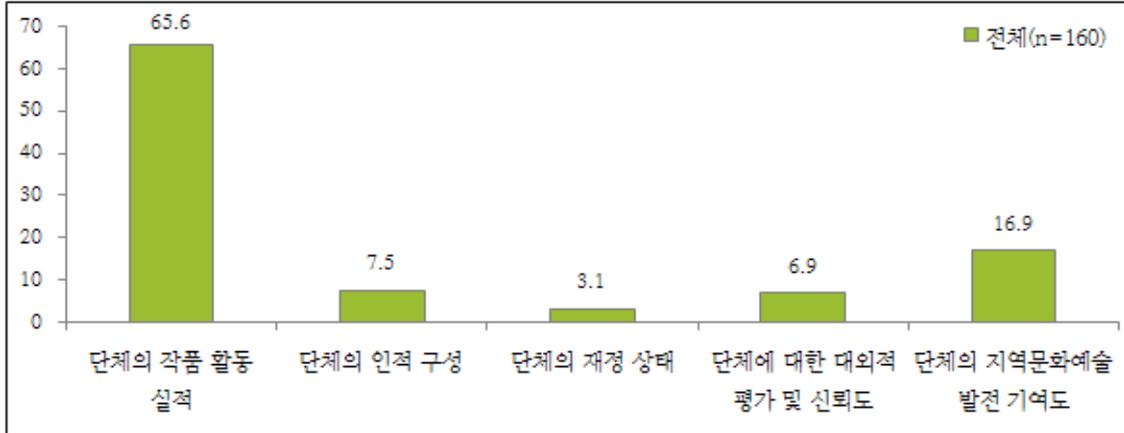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목표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 지원(비영리 부문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함)’이 50.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육성(소수의 탁월한 단체를 대상으로 함)’이 36.9%, ‘예술단체의 법인화 유도(일정한 조건을 갖춘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함)’이 10.6% 등으로 나타남.
- 활동분야에 따른 지향해야 할 정책적 목표는 기획/제작사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육성이 57.1%로 나타났고, 공연장운영과 전시활동단체는 각각 75%, 66.7%의 비율로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라고 응답함.
- 기타의견으로 비영리 순수예술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육성방안 마련, 세법 개선 등을 통한 예술 법인의 영업활동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단위 : (개), %

	사례수	국가 또는 지자체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육성	예술단체의 법인화 유도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 지원	기타	합계
■ 전체 ■	(160)	36.9	10.6	50.0	2.5	100.0
■ 지역 ■						
서울	(48)	35.4	16.7	45.8	2.1	100.0
수도권	(25)	36.0	8.0	52.0	4.0	100.0
중부권	(26)	42.3	3.8	53.8		100.0
영남권	(36)	27.8	11.1	58.3	2.8	100.0
호남권	(25)	48.0	8.0	40.0	4.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34.9	9.3	53.5	2.3	100.0
사단법인	(53)	39.6	11.3	47.2	1.9	100.0
재단법인	(15)	33.3	20.0	46.7		100.0
주식회사	(6)	50.0		33.3	16.7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39.0	11.0	48.3	1.7	100.0
기획/제작사	(7)	57.1		28.6	14.3	100.0
축제 조직	(7)	42.9	14.3	42.9		100.0
공연장운영	(8)	12.5	12.5	75.0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13.3	66.7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4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34.2	15.8	47.4	2.6	100.0
음악	(46)	41.3	6.5	47.8	4.3	100.0
무용	(9)	66.7	11.1	22.2		100.0
전통	(33)	33.3	9.1	57.6		100.0
미술	(13)	15.4	7.7	69.2	7.7	100.0
복합	(21)	38.1	14.3	47.6		100.0

(2) 지정 심사 시 우선 고려 사항

가. 1순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속성 등)’이 65.6%로 가장 높았고, ‘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가 16.9% 등으로 나타남.
- 법적형태에 있어 임의단체는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속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72.1%의로 나타남. 대부분의 작품활동을 위주로 하는 공연단체가 임의단체에 속해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사단법인의 경우 타 법적형태에 비해 ‘단체의 인적구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법적형태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짐.
- 활동분야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속성 등)’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공연장운영의 경우 ‘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발전기여도’가 37.5%로 타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지자체에 의해 설립 또는 운영되는 공연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짐.
- 모든 장르에서 단체의 작품활동실적이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응답했으나 지역문화와 연관성이 높은 전통분야의 경우 ‘지역문화예술발전기여도’에서 27.3%로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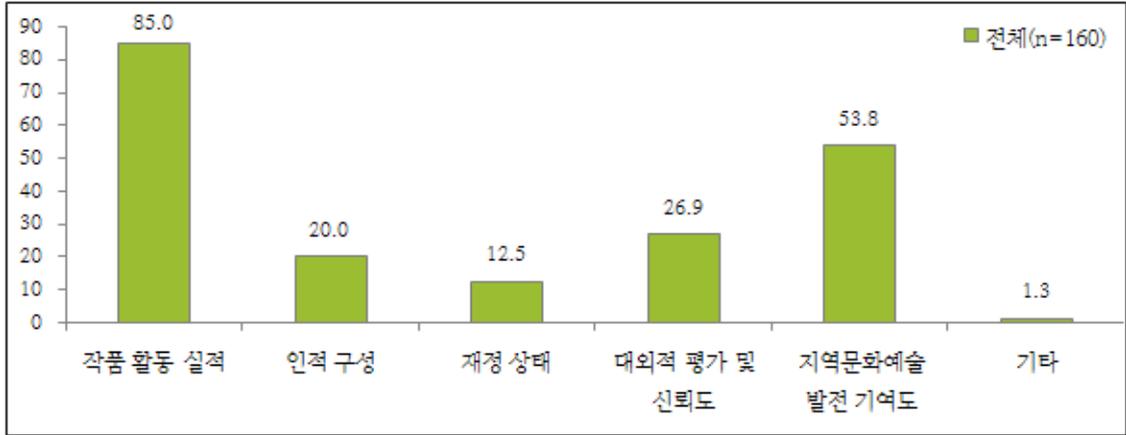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미술분야는 ‘단체에 대한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에서 23.1%로 높게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 심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차등적 지원, 15년 이상 활동 실적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단위 : (개), %

	사례수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	단체의 인적 구성	단체의 재정 상태	단체에 대한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	단체의 지역문화예 술 발전 기여도	합계
■ 전체 ■	(160)	65.6	7.5	3.1	6.9	16.9	100.0
■ 지역 ■							
서울	(48)	72.9	10.4		6.3	10.4	100.0
수도권	(25)	60.0	8.0		8.0	24.0	100.0
중부권	(26)	69.2	11.5	7.7	3.8	7.7	100.0
영남권	(36)	69.4	2.8	5.6	2.8	19.4	100.0
호남권	(25)	48.0	4.0	4.0	16.0	2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72.1	4.7	1.2	8.1	14.0	100.0
사단법인	(53)	56.6	13.2	5.7	3.8	20.8	100.0
재단법인	(15)	60.0	6.7	6.7	6.7	20.0	100.0
주식회사	(6)	66.7			16.7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69.5	6.8	1.7	5.9	16.1	100.0
기획/제작사	(7)	57.1	14.3		14.3	14.3	100.0
축제조직	(7)	71.4	14.3	14.3			100.0
공연장운영	(8)	62.5				3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0.0	13.3		20.0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40.0		6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71.1	7.9	2.6	7.9	10.5	100.0
음악	(46)	69.6	6.5	4.3	2.2	17.4	100.0
무용	(9)	88.9				11.1	100.0
전통	(33)	48.5	12.1	3.0	9.1	27.3	100.0
미술	(13)	69.2	7.7		23.1		100.0
복합	(21)	61.9	4.8	4.8	4.8	23.8	100.0

나. 1+2순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1순위와 2순위 모두 살펴보면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속성 등)’이 85.0%로 가장 높았고, ‘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가 53.8%,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가 26.9% 등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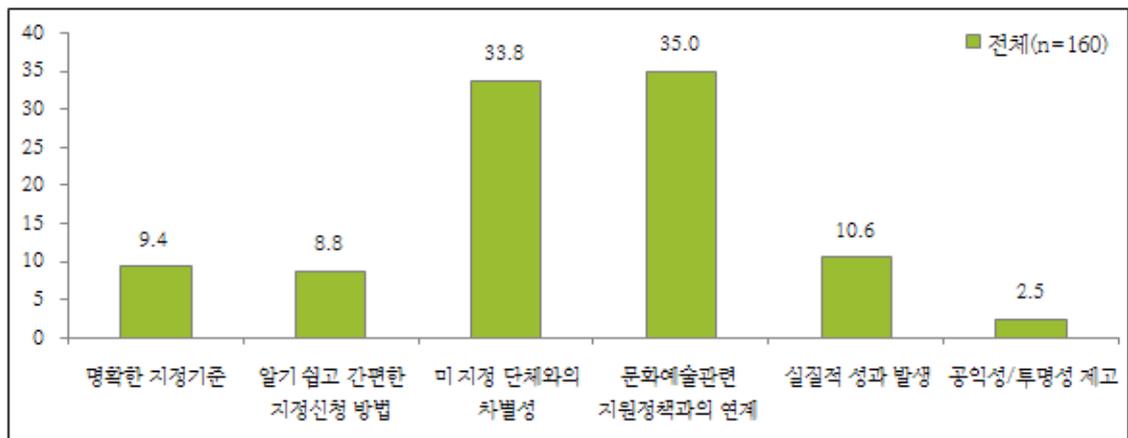
	사례수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	단체의 인적 구성	단체의 재정 상태	단체에 대한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	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기타	합계
■ 전체 ■	(160)	85.0	20.0	12.5	26.9	53.8	1.3	100.0
■ 지역 ■								
서울	(48)	87.5	25.0	10.4	41.7	35.4		100.0
수도권	(25)	84.0	24.0	12.0	24.0	56.0		100.0
중부권	(26)	84.6	19.2	15.4	7.7	69.2	3.8	100.0
영남권	(36)	83.3	13.9	16.7	27.8	55.6		100.0
호남권	(25)	84.0	16.0	8.0	20.0	68.0	4.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93.0	17.4	3.5	31.4	53.5	1.2	100.0
사단법인	(53)	77.4	22.6	20.8	15.1	60.4	1.9	100.0
재단법인	(15)	66.7	26.7	33.3	26.7	46.7		100.0
주식회사	(6)	83.3	16.7	16.7	66.7	16.7		100.0

단위 : (개), %

	사례수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	단체의 인적 구성	단체의 재정 상태	단체에 대한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	단체의 지역문화 예술 발전 기여도	기타	합계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89.8	19.5	10.2	26.3	52.5	0.8	100.0
기획/제작사	(7)	71.4	28.6	14.3	42.9	42.9		100.0
축제조직	(7)	85.7	14.3	42.9	14.3	42.9		100.0
공연장운영	(8)	75.0	12.5	12.5	37.5	6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73.3	26.7	6.7	26.7	6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40.0	20.0	40.0	20.0	6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92.1	23.7	7.9	21.1	55.3		100.0
음악	(46)	93.5	13.0	13.0	23.9	56.5		100.0
무용	(9)	88.9	11.1	22.2	33.3	44.4		100.0
전통	(33)	75.8	27.3	12.1	30.3	45.5	6.1	100.0
미술	(13)	69.2	23.1	7.7	30.8	69.2		100.0
복합	(21)	76.2	19.0	19.0	33.3	52.4		100.0

(3) 개선점

가. 1순위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운영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2 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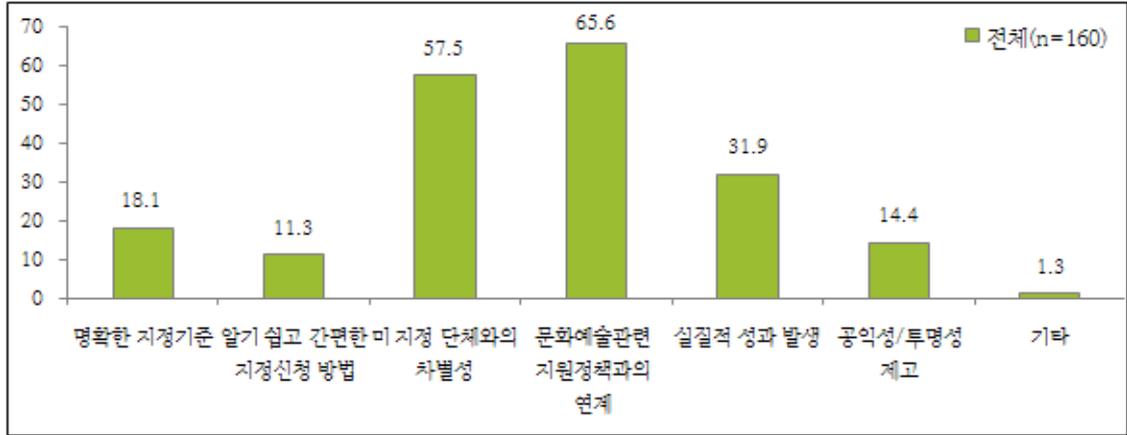
35.0%,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이 33.8% 등으로 나타남.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우선항목으로 응답했으며 중부, 영남, 호남권에서는 ‘미지정단체와의 차별성’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음. 분야별로는 공연장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실질적 성과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높게 나타났음.
- 기타의견으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제도 활성화, 작품과 연주수준을 통한 실적평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단위 : (개), %

	사례수	명확한 지정기준	알기 쉽고 간편한 지정신청 방법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실질적 성과 발생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합계
■ 전체 ■	(160)	9.4	8.8	33.8	35.0	10.6	2.5	100.0
■ 지역 ■								
서울	(48)	12.5	18.8	16.7	37.5	14.6		100.0
수도권	(25)	12.0		24.0	44.0	20.0		100.0
중부권	(26)	3.8		50.0	38.5	3.8	3.8	100.0
영남권	(36)	8.3	11.1	36.1	33.3	5.6	5.6	100.0
호남권	(25)	8.0	4.0	56.0	20.0	8.0	4.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9.3	7.0	40.7	32.6	9.3	1.2	100.0
사단법인	(53)	13.2	11.3	24.5	39.6	7.5	3.8	100.0
재단법인	(15)		13.3	20.0	33.3	26.7	6.7	100.0
주식회사	(6)			50.0	33.3	16.7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12.7	10.2	32.2	34.7	8.5	1.7	100.0
기획/제작사	(7)			57.1	14.3	14.3	14.3	100.0
축제조직	(7)		14.3	57.1	28.6			100.0
공연장운영	(8)			12.5	37.5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6.7	26.7	46.7	13.3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4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5.3	7.9	42.1	36.8	5.3	2.6	100.0
음악	(46)	19.6	4.3	37.0	28.3	8.7	2.2	100.0
무용	(9)	11.1		44.4	33.3	11.1		100.0
전통	(33)	6.1	15.2	27.3	39.4	9.1	3.0	100.0
미술	(13)		7.7	30.8	46.2	7.7	7.7	100.0
복합	(21)	4.8	14.3	19.0	33.3	28.6		100.0

나. 1+2순위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운영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가 65.6%,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이 57.5%, ‘실질적 성과 발생’이 3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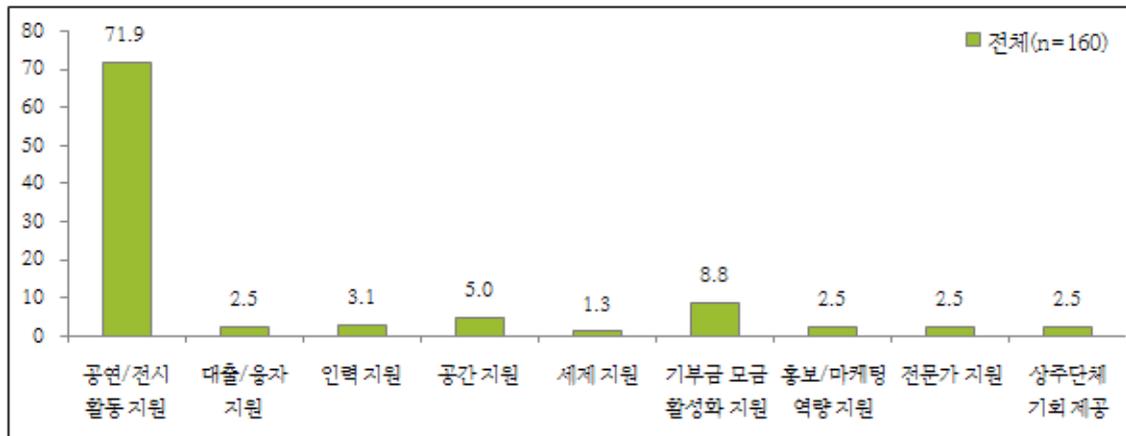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명확한 지정기준	알기 쉽고 간편한 지정신청 방법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실질적 성과 발생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합계
■ 전체 ■	(160)	18.1	11.3	57.5	65.6	31.9	14.4	1.3	100.0
■ 지역 ■									
서울	(48)	20.8	20.8	54.2	58.3	33.3	12.5		100.0
수도권	(25)	16.0	4.0	44.0	84.0	40.0	12.0		100.0
중부권	(26)	19.2	3.8	65.4	69.2	23.1	15.4	3.8	100.0
영남권	(36)	11.1	13.9	55.6	69.4	25.0	22.2	2.8	100.0
호남권	(25)	24.0	4.0	72.0	52.0	40.0	8.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16.3	9.3	59.3	72.1	30.2	10.5	2.3	100.0
사단법인	(53)	26.4	15.1	60.4	56.6	28.3	13.2		100.0
재단법인	(15)		13.3	33.3	66.7	40.0	46.7		100.0
주식회사	(6)	16.7		66.7	50.0	66.7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21.2	12.7	58.5	64.4	32.2	9.3	1.7	100.0
기획/제작사	(7)	28.6		71.4	42.9	42.9	14.3		100.0

단위 : (개), %

	사례 수	명확한 지정기준	알기 쉽고 간편한 지정신청 방법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실질적 성과 발생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합계
축제조직	(7)		28.6	57.1	71.4	28.6	14.3		100.0
공연장운영	(8)			25.0	75.0	50.0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6.7	53.3	80.0	20.0	2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80.0	60.0	2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18.4	10.5	68.4	73.7	23.7	5.3		100.0
음악	(46)	26.1	8.7	52.2	56.5	41.3	10.9	4.3	100.0
무용	(9)	11.1		77.8	66.7	44.4			100.0
전통	(33)	15.2	18.2	54.5	69.7	24.2	18.2		100.0
미술	(13)	15.4	7.7	53.8	84.6	15.4	23.1		100.0
복합	(21)	9.5	14.3	47.6	52.4	42.9	33.3		100.0

(4) 향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정책 수립 시 중점 사항

가. 1순위



- 향후 ‘전문예술법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시, 중심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공연 및 전시 활동(창

작) 지원'이 71.9%로 가장 높았고, '기부자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및 기부금 모금 활성화 지원'이 8.8% 등으로 나타남.

-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모든 법적형태에서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재단법인의 경우 '기부소득 공제확대 및 기부금 모집 활성화지원'이 40%로 높게 나타났음. 재단법인은 지정목적 질문에서 66.7%가 '기부금 모집'을 위한 것이라고 응답, 지정 후 효과에 있어서도 26.7%가 기부금품 모집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부자 세제혜택을 받은 비율도 60%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기부금관련 혜택과 세제사항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다고 보여짐.
- 기타의견으로 효과적인 간접지원정책 개발, 연주능력이 뛰어난 단체 선정하여 집중 육성, 관 주도의 무차별적 지원을 중단하고 예술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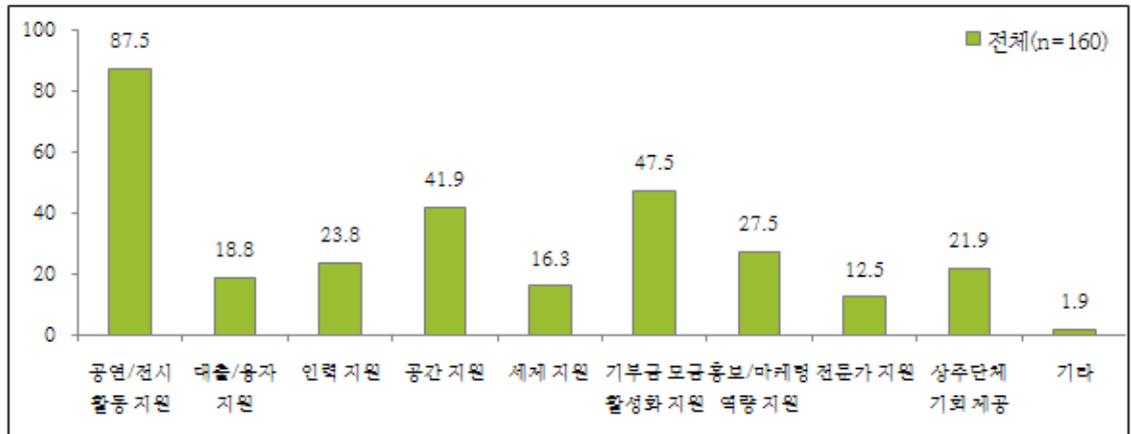
단위 : (개), %

	사례수	공연 및 전시활동(창작) 지원	긴급 자금의 대출 및 융자 지원	단체에 필요한 인력 지원	단체에 필요한 공간(연습실 등) 지원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기부소득 공제확대 /기부금 모금 활성화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역량 지원	전문가 지원	상주단체 기획 제공	합계
■ 전체 ■	(160)	71.9	2.5	3.1	5.0	1.3	8.8	2.5	2.5	2.5	100.0
■ 지역 ■											
서울	(48)	75.0	4.2		2.1	2.1	6.3	2.1	6.3	2.1	100.0
수도권	(25)	64.0	4.0	8.0	4.0		16.0	4.0			100.0
중부권	(26)	76.9	3.8	7.7	3.8	3.8	3.8				100.0
영남권	(36)	69.4			11.1		13.9		2.8	2.8	100.0
호남권	(25)	72.0		4.0	4.0		4.0	8.0		8.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79.1	3.5	2.3	4.7		5.8	1.2		3.5	100.0
사단법인	(53)	67.9		5.7	7.5	1.9	5.7	5.7	3.8	1.9	100.0
재단법인	(15)	53.3					40.0		6.7		100.0
주식회사	(6)	50.0	16.7			16.7			16.7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78.8	1.7	2.5	5.9		4.2	3.4		3.4	100.0
기획/제작사	(7)	28.6	28.6			14.3	14.3		14.3		100.0
축제조직	(7)	42.9		14.3	14.3	14.3	14.3				100.0
공연장운영	(8)	37.5					50.0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73.3		6.7			6.7		1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40.0				100.0
■ 활동장르 ■											

단위 : (개), %

	사례수	공연 및 전시 활동(창작) 지원	긴급 자금의 대출 및 지원	단체에 필요한 인력 지원	단체에 필요한 공간(연습실 등) 지원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 세제 지원	기부소득 공제 확대/기부금 모금 활성화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역량 지원	전문가 지원	상주단체 기회 제공	합계
연극	(38)	73.7	2.6	2.6	2.6	2.6	5.3	5.3	2.6	2.6	100.0
음악	(46)	73.9	4.3	2.2	6.5	2.2	6.5			4.3	100.0
무용	(9)	77.8					11.1			11.1	100.0
전통	(33)	78.8		6.1	9.1		3.0	3.0			100.0
미술	(13)	76.9		7.7			7.7		7.7		100.0
복합	(21)	47.6	4.8		4.8		28.6	4.8	9.5		100.0

나.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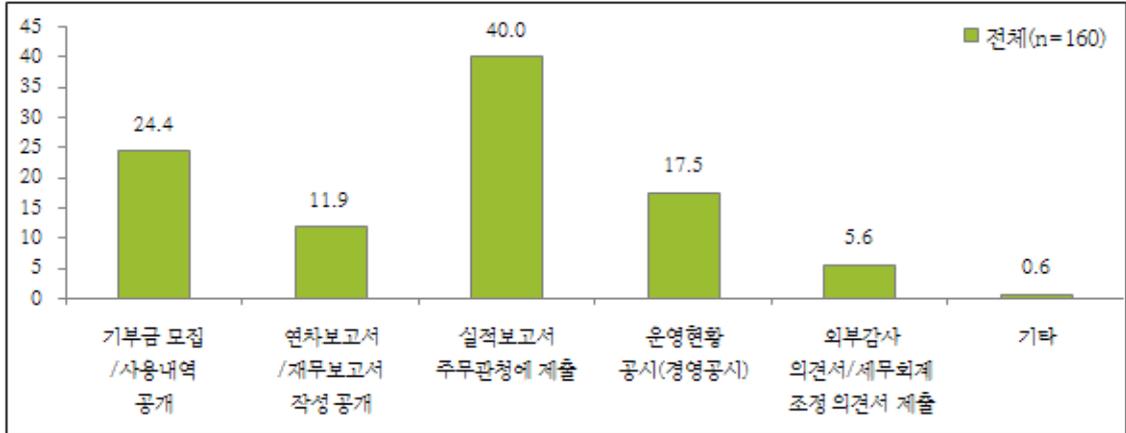


- 향후 ‘전문예술법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시, 중심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1, 2, 3순위 모두를 살펴보면 ‘공연 및 전시 활동(창작) 지원’이 87.5%, ‘기부자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및 기부금 모금 활성화 지원’이 47.5%, ‘단체에 필요한 공간(연습실 등) 지원’이 4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공연 및 전시 활동(창작) 지원	긴급 자금의 대출 및 용자 지원	단체에 필요한 인력 지원	단체에 필요한 공간(연습실 등) 지원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기부자 소득공제 확대/ 기부금 모금 활성화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역량 지원	조직운영·인사·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가 지원	상주단체 기회 제공	기타	합계
■ 전체 ■	(160)	87.5	18.8	23.8	41.9	16.3	47.5	27.5	12.5	21.9	1.9	100.0
■ 지역 ■												
서울	(48)	85.4	22.9	22.9	35.4	27.1	47.9	16.7	14.6	27.1		100.0
수도권	(25)	84.0	20.0	36.0	44.0	16.0	48.0	28.0	4.0	16.0	4.0	100.0
중부권	(26)	92.3	15.4	26.9	42.3	7.7	38.5	38.5	11.5	26.9		100.0
영남권	(36)	83.3	16.7	11.1	41.7	8.3	52.8	33.3	22.2	22.2	5.6	100.0
호남권	(25)	96.0	16.0	28.0	52.0	16.0	48.0	28.0	4.0	12.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91.9	24.4	23.3	45.3	9.3	40.7	29.1	8.1	25.6	2.3	100.0
사단법인	(53)	84.9	13.2	26.4	49.1	15.1	49.1	24.5	18.9	15.1	1.9	100.0
재단법인	(15)	73.3	6.7	20.0	13.3	46.7	80.0	26.7	13.3	20.0		100.0
주식회사	(6)	83.3	16.7	16.7		50.0	50.0	33.3	16.7	33.3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91.5	18.6	22.9	47.5	13.6	41.5	28.0	6.8	26.3	2.5	100.0
기획/제작사	(7)	57.1	42.9	28.6	14.3	57.1	42.9	14.3	28.6	14.3		100.0
축제조직	(7)	85.7	14.3	14.3	42.9	28.6	42.9	14.3	42.9	14.3		100.0
공연장운영	(8)	62.5		37.5		37.5	100.0	37.5	25.0			100.0
전시활동단체	(15)	86.7	26.7	26.7	33.3	6.7	53.3	26.7	26.7	1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80.0		20.0	40.0		100.0	40.0	2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92.1	26.3	23.7	47.4	7.9	34.2	28.9	13.2	23.7	2.6	100.0
음악	(46)	93.5	19.6	17.4	43.5	21.7	58.7	10.9	6.5	23.9	4.3	100.0
무용	(9)	100.0	11.1	22.2	33.3	33.3	44.4	33.3		22.2		100.0
전통	(33)	81.8	12.1	27.3	48.5	3.0	33.3	45.5	15.2	30.3		100.0
미술	(13)	84.6	30.8	30.8	38.5	7.7	53.8	30.8	15.4	7.7		100.0
복합	(21)	71.4	9.5	28.6	23.8	38.1	66.7	28.6	23.8	9.5		100.0

(5) 지정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공익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이 40.0%로 가장 높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가 24.4%,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단체의 운영현황 공시(경영공시)’가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활동분야 전반적으로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분야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공연활동단체와 기획/제작분야의 경우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방안이 각각 44.1%,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축제조직은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항목이 42.9%로 나타났으며, 공연장 운영 분야는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의 운영현황 공시’가 50%를 나타냄. 미술분야의 경우 전 항목에서 고른 분포도를 보임.
- 기타의견으로 지정기부금의 실효성 자체가 미미해 방법 제안에 의미가 없다고 있음.

단위 : (개), %

	사례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매년 단체의 연차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공개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단체의 운영현황 공시 (경영공시)	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기타	합계
■ 전체 ■	(160)	24.4	11.9	40.0	17.5	5.6	0.6	100.0
■ 지역 ■								
서울	(48)	20.8	14.6	39.6	14.6	10.4		100.0
수도권	(25)	20.0	20.0	36.0	24.0			100.0
중부권	(26)	15.4	7.7	46.2	26.9	3.8		100.0
영남권	(36)	30.6	5.6	38.9	16.7	5.6	2.8	100.0
호남권	(25)	36.0	12.0	40.0	8.0	4.0		100.0
■ 법적형태 ■								
임의단체	(86)	27.9	14.0	37.2	15.1	4.7	1.2	100.0
사단법인	(53)	22.6	7.5	45.3	17.0	7.5		100.0
재단법인	(15)	13.3	13.3	33.3	40.0			100.0
주식회사	(6)	16.7	16.7	50.0		16.7		100.0
■ 활동분야 ■								
공연활동단체	(118)	22.9	12.7	44.1	14.4	5.1	0.8	100.0
기획/제작사	(7)	14.3		71.4		14.3		100.0
축제조직	(7)	42.9	14.3	14.3	28.6			100.0
공연장운영	(8)	25.0	12.5	12.5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20.0	13.3	26.7	26.7	1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20.0	20.0			100.0
■ 활동장르 ■								
연극	(38)	36.8	10.5	28.9	15.8	7.9		100.0
음악	(46)	17.4	10.9	54.3	10.9	6.5		100.0
무용	(9)	11.1	22.2	44.4	22.2			100.0
전통	(33)	27.3	12.1	42.4	15.2		3.0	100.0
미술	(13)	23.1	15.4	23.1	23.1	15.4		100.0
복합	(21)	19.0	9.5	33.3	33.3	4.8		100.0

II. 그룹인터뷰

1. 인터뷰 개요

1) 개요

- 일 시 : 2009. 4. 29(수)
- 장 소 : 까페 장
- 참 석 : 총 11인

연구진 (총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지연(성미산 마을극장 기획,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외래강사)
단체 (총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최순화, 오성화 대표 ·어린이문화예술학교 김숙희 대표 ·(주)PMC프로덕션 김용재 부장 ·(주)서울모테트합창단 박치용 단장 ·(주)이다엔터테인먼트 손상원 대표 ·예술의전당 경영기획부 김우진
센터 (총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찬두(지원컨설팅팀 팀장) ·김혜진(지원컨설팅팀)

2) 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개선안 의견수렴

3) 논의내용

- 현재 제도 및 운영 등의 문제점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개선사항

- 미션 재정립
- 제도의 틀 조정
- 운영 시스템 조정
- 제도의 대상 조정
- 혜택과 의무의 명확화

2. 논의 결과

1) 지정제도 총체적 문제 및 개선점

- 지정제도 브랜드 가치 미비 및 홍보 취약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의 존재 및 운영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지정 이후 지정단체들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에 대하여 인식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임.
 - 사업협력 파트너인 기업, 지역, 기타단체들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대한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이 어려움.
 - 때문에 지정단체들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단체’ 라는 브랜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음.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단체홍보 시 모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예술의전당 대부분의 직원들은 작년 오페라극장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와 예술의전당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정도임. (오페라 극장 객석기부제 관련)
- 지정기부금단체로의 혜택 미비
 - 실질적으로 기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부하는 동기 유발에 있어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님.
 - 기부들에게 주어진 세제혜택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어서 기부금 모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음.

● 기부금 모집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기부금 모집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 현재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되는 기부금모집 강의의 효과가 매우 좋으나, 수강비용이 비싸고 외국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 전문예술법인·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기부금 모집 활동을 위한 노하우를 개발하고 쌓아가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함.

● 지정혜택 시 인건비지원 사업 필요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경제위기 및 사회전반의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이 상승됨에 따라 영세한 문화예술단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느껴지고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기획인력 지원사업도 일부 있지만 보다 많은 수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관련한 복잡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으로 인해 어려움도 겪고 있음.
- 단체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도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 듯함.

2) 제도 개선안 관련 의견

● 지정대상 <영리법인> 제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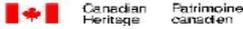
- 제도 도입시점에서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혜택으로 법인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어 많은 영리법인들이 지정을 받았음. 그러나 타부처 및 관계법률 등과의 관계에 제약이 많이 있어 결국 무효화되었음.
- 거의 아무혜택이 없는 영리법인을 제도개선을 통해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설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임의단체로 남아있거나 보다 손쉬운 주식회사로의 법인전환이 이루어지고 있

- 음. (서울모테트합창단, 서울프린자네트워크의 경우 법인신청 시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
- 또한 현재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문화예술활동의 특성상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비영리사업은 비영리법인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비교하여보았을 때 차이가 거의 없음.
 - 만약, 영리법인이 제도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아래 임의단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그 단체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을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경우 법인운영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
- 지정대상 유형 구분
 - 지정대상의 활동분야를 창작-유통-매개 지원으로 구분하여 기존 제도에 비해 보다 명확해졌음.
 - 지정대상 <국공립 단체, 지원재단> 포함 관련
 -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공립 단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세하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정 및 지원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도운영 취지가 마련되어야 함.
 - 지원재단의 경우에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III. 해외사례 조사 불임자료

1. 캐나다의 국가지정 예술서비스 단체

1) 지정 및 등록양식



PROTECTED once completed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A NATIONAL ARTS SERVICE ORGANIZATION AND AS A REGISTERED NATIONAL ARTS SERVICE ORGANIZATION

Registration Number	
Date	
For Departmental use only	

Instructions

This form enables arts organizations to apply to th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to be designated as a National Arts Service Organization, and subsequently to Canada Revenue Agency, Charities Directorate, for registration as a Registered National Arts Service Organization under the *Income Tax Act*.

If you need information on how to complete this form, please refer to the enclosed information package "Fact Sheet for Designation as a National Arts Service Organization". You may also refer to the "Glossary of Terms" which defines the technical terms highlighted in bold print on this application form. Additional assistance may be obtained from th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ARTS POLICY BRANCH**, at (819) 956-2348, and from **CANADA REVENUE AGENCY, CHARITIES DIRECTORATE**, (813) 954-6215 for local Ottawa calls or 1-888-892-5667 toll-free calls.

The completed application should be forwarded to th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ARTS POLICY BRANCH**, 15 EDDY STREET, 3RD FLOOR, GATINEAU, QUEBEC K1A 0M5.

Applicant identification

Name of Applicant

Mailing Address:

Street and No. P.O. Box R.R. No. City/Town Province Postal Code

Physical address at which books and records will be kept:

Street and No. P.O. Box R.R. No. City/Town Province Postal Code

Fiscal period ends: _____ Day _____ Month

Particulars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quired of all applicants.

1. Attach a certified copy of each of the governing document(s) under which the applicant was established including any of the following: Letters patent or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Memorandum or Articles of Association/Incorporation, Constitution, By-laws, etc.
2. Attach a copy of your mission statement which gives full details of all activities and programs to be carried on by the applicant in furtherance of each of the objects and purposes stated in its governing documents.
3. Attach a statement which attests that the applicant represents the community of artists from one or more of the sectors of activity (please refer to number 7) in one or both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Canada as evidenced by a nation-wide membership list.

Application - 1

4. Attach a copy of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 or the Statement of Receipts and Disbursements and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for the last completed year or fiscal period of operation prior to the date of application. If the applicant is not yet in operation, a copy of the budget, or an estimate of the expenditures to be made in the first year of operation, should be attached.	
5. Attach a list showing full name, address and occupation of all the executive or directing officers of the applicant. (This refers to those individuals who set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or association and/or direct its operations.)	
6. The applicant should provide to the Departments copies of any changes which are made to its objects and activities, or any other changes made after its designation and subsequent registration.	
7. Indicate from which sector(s) of activity membership is drawn from: <input type="checkbox"/> Theatre <input type="checkbox"/> Photography <input type="checkbox"/> Dance <input type="checkbox"/> Sculpture <input type="checkbox"/> Crafts <input type="checkbox"/> Design <input type="checkbox"/> Drawing <input type="checkbox"/> Sound recording <input type="checkbox"/> Music <input type="checkbox"/> Opera <input type="checkbox"/> Painting <input type="checkbox"/> Film/Video <input type="checkbox"/> Literary arts <input type="checkbox"/> Other (Specify) _____	
8. Does the applicant own or intend to acquire real property, i.e. land and/or buildings? If yes, state the name in which the title to the real property is or will be registered. _____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9. Was the applicant formed for the purpose of funding registered charities or other qualified donees listed in the <i>Income Tax Act</i> to the extent of more than 50% of its annual incom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0. Are 50% or more of the executives or directing officers named in the list provided in response to question 5 related to any other person named in that list (i.e. do not deal with each other at arm's length)? if any of these persons are related by blood, marriage, adoption, common-law, or close business ties, please indicate the relationship on the list provide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1.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will this applicant receive more than 50% of the funds from one person or from a group of persons who are related to each other (i.e. who do not deal with each other at arm's length)?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2. Is the applicant currently a registered charity under the <i>Income Tax Act</i> ? If yes, please include a letter addressed to Canada Revenue Agency, Charities Directorate, requesting voluntary revocation of its charitable status should it meet the requirements of a Registered National Arts Service Organizatio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Certification

We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given in this application and in all documents attached is true and correct.

_____	_____	_____
Authorized Signature	Name and Title (please print)	Date
_____	_____	_____
Address	Home Telephone Number	Work Telephone Number
_____	_____	_____
Authorized Signature	Name and Title (please print)	Date
_____	_____	_____
Address	Home Telephone Number	Work Telephone Number

(It is a serious offence to make false or deceptive statements.)

Authorized representative, if different from above:

Name	Telephone Number
Address	

2. 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도

1) 인증기준

- 거버넌스와 박물관 및 미술관 경영
- 이용자 서비스
- 관람객 시설
- 소장품 관리

2) 인증요건

(1) 거버넌스와 박물관 및 미술관 경영관련

① 집행이사회(governing body)를 위한 정관

-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모든 수정안을 포함한 최근의 정관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② 적절한 경영체제

- 정관에 나타난 집행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운영위원회 기능을 가진 대학 및 기타 비지방자치단체기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약관, 이사회와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 취득 및 처분 정책, 향후 계획 등과 같은 정책문서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 기구나 개인에 대한 증거도 제공해야 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을 경영하는 기구가 소장품을 소유하는 주체와 별개로 구성된 경우에는 소장품을 소유한 기구의 정관뿐만 아니라, 경영기구의 정관 및 두 기구 간의 공식적인 합의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③ 소장품 소유권에 대한 만족스러운 장치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은 사회를 위해 신탁된 것이므로 소장품의 소유권 관련 만족할 만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④ 부동산 점유를 위한 안정적인 장치

- 부동산 점유 관련 최단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소장품의 안전 및 향후 계획 실행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긴 기간에 대해 명기된 점유 조건이 있어야 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은 보유, 임대계약, 라이선스 등 건물 점유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해야 함.

⑤ 건실한 재정 기초

-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재정적 기초가 건실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소장품에 어떤 가치가 매겨지든 간에 이와 별도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재정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어떤 경우에도 소장품이 저당 잡히거나 대출금의 담보로 잡혀서는 안 됨.
- 자선사업 기구로 구성된 영국과 웨일즈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최근 2년간의 회계 장부를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기관은 최근 2년간의 지출내역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별도의 경영 기구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계장부 외에 경영기구의 최근 2년간 회계장부도 제출해야 함.

⑥ 목적, 주요 목적, 특정 목표 및 지출 계획을 포함한 향후계획

- 향후계획을 세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때 향후계획은 자체적으로 경영 장치의 일환으로 수립한 것으로, <인증계획>을 위해 별도로 문건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서처럼, 특정 목표가 보다 큰 집합체의 계획에 담겨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 자체의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됨.
- 다른 형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하므로, 향후계획 관련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계획의 주기 역시 다양함.
- 당해 년도와 차기 년도 지출계획의 세부 내역을 제출해야 함.

⑦ 비상계획

- 비상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기구의 요청 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비상계획의 내용 :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대처 방안
 - : 소장품 및 건물에 대한 대처 방안
 - : 화재, 홍수, 도난, 파괴 및 기타 재앙의 위협에 대한 위험성 평가
 - : 비상사태 발견 시 직원이 따라야 할 절차
 - 최소한 5년에 한번씩 비상계획을 수정해야 하며 마지막 수정 일자를 표기하여야 함.
- ⑧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규모와 경험을 갖춘 직원
- ‘직원(스텝)’이라는 용어에는 급여를 받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모두 포함하며, 어떤 경우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멤버들도 포함됨.
 - 적절한 운영, 이용자 서비스 제공, 관람객 시설, 소장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원 운영체제가 가동되어야 함.
 - 급여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의 수와 업무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⑨ 직원 고용과 관리 과정
- ‘직원(스텝)’이라는 용어는 급여를 받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모두를 일컫음.
 - 이사회 멤버를 포함해 직원들의 모집 및 채용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함.
 - 새로운 직원에게 기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기관과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기초적인 정보를 갖도록 해야 함.
 - 폭넓은 지식과 필요 기술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이 필수적이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를 평가한 근거 정보를 제시해야 함.
- ⑩ 전문가 자문 활용
- 내부 직원이나 외부로부터 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전문 기획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해야 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기획자문가(Curatorial Adviser)의 서비스를 받아야 함.
 - <인증계획>이 요구하는 전문가나 기획 자문의 최소 자격요건과 경험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가는 학위나 운영 및 경영 관련 원리와 실행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함
- 기획 자문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학 관련 학위를 획득하고, 운영 및 경영 관련 원리와 실행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자격을 갖춘 경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없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위에서 기술한 자격 요건과 경험을 갖춘 기획 자문위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이 기획 자문위원은 해당 기관의 이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되어야 하고, 서명과 일자가 표기된 회의록의 형태로 임명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함.
- 인증신청 준비 시 기획 자문의 자문을 구해야 하고, 자문 역시 신청서에 확인 서명을 해야 하며 기획 자문위원은 인증 모니터링 절차의 일환으로 평가기구에 간략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⑪ 정책 개발 및 결정을 위한 전문성 활용
 - 고용된 전문가는 정책 개발 및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이는 기관의 전문가와 이사회와의 적절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획 자문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와 기획 자문위원 간의 공식적인 소통체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시해야 함.
- ⑫ 관련 법률, 안전 및 계획 규정 준수
 - 이사회는 관련 법률, 안전 및 계획 규정을 준수하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임을 보증해야 하며 보증의 증거로 신청서에 서명을 한 선언서를 제출해야 함.

(2) 이용자 서비스

- ① 위치, 개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출판물
 - 존재, 위치, 개관 시기 및 관련 사항,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정보를 리플렛, 가이드북, 포스터, 웹사이트 활용 등의 방법으로 출판물에 담아야 하며 출판물에는 장애인들의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담겨야 함.
 - 개관 시간·시기 이외의 방문이나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 등 공표된 개관 시간보다 추

가되는 운영도 정상적인 운영의 일환으로 간주해 신청서 작성 시 포함시켜야 함.

- 명백한 보안 및 법적인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신청서에 제한 사항 및 제한 이유, 일반 대중이 소장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 서비스나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 개관이나 물리적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부수적인 방법으로 원격 컴퓨터 접속을 가능하게 함.

② 다양한 이용자들의 활용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및 시설

- 이용자라 함은 방문, 직접 혹은 원격 서비스 이용하거나 서비스와 시설, 활동 관여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일컫음.
-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한 준비 단계로 방명록 분석, 출구 조사, 시장 조사 등을 통해 현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함.
- 접근(access) 관련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접근이라 함은 물리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연령대 및 배경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장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함.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용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를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③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들과의 상담

-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용자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은 상담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함.
- 이용자 상담의 방법은 다양하며 또한 매우 간단할 수도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은 가장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야 함.

④ 이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소장품 및 관련 정보

- 박물관 및 미술관은 소장품을 전시해야 하며, 전시는 장기전시일 수도 있고 매년 단기에 걸쳐 전시할 수도 있으며, 이 두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음.
- 보관된 소장품에 접근(access)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소장품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시해야 함.
- 소장품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⑤ 이용자의 학습과 향수를 돕는 소장품 해설
- 학습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주요 목적임.
 - <인증>과 관련하여 ‘학습’이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학습을 모두 일컫으며, ‘학습자’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임.
 - 사람들이 학습과 향유를 위해 소장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해설을 제공해야 함.
 - 소장품이 이용 가능해지도록 제 역할을 함으로써 기관의 교육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도와야 함.
 - 현장이나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습을 돕는 활동들로는 강연, 학습 패키지 제공, 컴퓨터 매체, 역할 놀이, 창작 워크숍, 가이드 투어, 인터랙티브 활동 등이 포함됨.
- ⑥ 전시 방침에는 소장품 전반이 반영되어야 함
- 전시된 소장품이 ‘국립’이라는 단어 사용을 반영하고 이에 합당해야 함. 소장품은 많으나 공간이 부족해 모든 소장품을 영구 전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시되지 않고 보관 중인 소장품 관람(예: 사전 약속에 따라 관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 ⑦ 일반 대중에게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지식과 자문을 제공해야 함
- ‘국립’이란 용어 사용에 합당하도록, 전체 박물관 및 미술관 커뮤니티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특히 동일 혹은 유사한 분야의 타 기관에게 전문적인 자문제공 역할을 인식해야 함.
 - 국내 및 해외 학자들의 문의에 응답하고 활발하게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과 역량의 스태프를 갖추어 학계에 대한 의무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 ⑧ 국립시설에 걸 맞는 양질의 관람객 시설을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시설이 제공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시설에 대한 설명과 이용자 수 등을 제출해야 함.

(3) 방문객 시설

- ① 이용 가능한 일반인 시설의 종류, 혹은 현장에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시설의 위치
 - 화장실, 가벼운 음식물, 주차장 등 이용 가능한 공중 시설이나 이러한 시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청에서 제작한 리플릿, 이와 유사한 제작물, 혹은 구두 정보의 형태 등으로 제공해야 함.
- ② 내부 및 외부의 방향표시 및 사인물
 - 방문객들에게 건물과 소장품의 배치를 안내하기 위해 외부와 내부에 방향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방향표시 및 사인물의 역할은 방문객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만일 내·외부 사인물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안을 조처했음을 증명해야 함.
 - 정보는 구두나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건물이나 부지의 규모 및 구성에 따라 방향표시 및 사인물의 체계가 달라질 것임.
- ③ 방문객 보호 장치
 - 방문객과 이용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법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침과 실행체계를 갖추어야 함.
- ④ 방문객 이용 장소의 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장치
 - 방문객의 이용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방문객의 편의, 건강, 안전, 즐거움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임.
- ⑤ 국립 시설에 걸 맞는 양질의 방문객 시설을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 관람객층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4) 소장품 관리

- ① 이사회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 승인한 획득 및 처분 방침
 -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의 <획득 및 처분 방침> 사본을 제출하되, 이 방침이 적절한 권한을 지닌 인사가 서명하고 일자가 적힌 회의록의 형태로 이사회의 승인을 이미 획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함.

- 박물관협회의 윤리강령(2002)에 따른 기관의 의무
 -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소장품을 획득함
 - 소장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장기적인 관심을 유지함
 - 소장품을 제작, 사용, 소유, 수집 혹은 기증한 이들의 관심을 인식함
- 영국은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1970년 도 UNESCO 협약을 비준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발효하였음. 이 협약에 따라 영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불법 반출된 어떤 항목도 영구 소장품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합법적으로 거래된 항목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2003년 문화재 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임.
-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논쟁은 법적인 시안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윤리적, 정서적, 정치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함. 반환요청 소지가 있는 항목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대처에 용이한 정책과 수행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함.
-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소장품의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각 기관의 이사회가 ‘처분에 대한 강한 반대’를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체 기관의 목적과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음.

② 기록 절차 매뉴얼(Documentation Procedural Manual)의 관리

- 기록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항상 법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각각의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 이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 장점이 있음.
 - 소장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함
 - 직원들에게는 결산의 방법 제공
 - 공적 책임 및 소유권의 증거 제공
 - 특히 소장품과 항목의 대상 및 표본을 내력과 연계시킴으로써 소장품에 대한 해설이 가능해짐.
 - 획득 및 처분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 선결조건이 됨.
- 각 기관의 기록 양식은 다르지만, 기록 수행에 있어 위의 원칙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소장품 기록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 기록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최근 버전의 <기록 절차 매뉴얼>(Documentation Procedural Manual)을 갖추어야 함.
- 소장품 관리와 이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에이전시인 박물관기록협회(mda)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③ <스펙트럼(SPECTRUM)>이 정의한 주요 기록 절차의 관리

- 박물관기록협회가 제작하는 <스펙트럼: 영국 박물관 및 미술관 기록 기준>은 국가적인 기록 기준으로 이를 통해 소장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음.
- 아래에 열거된 주요 절차(Primary Procedures)는 스펙트럼 최소 기준(SPECTRUM Minimum Standard)을 기초로 인증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그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스펙트럼 절차 : 대상 반입
 - 스펙트럼 절차 : 획득
 - (a) 접수등록대장 관리
 - (b) 접수등록대장의 보안 사본 관리
 - (c) 접수등록번호로 대상 표시
 - 스펙트럼 절차 : 위치 및 이동 관리
 - 스펙트럼 절차 : 목록화
 - (a) 적절한 색인 준비
 - 스펙트럼 절차 : 대상 반출
 - 스펙트럼 절차 : 대차물 반입
 - 스펙트럼 절차 : 대차물 반출

④ 일정이 포함된 실행 계획이 세워진 기록계획 작성

- 주요 절차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구 소장품이나 대차물의 기록 관리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 기록 적체가 발생함.
- 기록 계획을 통해 정리해야 할 기록 지연의 범주를 구분 짓고, 다음을 기술함.
 - (a) 주요 절차 실행 방법
 - (b) 영구 소장품이나 대차물인 품목들에 대한 스펙트럼 최소 기준 달성 방안

(c) 이 업무에 대한 추진 일정

- 목록을 작성한 후에 기존 문서기록과 목록을 비교하여 예외적인 사항을 해결하고,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항목이 기존 기록에 남겨져 있는지 살펴야 함.
- 이러한 조치 후에 영구 소장품과 대차물의 모든 항목에 대한 스펙트럼 절차 업데이트를 완수해야 함.
- 박물관기록협회로부터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⑤ 소장품의 파손 위험과 가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도

- 소장품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장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소장품의 파손 위험 및 가치 저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소장품을 저장, 취급, 전시, 이용해야 함.
- 아래에 명시된 소장품 관리를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함.

(a) 소장하고 있는 모든 항목의 상태와 필요 사항 파악을 위해 소장품 상태 개괄

(b) 직원들로 하여금 잠재적인 환경 조건 훼손을 주의하도록 환경 모니터링

(c) 소장품이 부적절한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훼손되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환경 관리 :

(d) 건물이 다양한 소장품을 위한 적절한 환경적 조건을 제공할 수 있게 적절한 건물 상태 유지 :

(e) 소장품 및 소장품이 보관된 장소를 꼼꼼히 청소하여 해충 번식과 곰팡이 및 연마재 혹은 산성 입자에 의한 소장품의 훼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관 장소 관리 :

(f) 시간이 흐르면서 필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소장품 관리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g) 소장품의 훼손 예방 및 보수 차원의 보존 관련, 정보에 근거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존 및 소장품 관리 관련 자문 및 서비스

- 이 밖에도 <스펙트럼 절차: 보존 및 소장품 관리>에 기술된 ‘보존조치기록 (Conservation Treatment Records)’ 관리가 스펙트럼 최소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⑥ 보안 장치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권고사항 실행 계획과 최소 5년마다 실시하는 리뷰

- 소장품의 보안을 위한 장치는 소장품 관리에 필수적인 부분임. 기관은 적절한 전문가

의 지문을 받아야 하며, 지문을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함. 보안 장치는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되어야 함.

- 보안 관련 지문은 모든 건물과 부지, 소재지 및 소장품 전반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소장품이 저장고, 사무실 혹은 부지 밖에 보관된 경우에도 전문가 평가를 받아야만 함.
-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고, 전문가가 다른 방안을 추천하는 지문을 하더라도, 특히 파손되기 쉬운 소장품 식별, 물리적 보호시설 및 경보 시스템 설치, 직원에 대한 감독, 목록 검토 절차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소장품뿐만 아니라 직원과 방문객 관련 보안 장치도 고려되어야 함.
- MLA 웹사이트에 관련 지문 내용이 실려 있음.

⑦ 명시한 목적과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소장품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상당한 수준의 소장품’이라 함은 소장품이 국가 차원의 중요성을 띠고 국제적 관심을 끄는 중요하고 대표적인 소장품임을 뜻함. 이 ‘상당한 수준의 소장품’은 해당 박물관의 현 지위를 반영하고, ‘국립’이란 단어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국가적 차원의 소장품 구성 의도가 있을지라도 취지가 지역적이라면 불충분하며 ‘국립’이란 용어를 소장품이나 지위 제고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만 쓰여서는 안됨.

⑧ 기관의 정책과 실행 내용은 특정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범위 및 중요성을 띠는 대상 및 관련 정보 수집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함

- 관련 방침뿐만 아니라 대상의 획득 일자가 표시된 리스트나 발행한 카탈로그 등 최근 획득한 대상 및 정보에 대한 세부 내역 형식으로 실행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함.

⑨ 소장품은 적절한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함

- 소장품 보존에 적합한 방안을 가졌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3. 미국의 예술단체 지원정책

1) 예술지원 정책의 특징

- 문화부의 부재와 최소한의 개입
 - 미국에서는 범국가적인 문화정책이나 이를 규정하고 활성화하는 문화부가 없음.
 - 미국의 연방정부는 문화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개입만 하여 왔음.
 - 절대 세습권력인 봉건 영주에 의한 예술 지원 전통을 지닌 유럽과 달리 미국에는 이러한 전통이 없음.
 - 종교기관 또한 미국의 문화 발전에 비교적 작은 역할만을 담당하여왔음.
 - 청교도 윤리에 바탕을 둔 미국적 전통 또한 예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 : 청교도들은 예술을 필요 없는 사치재로 사악한 천박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으며, 극장이 사람들의 무능력, 게으름, 그리고 부도덕을 조장한다고 믿었음.
 - 1965년 국립예술기금이 창설되기 이전에는 정부가 나서서 예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 정부의 최소개입의 이유
 - 미국인들은 오히려 정부의 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오히려 문화 발전을 저해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함.
 - 18세기 유럽의 지성운동으로 19세기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준 계몽주의철학(The Enlightenment)의 가치 또한 국가가 지닌 권한의 잠재적 횡포에 대항하는 개인의 자유 보장과 민간의 주도권의 보전을 역설함.
 - 이에 따라 ‘제한된 역할을 지닌 정부’라는 강력한 공화적 전통을 지니게 됨.
 - 또한 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민간지원이 주도하고 있었기에 국가의 역할은 단지 민간의 역할을 따라가는 것이었음.
 - 공교육과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문화와 관련된 지원은 민간에 의해 주도 되었는데, 특히 부유한 개인들이 미국의 문화 분야의 강력한 지원자였음.

● 문화예술지원 역사

- 1930년대에 뉴딜 예술프로그램(The New Deal Arts Program)을 통해 정부는 예술에 관여하게 됨
 - 예술가들을 고용하기 위해 공공예술프로젝트(Public Works Art Project, PWAP)를 도입하여 공공건물의 디자인에 시각예술가를 고용하는 의무 규정을 시행함.
 - 재무성 예술구제프로젝트(The Treasury Arts Relief Project, TARP)를 통해 연방정부 건물의 벽화를 그리는 데도 참여하였으며 화가들은 재무성의 ‘그림·조각부’에 의해 1934년부터 1943년까지 전국적으로 우체국 벽화를 그리는 작업에도 참여함.
 - 이러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3,750여 명의 예술가들이 저임금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1943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됨.
 - 이 밖에 작업 향상 행정예술프로젝트(The Work Progress Administration, WPA, Art Projects)는 극장, 작문, 시각예술, 음악, 그리고 역사적 조사 프로젝트와 같은 다섯 가지 분야의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정부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든 동기는 예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술가들에 대한 고용을 증진시키는 것이었음.
- 12세기 초 시카고, 보스턴, 뉴욕과 같은 북부에 위치한 산업화된 도시에서 갑부들이 성장하고 이들은 문화 발전을 위한 성금을 제공하였음.
- 1965년 국립예술기금(NEA)이 설립되기 이전에 미국의 예술 활동은 박스오피스 수입과 세제혜택이라는 수단을 통해 모금된 민간기부금에 의해 이루어졌음
- 예술은 공공재라기보다 경제적, 사회적 엘리트 계층 및 부유한 남성 엘리트의 소유물이었음.
 - 예술 감상시 필요한 드레스 코드와 높은 입장료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술소비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되었음.
- 헤커(Heckscher)의 20세기 기금, 포드재단, 록펠러형제기금 등이 이 분야에 관련한 리포트와 연구결과는 예술의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를 제공하는 연구서들에 의해 안정적인 연방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립예술기금(NEA)이 설립됨.

-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 말 미국의 경제 부흥기에 정부는 예술 지원과 문화 정책의 입안을 활성화시킴.
-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예술기관의 숫자와 규모가 커진 바, 그 이유는 공공지원의 유입, 예술기관 자체 수입의 증가,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의 등장과 대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임.
-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반대하여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삭감함.
- 1990년대 초반에는 예술 지원이 불안정한 시기였으며 연방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개인과 기업 지원의 정체는 예술기관의 재정적 위기의식을 고조시켰음.
- 예술과 인문학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 (1995)는 전반적인 지원의 방향이 예술보다 폭력과 아동 학대 방지 등 어린이에 대한 복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

● 매칭지원의 방식

- 국립예술기금(NEA)은 항상 민간지원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함.
-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s) 제도는 지원기관의 다양화를 통해 지원하는 몇 가지 장점이 있음.⁸⁾
- 현실적으로 민간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종자돈(Seed money)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증명함으로써 다른 지원기관이 공동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유인하여야 함.
- 대부분 예술단체의 경우, 국립예술기금에서 받은 액수가 총지원액의 10%를 넘지 않았으나 나머지 금액은 매칭그랜트에 바탕을 둔 민간기부금을 통해 지원을 받음.

8) 슈스터(Schuster, 1989:67-70)에 의하면 매칭지원은 정부의 3가지 종류의 걱정을 덜어 준다. 첫째, 정부의 재정적 예술 개입에 대한 요청은 이러한 지원이 제한되지 않으면 무한히 커질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지원기관이 있다면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 될 수 있다. 셋째, 공동지원이 아니라도 공공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어졌을 것이므로 매칭그랜트 제도로 인하여 정부의 단독지원의 경우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국립예술기금(NEA) 및 지역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프로그램

(<http://www.nea.gov/research/Notes/97.pdf> 참조).

(1) 2009 예술과 미국회복 및 재투자 기금 (The Arts and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다른 일반적인 직장 종사자보다 2배 높은 실업 상태를 보이는 예술 종사자들을 위해 NEA는 5천만 달러를 문화예술기관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함.
- 이 기금은 2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미국 전역에 상주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되 동일 예술기관에 일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기금의 40%를 56개의 주립/공공 예술기관 및 6개의 지역예술기관의 고용유지를 위해 분배
 - 나머지 60%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경쟁력 있는 예술기관에 직접 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
-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기관은 비영리 지역예술기관과 예술서비스기관들로서 지난 4년간 NEA로부터 예술기금을 수혜한 적이 있어야 함.
- 이 기금은 투명성, 목표성, 시의성, 일시성이란 네 가지 목적을 갖고 있음.
 - 투명성 보장을 위해 기금을 수여받는 예술기관들은 포괄적인 프로젝트 레포트를 NEA에 제출해야 함.
 - 고용유지가 주 목표인 경우, 급여지원과 계약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음. 급여지원은 예술기관의 경영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원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급여를 일부 혹은 전체를 지원하며 계약금 지원은 해당 예술기관과 특정 계약을 맺고 있는 예술가나 다른 계약직 종사자와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사용함.
 - 고용안정이 주목적인 만큼 필요한 곳이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연속지원이 아닌 일회성 지원의 성격을 지님.
- 이 기금은 긴급기금으로 단기간의 고용유지를 촉진하는 일시적 방책으로 주립 및 지

역예술기관은 금년 4월부터, 비영리예술기관은 금년 7월부터 지원을 함.

- 이 기금의 성격이 일회성, 단기성인 만큼 향후 예술분야 고용안정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2) 예술적 수월성에의 접근 (Access to Artistic Excellence)

-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의 수월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술단체는 다음의 것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함.
 -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조, 수정, 공연, 전시하는 기회 제공
 - 모든 문화와 기간과 관련하여 예술적 작업을 선사
 - 예술 작품과 문화적 전통의 보존
 -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이 관객을 개발하고 다양화하는 작업
 - 개인들이 넓은 의미의 예술 형태와 활동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효과성을 증진
 - 지역유대강화를 위한 예술 활동
- NEA의 지원은 특별히 지역적, 인종적, 경제적, 신체적인 이유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진.
- 문인, 재즈 연주가, 민속과 전통예술 기능 보유자, 국가 공인 오페라 기수를 제외하고 예술가 개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을 국회가 금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예술가들의 주거비용
 - 지역사회 내에 예술활동 비용과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지명도를 높이는 활동
 - 다양한 미학적, 인종적, 지역적 배경의 예술가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활동
 - 다른 나라의 예술가나 예술단체와의 교환 프로그램
 - 새로운 장르의 예술가나 복합예술의 요구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 제공
- 각 신청자들은 다음의 다섯 종류의 성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예술을 창조, 해석, 공연, 전시하는 기회를 가짐

- 예술작품과 문화적 전통의 보존
- 단체들의 예술적·대중적 서비스 목표를 실현하는 능력 향상
-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예술형태 및 활동을 경험할 기회 제공
- 예술이 지역사회의 유대강화에 기여

(3) 챌린지 미국: 모든 지역사회 접근속성 리뷰 지원 (Challenge America: Reaching Every Community Fast-Track Review Grants)

- 중소기업의 예술단체가 시행하는 -지역, 인종, 경제, 신체적 이유로 인한-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예술활동 접근 프로젝트 지원. 다만, 청소년, 노년층이라는 나이와 관련되어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점은 인정이 안되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NEA의 핵심적인 목표인 예술적 수월성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전문적 예술 프로그램이나 지역개발의 잠재성을 강조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함.
- 이러한 지원의 세부적인 요건은
 - 문화소외계층의 예술접근성 향상
 - 각 단체별 1만불 지원
 - 지원을 받는 날로부터 대략 6개월 후에 지원여부 결정되며 결정이 난 이후에 바로 프로젝트 착수 가능함
- 이 지원사업과 다른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는 단순하면서도 진솔한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목적 중 하나를 지님을 보여주어야 함.
 - 한 명 이상의 초청 예술가를 포함하는 예술 이벤트. 지원 신청하는 기관의 예술가 직원, 거주 예술가, 협력적 관계자는 초청 예술가에 속하지 않음. 예술가와 관련된 보수 외에 해당 프로젝트는 대중적 관계, 전문적 서류체계, 프로그램의 향상과 같은 행사의 핵심적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가령 프로그램 향상에는 교통비, 프로그램 정착

비(사인 언어 해석, 오디오 묘사) 및 카탈로그, 브로셔와 같은 출판비용이 포함되며 특정한 강의 시연, 이벤트 전후 대화시간, 해당 이벤트에 적합한 워크샵 등과 같은 부분도 포함됨.

- 벽화, 조각 또는 환경 예술과 같이 지역사회의 관여를 통해 개발되는 전문적인 대중 예술 프로젝트
- 개혁, 복원, 문화시설이나 공간의 활용 등을 포함한 시민 디자인 활동. 건축학, 디자인 경연대회, 디자인 워크샵, 적용 가능한 계획 등이 포함되며 지원금은 실제 보수나 건축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문화관광이나 문화지구에 대한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예술 활동과 재원의 공동 촉진. 공동 촉진이란 전문적 평가, 디자인, 대중관계 강화 기능(일정, 웹 사이트, 브로셔 등)의 분배가 몇몇 지역 단체에 혜택을 줄 수 있게 계획되는 것을 말함.

● 지원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콘소시엄으로 신청된 계획서
- 장기간의 활동(장기간의 체류, 대형 프로젝트, 일사분기 이상의 기간)
- 디자인 경연대회 이외의 경연대회
- 커리큘럼에 기초한 강의를 포함한 활동

(4)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 (Learning in the Arts for Children & Youth)

- 풍부한 예술경험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임.
- 수준 높은 예술은 예술에 대한 평생의 감상과 관여하는 관문을 열어 줌
 - 어린이는 문화적 보전에 참여하여야 함
 - 학술적·사회적 성숙성은 예술교육 경험에서부터 나옴
- 숙련된 예술가, 교사, 우수한 예술과 함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경험 기회 제공
- 지원 신청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를 포함해야 함
 - 경험 : 학생과 교사는 라이브 형태의 예술작품을 경험할 기회를 가져야 함

- 학습 : 교사의 지도, 예술가의 가르침, 문화기관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이 유래된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술을 공부하며 개별 작품의 기술적·미학적 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함. 특정 예술 형태를 연주하는 기술 습득과 관련된 학습도 포함될 수 있음.
- 공연 : 경험과 학습에 의해 학생들은 예술을 창조하며 문학의 경우 가장 창의적인 활동은 글쓰기와 낭독임.
- 평가 : 학생들은 국가와 주 예술교육 기준에 따라 평가됨. 프로젝트는 이전과 이후의 테스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됨.

- 학교 기반형 : 유치원과 12학년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기반형 사업은 국가적 기준에 합당한 학교 커리큘럼과 교수형 프로그램과 직접 연결이 됨. 이러한 활동은 학교건물 내외에서 어떤 시간대라도 가능함. 따라서 학교 커리큘럼과 연결된 방과후 학교와 여름학교 프로그램도 포함됨. 프로젝트는 또한 교사, 예술가 교사, 학교 행정가들의 전문적 개발과도 연결되어야 함.
- 지역사회 기반형 : 지역사회 기반형 프로젝트는 5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예술 훈련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에 대한 지원임. 활동은 정규적 학교 외에 다양한 배경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예술단체나 예술가나 예술그룹과 협력작업을 하는 비예술단체 모두가 신청이 가능함. 학교와 공식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은 아니어도 해당 프로젝트는 국가의 예술교육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장르와 형태와 관련된 지식을 확장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 됨.

-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국가 예술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교육 목적을 지닌 일련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 다른 과목의 학습과 관련된 새로운 방식의 통합적 학습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평생 지속되는 흥미를 얻게 하는 도전적인 여름 예술교육 프로젝트

- 예술가가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보완으로서 1주일 혹은 그 이상 방과 후에 제공하는 프로젝트.
- 교사, 예술가,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트는 예술기관, 지역센터, 학교, 종교기관, 공공주택, 인종 커뮤니티, 청소년 시설들로 하여금 공간, 프로젝트 관련 물품, 장비, 직업 교육, 장소에 대한 지도력을 갖추게 함.
- 학습된 전통에 부합하는 가치와 벤치마크에 기초한 목적과 평가를 갖고 있는 NEA의 민속 및 전통예술의 국가 문화재 지원과 관련된 예술교육 프로젝트
- 지원하지 않은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지적·사회적 개발에 대한 예술의 영향에 대한 연구
 - 예술학습 프로그램의 평가, 문서화, 보급과 관련된 프로젝트

3) 미국의 비영리 예술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1) 미국의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 되면 임의단체로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경감됨.
- 수입에 대해 면세를 받으며 지역 차원에서 주정부 판매세와 재산세도 면세 받음.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비영리기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주어짐.
- 비영리기관은 501(c)(3) 기관에 속하는 바, 자선, 종교, 예술, 교육단체 등이 해당됨.

※ 미국의 국세청 코드 501(c)에 해당하는 비과세법인의 유형

- 501(c)(1): 의회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법인
- 501(c)(2): 재산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 501(c)(3): 교회, 자선단체, 교육기관 등
- 501(c)(4): 사회복지단체
- 501(c)(5): 노동, 농업조합

- 비영리기관 등록업무는 지역마다 다르나 법무국 혹은 유사 법률 관련기구에서 담당하며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집중함.

-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감세는 첫 영구소득세 규정이 도입된 1913년 이후 4년 후에 법적으로 등재가 이루어졌음.
- 비영리기관은 IRS Form 990을 해마다 작성해야 하는 데 이것은 해당 기관의 재정과 지원활동에 대한 정보를 대중이 접할 수 있게 하는 서류임.
- 하지만 3년간 연평균 수입이 2만 5천 달러 이상인 예술단체에 대해서만 이를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예술단체는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움.
- 비영리기관은 연례보고서와 재무재표 공개를 통해 공익성과 투명성을 증명하여야 함.
- NEA를 비롯한 민간재단의 지원도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가능함.

(2)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 미국인들은 1917년부터 민간기부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받고 있으며 법인세 경감도 1935년부터 허용되었음.
- 개인 소득세, 법인소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세로 인한 비영리기관이 받는 세제 혜택은 미국의 정부 지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예술에 대한 지원금 중 3분의 2가 개인의 기부금임. 개인은 소득총액의 50% 까지 기부에 대한 세제 경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러한 세제가 개인의 기부를 촉진하고 있음.

(3) 기업의 협찬

- 세무당국은 비영리기관이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합당한 기업의 협찬에 대해 비과세로 허용하고 있음.
- 스폰서의 로고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협찬 대가는 용인되고 있음. 그러나 독점적 협찬 계약을 통해 이벤트에서 해당 기업의 물건만을 파는 권리를 주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 됨.
- 1981년에 개정된 세법은 기업의 협찬에 대하여 기존의 5% 세제 혜택 범위를 10%로 늘렸음.

4. 영국의 예술지원 정책

1) 예술지원 정책의 특징

- 자유방임과 보이지 않는 손 전통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변화
 - 영국은 ‘야경꾼 국가’라는 강력한 전통을 지니고 있어서 영국 정부는 강도, 절도, 강제 계약 등과 같은 범죄 방지 차원의 기능만 하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음.
 - 자유방임전통(The ‘laissez-faire’ mentality)은 19세기 자유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연관되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인 경쟁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예술에 대한 지원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 왔음.
 - 영국 정부가 비로소 예술 지원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왕실 귀족층이 예술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즉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 정부는 예술지원을 통한 중앙 집중적 통제와 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음.
- 문화부처의 변천
 - 영국에서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문화미디어체육부(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 DCMS)임.
 - 1979년에 탄생한 이 부의 원래 명칭은 예술도서관위원회(The Office of Arts and Libraries)였음.
 - 1981년 교육과학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로 통합되었으며 1983년 다시 분리·독립함.
 - 1992년 다시 문화유산부(The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에서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로 바뀌었음.
 - 1997년에는 문화미디어체육부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 독립적인 문화부의 존재는 다른 예산 대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일정 정도의 공공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원개괄
 - 중앙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은 대부분 준정부기관(quangos: quasi non-government

organisations)을 통해 예술위원회(The Arts Councils), 영국영화위원회(The British Film Institute), 박물관, 문서 및 도서관위원회(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등으로 지원이 됨.

- 문화미디어체육부(DCMS)는 위의 기관들을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입각하여 지원하고 있음.
- ‘팔길이 원칙’이란 독특한 영국적 제도로서, 정부가 준정부기관(quangos)의 일상적 운영과 정책적 방향에 정치적 간섭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예술위원회(The Arts Council England)는 1946년에 정부와 예술을 매개하는 기관으로 탄생하였는데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각각 관장하는 네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팔길이 원칙에 의거하여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예술위원회의 내부적인 운영이나 지원 대상자 결정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됨.
- 이러한 원칙 덕분에 예술은 일명 ‘국가보증예술’의 창조와 정치적 검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음.
- 하지만 예술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운영되었음.
- 1990년대 중반에 문화미디어체육부가 『새로운 예술 정책(A New Cultural Framework)』(1998)을 발표면서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예술기관은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야함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팔길이 원칙’은 사실상 이론으로만 존재하게 됨.
- 영국에서의 예술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80% 이상)이고 민간 지원은 낮은 수준(기업 4%, 재단 2.3%)이며 예술기관의 자체 수입 또한 그다지 많지 않음.
- 영국 정부의 지원수준은 정부 지원 비율이 낮은 미국과 정부 지원 비율이 높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의 서유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

●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지원금은 각종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민들을 위한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무로 갖고

있음.

- 지방정부 외에도 10개의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s Boards, RABs) 또한 지역차원에서 예술을 지원하고 있음.
- 예술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지역예술위원회에 나누어 주고 이것을 갖고 지역예술위원회는 각 지역의 예술기관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2002년 4월부터 영국예술위원회가 10개의 지역예술위원회를 법적으로 통합을 함.
- 이러한 통합된 새로운 예술위원회는 전략적 중앙사무실이 지역사무실을 리드하고 통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지방정부는 영국예술위원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며 특히 지역협약(Local Area Agreements: LAAs)이라는 중앙정부와의 매칭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합하게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바, 이러한 지역협약은 다음의 네 가지 성과목표를 갖고 있음.
 - 어린이와 청년
 - 안전하고 강한 지역사회
 - 건강한 사회 및 노년층
 - 경제개발과 사업

● 국립복권과 예술지원

- 1994년에 시작된 국립복권제도는 영국의 예술 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음.
- 예술에 대한 이 복권기금의 영향력이 상당하여 이러한 복권기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국에서의 예술지원과 관련된 체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음.
- 다섯 가지 특정 목적(예술, 체육, 문화재, 자선단체, 밀레니엄 기념사업)을 위해 1매당 1파운드의 판매 금액 중 각각의 분야는 5.6펜스를 동일하게 받아왔으며 여섯 번째 새로운 목적 - 건강·교육·환경을 망라하는 ‘새로운 기회 기금(New Opportunity Fund)’- 이 추가되면서 예술에 대한 기존 지원 할당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았음.
- 예술위원회는 이 복권기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 기금은 정부의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기금을 의미함.

- 복권기금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 기금의 추가적인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 자본프로젝트(capital projects)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함.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술기관은 이미 운영경비를 다른 곳에서 지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운영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기관은 복권기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예술 (Arts for Everyone, A4E)’ 그리고 ‘모두를 위한 예술특급(A4E Express)’이라는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그 결과 복권기금은 예술위원회가 예술기관의 운영경비 지원 목적에 쓰이는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

● 민간지원과 기업협찬

- 대부분의 민간지원금은 민간재단과 개인보다는 기업협찬으로부터 나옴.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으로서의 공동지원의 예도 많이 볼 수 있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받아 진행하는 공연과 전시는 점차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민간재단과 협력하여 극장과 화랑을 쇄신시키고 있음.
- ‘예술과 기업(A&B)’은 기업의 예술협찬을 촉진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산하기관임.
- 1993년과 1994년에 ‘예술과 기업’은 문화미디어체육부를 대신하여 ‘기업협찬 장려계획(BSIS)’을 운영하였는데 그 해에 약 4백만 파운드의 협찬금을 모금하였음.
- 1993/94년 기업의 지원은 최소한 7천만 파운드가 넘었으며(ABSA, 1994) 이는 이벤트, 예술기관 및 예술가 개인에 대한 협찬의 형태가 주를 이룸.
- 기업지원의 절반 정도가 공연예술 분야에 치중하였고 축제를 포함하면 총 지원액의 3분의 2 정도가 여기에 지원됨. 기업협찬은 또한 대도시와 고급예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 셀우드(Selwood, 1994:19)에 의하면 영국에서 기업협찬의 80% 이상이 런던에 기반을 둔 예술기관에 지원되었으며 시각예술에 10% 정도의 지원이 되었음에 비해 오페라에 55% 이상 지원되었다고 함.

● 영국의 예술지원의 특성

- 공공지원의 경우, 웨스트 엔드의 상업연극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라는 개념이 정부에 의해 도입되어 강조된 바, 원래 이 용어는 원래 1982년 재정운영위원회(The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다가 1997년에는 노동당에 의해 ‘최고 가치(best value)’라는 개념이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배경이 되는 철학은 동일함.
- 경제용어인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 또한 예술기관을 평가하는 용어로 자주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처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투자개념으로 받아들임.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예술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정책적 강조로의 선회가 이루어짐.
- 공공지원을 민간지원 특히 기업의 지원으로 보충하거나 공공과 민간의 공동지원을 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민간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기업과의 매칭그랜트 제도를 창안하거나 국가복권기금을 창설하는 등의 노력을 해 음.
- 영국의 문화정책은 고급문화와 문화재 중심에서 방송, 영화, 팝 음악, 비디오를 포함한 문화산업 혹은 창조산업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과거 제국주의와 전통의 표상인 영국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방침의 일환으로 과학, 기술 및 예술국가위원회(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NESTA)를 창설하여 문화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산을 그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이외에도 창조산업실현위원회(The 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가 창설되어 정부가 어떻게 창조 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1998년부터 새로운 예술정책을 선포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함. 이러한 정부정책은 예술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많은 예술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예술 활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
- 이에 따라 예술단체들은 참여예술과 예술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

하는 등 현 정부의 문화 아젠다의 초점을 경제적인 것에서 사회적 것으로 바꾸어 놓게 됨.

-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는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점차 높게 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이 방문자 수를 늘리는 등의 구체적 목표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여야만 했음.
- 문화예술기관이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항들은 정부가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특정한 목적들은 문화미디어체육부에 의하여 발간된 『새로운 문화체제(A New Cultural Framework, 1998)』에 잘 드러나 있음.
- 이 보고서는 지원기관과 정부가 지원협약(funding agreements)을 통해 그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문화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이 아닌 투자로 상정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기관을 ‘협찬 받은 기관(sponsored bodies)’으로 간주하게 함.
- 정부 지원금의 배분은 접근성, 효율성의 향상과 민간재원의 증가 등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지원의 원칙은 문화미디어체육부가 지향한 4가지 가치인 접근성, 수월성·개혁, 교육, 문화산업에 반영되었음.
- 지원받는 문화예술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고 효율성의 기준을 향상시키고 전 영역에 걸쳐서 질을 고양하기 위하여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성과·효율성·기준팀(The Quality, Efficiency & Standards Team, QUEST)을 설립함.
- 정부의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기 위하여 3개년 간의 지원 협약이 문화미디어체육부와 지원 대상기관 사이에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협약에는 예술기관의 전년도 목적과 핵심지표에 대하여 보고하기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음.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예술위원회는 예술기관에게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 PI)’를 정례적인 지원의 조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및 예술위원회(ACE)의 예술지원 프로그램

(1) 문화미디어체육부

-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는 크게 다음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 영국예술위원회
 - 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예술교육
 - 예술과 지역사회
 - 예술지원
 - 예술 국제교류
 - 예술산업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국립예술기관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바, 영국국립오페라, 로열국립극장, 로열오페라하우스, 로열세익스피어극장, 사우스뱅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문화미디어체육부의 지원의 전략 우선순위로는 어린이와 청년예술, 지역사회, 경제, 보급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예술 활동과 관련된 접근성 향상
 - 문화활동의 수월성 제고
 - 예술적 재능 개발과 수월성 제고
 - 예술문화자원과 관련된 교육적 잠재성 개발
 - 문화예술교육 및 훈련 기준 향상
 - 예술을 활용한 사회적 소외자 감소
- 문화미디어체육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삼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학교의 방과 후 활동
 - 직업적 예술훈련과정에 필요한 장학금
 - 영화와 미디어 관련 프로젝트

(2) 영국예술위원회(ACE)

- 영국예술위원회는 현재 5가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예술기관 지원
 - 예술가 지원
 - 투어 프로그램 지원
 - 안정화와 회복 지원
 - 예술시설지원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예술위원회는 지원에 있어 다음의 6가지의 우선순위 적용
 - 예술참여
 - 어린이와 청년
 - 창조경제
 - 활력 있는 사회
 - 국제주의
 - 다양성 증진
- 예술단체나 예술가가 영국예술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여러 종류의 비용을 한 신청서에 복수로 신청하여도 무방
 - 프로젝트와 이벤트
 - 연구와 창작
 - 연구개발
 - 참여를 유발하는 활동
 - 교육활동
 - 장비와 차량 등의 자산구입
 -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구입, 시설 개조 및 보완
 - 공공미술
 - 여비를 포함한 전문적 개발과 훈련비용
 - 마케팅 활동
 - 관객개발

- 예술기관의 장기적 안전성을 위한 기관개발
- 거주비용
- 예술 활동 관련 여비
- 투어 프로젝트, 대규모 컨퍼런스, 해외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의 작품 시연 및 전시, 국내 예술가이나 예술단체간 협동프로그램
- 특히 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단체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예술기관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 파트너쉽
 - 지역기관 혹은 국가기관
 - 자원봉사자 혹은 지역공동체 중 예술관련 활동이 주요 활동이 아닌 기관
 - 기관들의 모임

※ 전문예술법인단체 적용 관련

- 이와 같은 지원 가능한 예술단체에 관련된 규정은 우리가 전문예술법인·단체와 관련된 지정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는데 참고로 삼을 수 있음.
- 영국에서는 예술단체가 직원이나 주주에게 수입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활동이 지속적인 예술 프로젝트이거나 대중에게 명백한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 즉 수입을 발생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그 혜택이 대중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3) 영국의 예술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1) 비영리기관

- 영국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비영리기관(non profit organization)이란 용어 대신에 자발적 기관(Voluntary Organisations)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재단(foundation)에 대

해서도 trust 혹은 charity란 용어를 사용함.

- 모든 비영리기관이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됨.
- 1979년 자산취득세법(The Capital Gains Tax Act 1979)은 비영리단체가 고유사업의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했고 적법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자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506(1)조의 소득법인세법(1988)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의 모든 수입은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세와 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음.
-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부(생전 혹은 사후 모두)는 고유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면제 받으며 비영리기관은 영리사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 받음.
- 모든 기부자의 약 절반 정도가 세금을 감면 받는 방법으로 기부를 선택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이나 노년계층의 23%만이 기부의 세제 혜택을 매우 중요함.
- 미국인들이나 미국 회사들이 연방 소득세에 대해 개별적인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에 반해 영국에서는 단지 자영업자나 고율의 세금 납부자만이 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며 이러한 감면 요구는 영국의 경우 총납세자의 3분의 1에 불과함에 비해 미국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를 보편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2) 민간기부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 기부를 늘리기 위해 영국정부는 2000년 4월에 납세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세제를 개정함.
- 이 새로운 세제는 세금 감면이 일 회당 최소한의 기부액이 250 파운드나 기부자가 최소한 4년 이상 정기적인 금액을 기부를 계속한다는 약정하여야만 세금 감면이 이루어졌던 기존의 제도를 매우 단순화시킴. 즉 금액이 많건 적건 어떤 기부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기부자가 일정기간 동안 기부를 한다는 약정을 할 필요도 없어짐.

- 기부약정서의 경우, 세무기관의 기부 감사를 문서나,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혹은 구두로 표현된 기부약정 선언에 의해 대체할 수 있음.
- 기존의 250 파운드라는 최소기부액의 폐지와 좀 더 유연한 기부약정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기부여사의 증가를 유도함.
- 이 새로운 세제 개편 조치는 상장회사가 현시세로 주식이나 담보물을 기부하는 행위에도 효력을 발휘하여 40%라는 고율의 세금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부와 협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르게 적용되는 바, 협찬사가 협찬금에 대해 광고와 접대와 같은 유형적 이익을 받은 경우는 이것은 다른 구매비용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지만 직접적인 기부는 부가세를 면세 받음.

5. 일본의 비영리제도

1)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 근거법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목적
 - 특정의 공익적/비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란 단체의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주요한 사업활동에 충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설립절차
 - 법인 설립은 그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장(사업장이 단일 행정구역 안에만 있을 경우), 혹은 대통령(복수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 등기
 - 인증사무는 법무 혹은 내무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명시한 ‘NPO법의 운용지침’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인증 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직원(정회원 등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부당한 조건을 달지 않을 것
- 보수를 받는 임원의 수가 임원 총수의 1/3 이하일 것
-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특정 후보자, 정당을 추천, 지지,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폭력단, 혹은 폭력단 구성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가 아닐 것
- 10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

2) 일본의 신 공익법인

● (구) 공익법인제도와 (신) 공익법인제도의 차이

	구 공익법인	신 공익법인
인증, 인가 요건		- 법인법, 인정법으로 규정 → 공익인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이 심사, 행정부가 인정
사업범위	- 위법성만 없으면 가능. 단, 종래 주무관청이 허가한 사업에 한함	- 공익목적사업 비율 50% 의무화 (공익인정기준 업수)
관리감독	- 주무관청	- 공익인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에 대한 보고, 입회검사 실시, 행정청에 의한 권고 명령, 인정 취소
세제	종래와 동일	- 법인세 : 수익사업에만 과세(단, 인정법상 공익 목적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 - 기부우대 : 특정공익증진법인과 동일 대우 - 개인주민세에 대한 기부우대 조치

● 공익인정

- 공익인정위원회 설치 (중앙과 광역단체에 설치되는 공익 인정심의 기구)
- 인증요건 및 관리 감독 기준

- 재무적 기반이 있을 것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익목적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적 기반’이 있는가
 : 재무상황이 건전할 것, 재산관리 및 운용에 대한 법인 임원의 적절한 관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경리사무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이나 설비 등의 능력 보유 여부
 : 분야별 인력, 기기 등에 대한 필요수준을 설정하여 합치 여부 판단
- 특정한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수지균형으로 예측될 것 :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수입액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액을 넘어서는 안 됨

● 세제혜택

[국세] (종래의 특정공익증진법인과 동일)

- 개인이 기부 : 기부액에서 5000엔을 뺀 금액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
 ※ 기부액 한도는 개인기부자 소득의 40% 상당
- 법인이 기부 : (소득금액의 5%+자본금의 0.25%)×1/2을 한도로 손금산입
 ※ 종래 제도의 소득금액의 2.5%에서 5%로 확대

[지방세]

- 광역단체 혹은 기초단체가 조례에 의한 지정기부금이 기부우대조치의 대상(종래 광역단체 공동모금 기부금에만 해당)
- 아래 금액을 개인주민세액에서 공제
 - 광역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 - (기부금액-5000엔)×4%
 - 기초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 - (기부금액-5000엔)×6%
 - ※ 우대 대상이 되는 기부액의 한도는 개인기부자의 소득의 30% 상당액

● 의무사항

- 준수사항 : 공익목적 사업 수지균형, 공익목적 사업 비율 과반, 유휴재산액 보유제한, 기부모집 금지행위, 수익사업 등의 구분경리, 임원 등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을 준수
- 정보공개 : 매해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임원명부/이사, 감사 및 평의원의 보수 지급기준을 기재한 서류 / 캐시플로우 계산서 /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 현황 중 중요한 수치를 기록한 서류를 주 사업장에 5년간 비치하고, 그 사본을 전 사업장에 3년간 비치. 정당한 이유 없이 민간의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사업보고 등 : 매년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행정청에 제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는 매년 사업개시 전일까지 제출)
행정청은 현황보고 요청과 방문을 통한 장부, 서류 등의 검사 등이 가능
(요청 가능성이 높은 신청시 자료는 10년간 보관)
- 정관/등기상 명칭 변경 : 일반사단/재단법인에서 공익법인으로 정관상 명칭 변경
- 변경사항 통지 : 인정신청서와 변경된 사항은 제출보고(사업 종류 변경 등은 인정신청과 같은 신청서, 경미한 변경은 간략한 변경 신청서 제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 2009년 5월 31일

발행인 : 박용재

발행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0 보생빌딩 2·4·5층

전화 (02)745-3073

팩스 (02)745-2071

www.gokams.or.kr

디자인/인쇄 (주)현대문화사

※ 책자의 판매, 전재, 복시를 금합니다.